

연구보고 2016-08

국민 중심의 행정조사 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

최환용 · 장민선

연구보고 2016-08

국민 중심의 행정조사 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

최 환 용 · 장 민 선

국민 중심의 행정조사 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Legislative Improvements of
th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Systems for
Peoples

연구자 : 최환용(선임연구위원)
Choi, Hwan-Yong
장민선(연구위원)
Jang, Min-Sun

2016. 10. 31.

요 약 문

I.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행정의 영역이 확대되고 활동형식이나 수단이 늘어남에 따라 행정기관은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에게 보고나 자료제출을 강제하거나 타인의 주거나 영업소에 출입하는 방식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함
- 행정조사의 필요성, 범위, 수단이 확대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그동안 행정조사는 행정기관 위주로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었고, 수사조사가 만연하였으며 조사대상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미흡하고 중복조사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등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제도라는 문제가 있었음
- 2007년 「행정조사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행정조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행정조사는 기업 등 국민에게 큰 행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개별 법령에도 조사의 원칙과 절차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행정조사기본법 및 행정조사 관련 개별 법령의 분석, 검토를 통해 행정조사 절차와 관련한 기업 등 국민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고 기업 등 국민 중심의 행정조사 절차의 합리화를 도모하며 「행정조사기본법」 등 관련 법제의 실효성 및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II. 주요 내용

□ 행정조사의 일반론

- 행정조사의 개념과 법적 성격, 유형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논의를 살펴보고, 행정조사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행정조사의 개념과 유형을 분석함
- 행정조사는 조사 주체, 법령의 근거, 법적 성질, 조사목적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며, 조사의 방법에 따라서는 출석 및 진술 요구,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시료채취 등으로 나뉨
-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으로 조사권 남용금지의 원칙, 객관적 조사 대상자 선정의 원칙, 공동조사 및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 사전 예방적 조사의 원칙, 비밀누설금지 및 부당사용금지의 원칙, 정기조사실시의 원칙을 들 수 있고, 행정조사기본법상 주요 절차로는 개별 조사계획 수립, 조사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전문가 참여, 조사결과 통지 등을 들 수 있음
- 이러한 기본원칙에 따른 한계 외에도 행정조사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의 권리보장에 따른 헌법상 한계가 인정되며, 행정조사로

인한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종래 국가배상, 손실보상 외에도 항고소송의 대상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 주요 국가의 행정조사 관련 법제 분석

- 미국은 행정절차법에서 행정조사에 관한 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의 정보수집을 위해서 주로 출입검사, 소환장 발부, 보고의무 등이 활용됨
- 독일에서는 행정조사가 행정절차법 등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통신법과 같은 개별 법령에서 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출입검사 등이 규정됨으로써 행정조사가 운영되고 있음. 행정조사를 통한 명령사항의 이행을 위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됨
- 일본에서도 행정조사를 종래 즉시강제의 수단으로 인식해왔으나, 세무조사에 대한 논의를 계기로 즉시강제에서 분리하여 비권력적 수단에 의한 정보 수집 활동으로 보고, 개별 법령에서 질문, 출입검사, 보고의무, 문서제출명령 등의 형태로 규정됨

□ 개별 법령상 행정조사 실태와 문제점

- 2016년 행정조사 운영 계획에 따른 약 700여개의 행정조사 목록을 1차적으로 검토한 결과 개별 법령상 행정조사의 입법 유형은 조사의 방식에 따라 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출입검사·질문·서류열람, 시료채취, 출석·진술 요구, 현장조사, 실태조사로 나누어지고, 조사의 목적에 따라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수집, 법령위반 여부 확인, 지도·감독 차원의 행정조사로 나누어볼 수 있음

- 개별 법령상 행정조사 관련 규정을 국무조정실의 행정조사 정비기준과 행정조사기본법상 원칙과 절차에서 도출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석, 평가함
 - 첫째,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에 관해서 대부분 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나, 지침이나 훈령/고시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법률에 구체적 위임 없이 시행규칙에서 현장조사를 규정하기도 함
 - 둘째, 조사의 목적과 내용의 명확성에 관해서, 여전히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한 사례가 많았던 반면에 구체적이고 한정적으로 열거한 입법례도 상당수 발견됨
 - 셋째, 조사 대상 선정에 있어서 조사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입법례는 다수 발견하였으나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다른 절차를 두고 있었던 경우는 거의 없었음
 - 넷째, 조사의 주기에 관해서 수시조사는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령에서는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서 수시조사를 규정하고 있어서 개정이 필요함
 - 다섯째, 조사의 절차에 관해서는 기본법상의 절차가 제대로 반영된 입법례는 많지 않으며, 특히 사전통지의무 관해서 개별 법령에는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음. 조사의 목적과 유형에 따라 7일 전 사전통지의무를 강제하기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현장조사시 증표 외에도 관련 서류를 함께 제시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여섯째, 조사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에 관해서는 개별 법령에서는 별다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는 기본법의 개선논의와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임

□ 행정조사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 행정조사기본법은 우선, 개별 법령상 다양한 유형의 행정조사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조사 방법을 추가하고, 조사절차에 있어서 유형별로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개선함
- 행정조사기본법은 정기조사 원칙을 규정하면서도 수시조사를 인정하는 예외를 지나치게 넓게 규정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고, 행정기관이 사전통지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나 손실에 대한 보상규정을 둠으로써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중복조사를 지양하고, 공동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기관간의 공동조사 요청 및 수락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함
- 개별 법령에 있어서는 제4장에서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목적과 대상의 명확화, 달리 규정할 특별한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조사기본법의 원칙과 절차를 따르는 것으로 하고,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장치를 개별 법령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행정조사를 통한 국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불필요한 마찰 및 법적 분쟁 발생의 방지에 기여
- 국민 중심의 행정조사 절차의 간소화 및 합리화 방안 마련을 통한 「행정조사기본법」의 실효성 및 현실적합성 제고

□ 「행정조사기본법」 및 행정조사 관련 개별 법령의 정비방안
마련에 기여

▶▶ 주제어 : 행정조사, 행정부담, 보고, 자료제출, 출입검사, 현장조사,
사전통지, 행정조사기본법

Abstract

I . Background and Purpose

Background of this study

- According to enlarging the field, type and means of administration, the administrative agencies carry out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by requiring for report and supply materials and visiting one's house or company, for the purpose of gathering informations necessary for deciding policies and performing duties.
- Before enacting the Framework Act on th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hereinafter "Framework Act") in 2007, th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System has been based on each of individual acts, and operated irregularly and focused on the administrative opportunism.
- For this reason, the Framework Act has intended to reduce administrative burden and assure the clearness of the investigation. However, it is still recognized as a big burden to the companies and people and the rules and procedures of the Framework Act are not observed well in the actual investigations.

Purpose of this study

- This study is aimed to proposing legislative improvements in Framework Act and individual articles through analyzing the related acts, for reducing administrative burdens, improving the investigation procedures, and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and relevance of the related legislations.

II. Main Contents

General Theory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 In Chapter 2, we review the definition, legal characteristics and classification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based on the theory, judicial precedents and Framework Act.
- The Framework Act prescribes the types, basic rules, procedures and rights of the objects, being applied to many kinds of investigations.
- The administrative agency carrying out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has to make an effort to conform to these requirements of the Framework Act and guarantee people's fundamental rights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s.

Review of Foreign Country's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System

- In Chapter 3, we introduce other country's legal system about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U.S.A has an legal basis of the investigation on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By the judiciary, the basic rules and limitations have been made about three types of investigation such as inspection, subpoena and reporting requirement.
- Next, Germany has legal bases of the investigations on the individual acts like Communications Act. The agency order to report or submit informations, visit one's house or company and can impose charge for compelling the performance.

- Like Germany, Japan has no framework act of regulating lots of investigations. As an activity of collecting information for administrative goal,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are classified to questionnaire, examination on entry and exit, report or submit materials.

- Analysis of individual legislations regarding to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 In Chapter 4, we analyze the articles of the individual acts related to th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according to the following criteria elicited from the government's standard and Framework Act.
 - the legal basis of the investigation
 - the clarity of the purpose and object
 - the fairness and objectivity of selecting the object
 - the regularity of the investigation
 - the procedures of the Framework Act such as preliminary notification, certificate presentation, notice of results, etc.
 - the protection of the objects' interests
 - Through these analyses and reviews, we identified the problems of the related articles and gained the best practice.

- Legislative improvements of Framework Act and its related articles
 - In Chapter 5, we introduce the legal problems of Framework Act and related articles in terms of the people's rights and interests. The

Framework Act does not include all kinds of types and reflect each characteristics of the investigation. Also, it is necessary to prescribe the sanctions to the investigators violating the law. Each of acts has to conform to the guideline of the Framework Act and enhance the clearness of articles.

- Finally, we propose directions to improve existing legislations related to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for reducing administrative burden to people and guaranteeing peoples' rights and interests.

III. Expected Effect

-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provide ideas for simplification and rationalization of the procedure and enhancing the effectiveness and conformity to the Framework Act.
- This report is expected to provide basic research materials in order to improve and revise the current legislations regarding to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 **Key Words** :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Administrative Burden, Report, Supplying Informations, Inspection on entry and exit, On-the-spot Survey, Preliminary Notification,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9
제 1 장 서 론	17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8
1.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8
2. 연구의 방법	20
제 2 장 행정조사 일반론	25
제 1 절 행정조사의 개념과 분류	25
1. 행정조사의 개념과 성격	25
2. 행정조사의 분류	35
제 2 절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42
1. 조사권 남용 금지의 원칙	42
2. 객관적 조사대상자 선정의 원칙	43
3. 공동조사 및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	43
4. 사전예방적 조사의 원칙	44
5. 비밀누설금지 및 정보 부당사용금지의 원칙	45
6. 정기조사 실시의 원칙	45

제 3 절 행정조사의 절차 및 한계	46
1. 행정조사기본법상 절차	46
2. 행정조사의 한계	54
제 4 절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58
1. 위법한 행정조사로 인한 구제	59
2. 적법한 행정조사로 인한 구제	60
3. 행정절차법에 의한 구제	61
4. 기 타	62
제 3 장 주요 국가의 행정조사 관련 법제 분석	63
제 1 절 미 국	63
1.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63
2. 행정조사의 유형	64
3. 행정조사의 한계	67
제 2 절 독 일	74
1. 행정조사의 개념과 유형	74
2. 행정조사에 관한 입법례	75
제 3 절 일 본	81
1. 행정조사의 개념	81
2. 행정조사의 종류	82
3. 행정조사의 절차	86
4.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88

제 4 장 개별 법령상 행정조사 실태와 문제점	89
제 1 절 부처별 행정조사 운영 현황	89
제 2 절 행정조사의 입법 유형	93
1. 개 관	93
2. 보 고	94
3. 자료제출	98
4. 출입 검사 등	101
5. 현장조사	103
6. 실태조사	107
제 3 절 개별 법령상 행정조사 관련 규정 분석	109
1. 분석 기준	109
2. 분석 내용	114
제 5 장 행정조사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141
제 1 절 「행정조사기본법」의 개선방안	141
1. 「행정조사기본법」의 문제점	141
2. 「행정조사기본법」의 개선방안	143
제 2 절 개별 법령상 행정조사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152
1. 개별법령에서 행정조사 규정의 문제점	152
2. 개별 법령에서의 행정조사 규정 개선방안	154
제 6 장 결 론	161
제 1 절 행정조사 관련 법령 정비 방안	162
제 2 절 행정조사 합리적 운용 및 실효성 확보 방안	166

참 고 문 헌 169

《부 록 》 개별 법령상 행정조사 목록 175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 국가에 있어서 국가의 목표를 국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두고 보다 적극적·계획적이고 주도적으로 행정을 수행함에 따라 행정의 영역이나 활동형식, 수단도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행정작용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전제가 되는 자료나 정보의 수집의 필요성이 과거보다 훨씬 증대되고 있다.¹⁾ 이와 같이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활동을 ‘행정조사’라고 하며, 행정기관은 소극적으로 국민에게 보고나 자료제출 등 일정한 행위를 강제함으로써 정보를 수집하거나, 적극적으로 주택이나 영업소에 출입하여 관련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필요한 서류나 장부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하기도 한다. 이처럼 행정조사의 필요성, 범위, 수단이 확대, 다양화됨에 따라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할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그동안 행정기관은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또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기업 또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해왔다. 그러다보니 조사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위주로 규정이 되어 있었고, 수사 조사로 인한 기업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조사 절차에 대한 통제나 조사로 인한 피해보상 등 피조사자의 권리 구제가 미흡하고,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여러 부처 및 기관이 조사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행정조사가 국민에게 부담이 되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제도로 인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2007년 국무조정실에서는 행정조사에 대한 정비계획을 발표하고, 행정조사에 적용되는 일반법인 「행정조사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1) 김재광 외, 행정조사기본법 제정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 11쪽.

「행정조사기본법」에는 조사의 기본원칙, 조사절차의 통제, 피조사자의 권리보장 등의 내용이 규정됨으로써 행정조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행정조사는 기업에게 큰 행정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²⁾ 행정조사로 인한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역시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행정조사기본법」의 주요 내용이 행정조사를 규정한 개별 법령과 조사 실무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행정조사기본법」에도 행정조사기관 측의 사유로 조사 일정을 연기하는 경우에 사전통지 규정이나 이에 따른 손실보상 등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행정조사에 대한 점검과 평가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 등 여전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조사기본법 및 행정조사 관련 개별 법령의 분석, 검토를 통해 행정조사 절차와 관련한 기업 등 국민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고 기업 등 국민 중심의 행정조사 절차의 합리화를 도모하며 「행정조사기본법」 등 관련 법제의 실효성 및 현실적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및 구성

현행 행정조사 제도를 기업 등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합리적이고 투명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사기본법」을

2) 대한상공회의소 2014년 기업부담지수 조사에서 조세(119), 사회보험 등 준조세(115), 기타 기업부담(112) 부문에서 행정조사로 인한 부담이 평균 136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기업 부담 늘리는 주범은 ‘행정조사·사회보험·법인세’”, 헤럴드 경제 2015. 1. 19 기사 참조.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119000352&md=20150119110118_BL
(2016. 10. 31 최종방문)

중심으로 개별 행정조사 관련 법령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법령에 대한 조사 분석이 필요함과 동시에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각 행정기관은 매년 말에 차년도에 실시할 행정조사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무조정실에 제출된 행정조사 목록을 통해서 전체 행정조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근거 법령의 규정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서 조사의 기본원칙이나 절차, 통제 등 행정조사기본법의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또한, 기업 등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그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조사의 문제점 등을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방법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론으로서 행정조사의 개념과 그 유형, 법적 성격을 살펴보고, 2007년 제정된 「행정조사기본법」을 중심으로 행정조사의 기본원칙과 절차 및 한계 등에 관해서 살펴볼 것이다. 동법은 2007년 5월 17일(법률 제8482호)자로 제정되어 같은 해 8월 18일자로 시행된 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된 바 없어 그동안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동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 검토하면서 행정조사기본법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이를 제5장의 개선방안 모색에 활용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해외의 행정조사 관련 법제를 검토하기로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행정조사에 관해 기본법을 두고 있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은 행정절차법에서 행정조사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개별 법령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판례를 통해서 행정조사의 기본원칙과 한계에 관한 이론이 확립되어 있다. 독일과 일본은 행정절차법에서 별도로 행정조사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조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제4장에서는 개별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행정조사 규정을 분석, 검토할 것이다. 국무조정실에서 제공받은 행정조사 목록(2016. 4. 기준)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을 전부 조사하여 1차적으로 검토한 결과, 행정조사의 입법 유형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개별 법령상 행정조사 관련 규정에 대한 분석 기준을 도출하고, 그 기준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는 규정들을 발굴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제5장에서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연구 내용을 토대로 하여 행정조사기본법 및 개별 관계 법령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행정조사기본법에는 행정조사의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방법과 절차 등이 담겨 있는 만큼, 그 내용을 개별 법령에 적절히 반영하여 기본법이 개별 법령상 행정조사 실시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지침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조사기본법 자체에도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장 측면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고, 행정조사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개별 법령상 행정조사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기업 등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권력적 행정조사의 경우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하고, 행정조사기본법의 원칙과 절차가 개별 법령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1)선행연구 분석, (2)행정조사 관련 국내외 문헌 연구, (3)개별법령상 행정조사 실태 조사, (4)전문가 의견수렴, (5)공동연구의 방식을 채택하였다.

(1) 선행연구 분석

본 연구를 기획하면서 검토한 행정조사 관련 대표적 선행연구는 2005년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한 「행정조사기본법 제정방안 연구」와 2013년에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한 「행정부담감축을 위한 행정조사의 개선에 관한 연구」, 그리고 같은 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한 「국민부담완화를 위한 영업 관련 법령 정비 방안」 등이다.

첫째, 「행정조사기본법 제정방안 연구」는 행정조사기본법의 제정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 이론 및 해외 입법사례 등을 검토하고, 행정조사기본법의 초안을 마련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2007년에 행정조사기본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동법의 제정 취지 및 조문별 해석을 위한 유용한 참고자료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정 이후 동법의 효과성을 파악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행정부담감축을 위한 행정조사의 개선에 관한 연구」는 각종 행정조사로 인해 일반 국민 및 기업에 발생하는 행정부담을 감축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행정조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적·절차적·통제적·조정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동 연구에서도 행정조사기본법의 일부 조문별 개선방안이 제시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입법화되지는 않았다.

셋째, 「국민부담완화를 위한 영업 관련 정비 방안」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2010년 수행한 「기업 등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보고·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이은 후속 연구로서, 영업 규제와 관련하여 중복적 또는 불필요한 자료제출 규정이나 출입 검사 등 행정조사 규정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야별로 대표적 법률상 행정조사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서 상당히 구체적인 분석이 돋보이나, 영업 관련 행정조사를 연구의 범위로 하고 있고

분석의 기준이 조사의 근거의 구체성, 명확성 등에 한정되어 있다.

그밖에 행정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해서는 2004년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한 「행정조사의 실태와 개선방안:규제개혁 차원의 접근을 중심으로」가 있고,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조사의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조사 간소화방안을 제시한 것으로서 2007년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수행한 「중소기업 행정조사 간소화방안 연구」 등이 있다.

(2) 문헌 연구

본 연구의 기본적인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행정조사의 일반이론에 관한 각종 저서와 논문 등을 전부 검토함으로써 행정조사의 개념과 유형 등에 관해 파악하고, 행정조사기본법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문헌과 판례 등을 활용하였다. 한편, 외국의 행정조사 관련해서는 국내에 소개된 미국, 독일, 일본의 행정조사에 관한 일부 문헌을 바탕으로 해당 국가의 문헌 및 입법과 판례 등을 검토하여 각국의 행정조사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3) 실태조사

행정조사가 기업 등 국민에게 가져오는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중심의 행정조사 제도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행정조사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 제공받은 행정조사 목록(2016. 4. 기준)을 바탕으로 행정기관별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규정을 중심으로 행정조사의 실태를 파악하고, 일정한 기준을 도출하여 개별 법령상 행정조사 규정을 분석, 검토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항목별로 문제가 있는 입법례를 제시하고, 한편으로는 모범이 될 수 있는 입법례를 소개하였다.

(4) 전문가 의견수렴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와 여러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자 전문가 자문회의를 총 4회 개최하였다. 2016. 5. 4.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5. 25. 제2차 회의, 6. 22. 제3차 회의를 거쳐 7. 28. 제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부 내용
제1차 전문가회의 (2016. 5. 4. 만복림)	<input type="checkbox"/> 목적 : 행정조사 관련 주요 법적 쟁점과 향후 연구 방향에 관한 전문가 의견 청취 <input type="checkbox"/> 참석자 : 김재광(선문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정남철(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신(한국행정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 조이현(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진식(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진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혜선(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도승(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 배건이(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장미희(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제2차 전문가회의 (2016. 5. 24. 명가의 뜰)	<input type="checkbox"/> 목적 : 행정조사 관련 법적 쟁점 논의(I) - 행정조사의 개념과 범위 <input type="checkbox"/> 참석자 : 김재광(선문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정남철(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신(한국행정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 조이현(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진식(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진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혜선(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3차 전문가회의 (2016. 6. 22. 달옆의 별을 담아)	<input type="checkbox"/> 목적 : 행정조사 관련 법적 쟁점(II) - 행정조사의 한계와 권리구제 <input type="checkbox"/> 참석자 : 김지영(대구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다현(한국교원대학교 강사), 장미희(서울시립

구분	세부 내용
	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최 유(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장은혜(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배건이(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제4차 전문가회의 (2016. 7. 27. 진진바라)	<input type="checkbox"/> 목적 : 개별 법령상 행정조사의 실태 및 문제점 연구 방향 <input type="checkbox"/> 참석자 : 김재광(선문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정남철(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신(한국행정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 조이현(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진식(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승필(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도승(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

(5) 공동연구

이번 연구는 최환용 선임연구위원과 장민선 연구위원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로서, 각 연구자의 전공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업무를 배분하였다. 제2장의 행정조사의 일반론에 관해서는 행정법 전공자인 최환용 선임연구위원이 담당하고, 제3장의 해외 법제 분석은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1절 미국과 제2절 독일은 장민선 연구위원이, 제3절 일본은 최환용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제4장의 개별 법령에 대한 분석, 검토는 장민선 연구위원이 수행하였고, 제5장의 개선방안 도출은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두 연구자가 공동 작업을 하였음을 밝혀둔다.

제 2 장 행정조사 일반론

제 1 절 행정조사의 개념과 분류

1. 행정조사의 개념과 성격

(1) 행정조사론의 전개과정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일정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행정집행을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의사결정이 요청되며, 이를 위해서 관련된 정보를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수집하는 것은 당연하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행정기관이 정책결정이나 행정목적을 위해서 관련되는 정보를 수집하는 작용이 아무런 한계나 절차적 통제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은 목적에 대한 정당성, 즉 행정목적의 달성이라는 측면이외에도 고려하여야 할 법적 가치, 예를 들면 개인정보나 영업정보 등에 대한 보호가 다른 측면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행정법이론에서 등장하는 “행정조사”의 개념은 일정한 의무를 전제로 하여 해당 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리매김되어 왔지만, 행정현상의 복잡화·다양화·다기화(多岐化) 등 행정환경의 변화는 보다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과정 또는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전과정으로서 “행정조사”의 개념을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를 고려해서 대다수의 행정법교과서에서는 ‘행정조사’를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 유형으로 다루어왔던 체계에서 탈피하여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독립적인 행정작용으로 파악하는 방향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행정조사’를 행정상 즉시강제의 체계 속에서 탈피해서 독립적 행정작용으로 파악하는 기저에는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조사기본법」의 제정·시행에 터잡은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정행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던 전통적인 행정법이론체계에서 ‘행정조사’는 행정상 의무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사실적 관계로서 행정행위에 부수된 관계로 파악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은 정책결정 또는 행정목적 자체의 합리성·과학성을 요구하게 되고, 정보의 수집에 그치지 않고 수집된 정보의 관리·활용(또는 제공)에까지 법적 관심이 미치게 되면서 개인정보나 영업정보 등 정보의 보호라는 법적 가치와의 조화를 꾀하게 된다. 즉, 행정조사를 행정상 즉시강제라는 사후적 관점에서의 통제 대상이 아닌, 일련의 행정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 수집이나 정보의 관리·활용을 포섭하는 독립적 행정작용으로 파악함으로써 그로 인한 개인정보나 영업정보 등 보호해야 하는 법적 가치와의 조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행정법이론이 전환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개별 행정법규에서 다양한 입법형식으로 존재하던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적 규율을 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그 결과 제정된 것이 「행정조사기본법」이다.

(2) 행정조사의 개념과 성격에 관한 학설의 경향

앞에서 일반적으로 검토했듯이 오늘날 대부분의 행정법 교과서에서 행정조사는 행정상 즉시강제와는 독립된 행정작용으로 설명된다.

예를 들어, 홍정선 교수는 행정조사의 행정법론상 위치에 관해서 “행정강제·행정벌 내지 행정법상 의무이행확보수단만은 아니며”, 넓은 의미의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하나로 파악하고 있다³⁾. 박균성

3)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15, 682~683쪽.

교수는 “행정조사를 독자적인 행정수단으로 인정하고 비권력적인 행정조사를 포함하여 행정조사를 논하는 것이 타당하다⁴⁾”고 하면서 그 이유로 “행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이라는 점에 중점이 있는 행정작용⁵⁾”으로 “모든 행정조사에 있어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보호, 기업의 영업의 자유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법적 통제를 가할 필요성”이 있음을 들고 있다⁶⁾. 그밖에 다른 교과서에서는 행정조사를 행정상 즉시강제와 구별하여 서술하면서 주로 「행정조사기본법」의 규정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⁷⁾.

행정조사란 종래 협의설에 따라 권력적 조사작용이라고 이해되어 왔으나, 행정조사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행정기관이 사인으로부터 행정상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행정작용으로서 권력적·비권력적 조사를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조사 그 자체는 법적 효과를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사실행위에 해당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 수인의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사실행위와 법적 행위가 결합된 행위라고 할 수 있다.⁸⁾ 이에 관하여 행정조사를 사실행위로서의 행정조사와 행정행위로서의 행정조사로 나누고, 행정행위를 명령적 행위의 명령형식(출두명령, 출석명령, 기업에 대한 보고서, 장부 제출명령 등)과 준법률행위적 확인행위의 형식(자료 확인이나 검정)으로 구분하며, 출입이나 심문 등은 사실행위로 보는 견해도 있다.⁹⁾

4)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15, 496쪽.

5)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15, 496쪽.

6)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15, 496쪽.

7) 김남철, 행정법강론, 박영사, 2014, 439쪽 ; 최봉석, 행정법총론, 법령정보관리원, 2014, 305쪽 참조.

8)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4, 434쪽.

9) 오준근, “행정조사제도의 법리적 논의·입법동향의 평가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45집(2009. 8), 365쪽 각주 12번

이와 같은 학계의 접근과 달리 최근에는 행정조사를 규제개혁의 관점에서 재조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빈번한 행정조사가 기업이나 국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행정조사를 위하여 철저적인 통제를 부과하고자 하는 노력이 그러하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연구원의 「중소기업 행정조사 간소화방안 연구」에 따르면, 행정조사는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경영외적 부담’의 61.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영외적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행정조사의 간소화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¹⁰⁾. 한국행정연구원의 「행정부담 감축을 위한 행정조사의 개선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행정조사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피조사자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조사대상, 수시조사, 조사내용의 중복이나 광범위성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행정조사기본법」의 실효성을 높여 조사대상 선정, 집행체계, 절차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¹¹⁾.

(3) 행정조사기본법의 제정

가. 기본법의 제정 경과

행정조사는 법령의 실효성 확보 및 일반적인 업무 감독, 정책 입안에 기초가 되는 통계수집 등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어 왔지만, 개별법상 조사요건이 불명확하거나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행정기관이 조사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높았다.¹²⁾ 또한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높고, 유사·동일한 사안에 대해 중복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기업 등 피조사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점 등이

10) 조이현, 중소기업 행정조사 간소화방안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2007, 1쪽.

11) 김신·최진식, 행정부담 감축을 위한 행정조사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3, 162-171쪽.

12) 국무조정실, 2007년도 규제개혁백서, 2008, 934쪽.

지적되어 왔다.¹³⁾

<표 1> 행정조사 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¹⁴⁾

문제점	상세 내용
관 주도의 행정조사 관행 지속	○ IT 기술의 발달로 민간·정부기관간 정보 유통 활발, 기업에 대한 감시장치의 확대로 규제의 자율준수 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행정조사를 행정기관이 직접 조사·관리
유사·동일 사항에 대한 중복조사	○ 기업의 유사·동일한 경영활동에 대해 중복조사가 이루어져 기업 부담 가중 - 조사자료 공동활용 미흡, 부처와 지자체간 역할 불명확, 행정조사를 유발하는 인·허가 제도 중복관리 등으로 중복 조사 존재
포괄적인 조사요건 및 절차 미확립	○ 개별 법령상 행정조사의 사유, 대상 및 내용 등 조사의 요건이 포괄적으로 규정 - 자의적 행정조사, 행정조사에 대한 예측 곤란 ○ 법령상 증표제시 정도의 절차만 규정되어, 사전 통지 등 절차는 세무, 공정거래조사 등 일부 국한
제재 위주의 조사 제도 운영	○ 현행 행정조사는 주로 범위반 여부 확인과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위주로 운영 ○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 제기
무분별한 행정조사에 대한 통제장치 미흡	○ 행정기관의 무분별한 행정조사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나 불법, 부당 조사로 인한 피해보상 등의 제도적 장치 미흡

13) 국무조정실, 2007년도 규제개혁백서, 2008, 934쪽.

14) 국무조정실, 기업 행정조사 개선방안,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 자료(2004. 12. 3), 3-5쪽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규제개혁 차원에서 행정조사가 기업에게 주는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4년 12월 3일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행정조사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¹⁵⁾ 그 동안 관 주도의 행정조사 제도를 기업 자율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중복조사를 개선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조사기준이나 보고양식을 통합하고, 개별 법령에 산재된 행정조사의 조사요건을 명확화·구체화하였으며, 조사절차를 신설하거나 보완하고 제재수준을 적정화하였고,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조사절차 확립 등 행정조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법 성격의 「행정조사기본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¹⁶⁾

2004년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¹⁷⁾와 기업행정조사 개선방안의 확정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2005년 1월 「행정조사기본법 제정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하였다. 법률 제정과 관련하여 기존의 「행정절차법」을 보완하는 방안과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있었지만,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제정이 필요하다는 학계 및 경제단체의 의견과 행정처분 이전 단계에서의 각종 자료수집 및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을 「행정절차법」에 모두 규정하기 곤란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기로 하였다.¹⁸⁾

15) 국무조정실, 2007년도 규제개혁백서, 2008, 934쪽

16) 국무조정실, 기업 행정조사 개선방안,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 자료(2004. 12. 3), 6-21쪽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17) 신종익·임상준, 행정조사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04

18) 김재광, 행정조사기본법의 입법과정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제33권 제2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491-493쪽.

동법의 제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¹⁹⁾

기본 방향	상세 내용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조사는 제도개선 및 규제순응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용 ○ 기업등의 자율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행정기관의 현지조사 최소화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기관은 매년 당해연도에 실시할 행정조사의 대상, 내용, 시기, 방법 등에 관한 조사계획을 수립·공표 ○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조사 계획 수립
행정조사의 절차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은 조사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통지 ○ 조사원의 조사명령서와 증표제시 의무 ○ 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와 의견진술 기회 보장
행정편의적 조사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조사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하여 실시 ○ 근거법령이 없거나 포괄적인 조사발동 요건에 의거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자의적 행정조사 금지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조사권 남용시 처벌 ○ 조사공무원의 비밀준수 의무 ○ 조사결과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시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권리구제 절차와 방법 공지

이와 같은 논의를 거쳐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 등에게 행정조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 4월에 제정되었다.²⁰⁾

19) 국무조정실, 기업 행정조사 개선방안,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 자료(2004. 12. 3), 20-21쪽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20) 국회 정무위원회, 행정조사기본법 심사보고서(2007. 4), 4쪽.

나. 기본법의 주요 내용

① 행정조사의 정의

동법 제2조제1호에서는 ‘행정조사’를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 규정에는 행정조사의 목적이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밝히는 동시에, 행정조사의 수단, 방법으로서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보고·자료제출 요구, 출석·진술 요구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② 다른 법률과의 관계

동법 제3조제1항은 “행정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 법의 기본법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법령에 행정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만 두고 상세한 조사절차나 방법, 한계 등은 이 법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해석된다.

③ 기본법의 적용 제외 범위

법 제3조제2항은 이 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정조사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제 3 조(적용범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행정조사를 한다는 사실이나 조사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안전보장·통일 및 외교에 관한 사항

2. 국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가. 군사시설·군사기밀보호 또는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 나.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징집·소집·동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정보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
 5. 조세·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6. 금융감독기관의 감독·검사·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및 제28조(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행정조사기본법(안)의 제정 단계에서 행정조사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세무조사나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 등을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당초 제정법안에서는 국가안보·통일·외교에 관한 사항, 국방·안전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형사·행형·보안처분에 관한 사항만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²¹⁾ 그러나, 조세·금융·공정위 관련 행정조사의 경우는 국민의 납세의무, 금융 및 경제질서 등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와 관련한 조사절차로서 독자적인 법체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시적인 조사활동이 필요하며, 기본법이 정한 절차나 원칙 등을 적용할 경우 조사목적은 달성하기

21) 자세한 내용은 김재광 외, 앞의 보고서, 78-81쪽.

어렵다는 점 등으로 인해 적용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²²⁾ 이에 대해 특히 세무조사는 행정조사의 대표적인 예로서, 이를 기본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시킬 경우에는 동법의 제정 의의가 크게 상실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²³⁾ 또한, 행정조사기본법의 근본 취지를 유지하고 동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적용 제외범위를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²⁴⁾ 그러나, 최종 논의단계에서 조세·금융·공정위 관련 행정조사가 추가되는 것으로 현행과 같이 제외 범위가 조정되었고, 동법 제3조제3항에서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정조사에 관해서도 “동법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및 제28조(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된다”는 규정을 됴으로써 비판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4) 소 결

행정조사는 실정법상으로는 매우 다양한 유형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입법의 형태 또한 다양하여 일의적으로 정의하기가 어렵다. 특히 그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일의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입법의 형태에

22) 김재광, 행정조사기본법 입법과정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제33권 제2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500쪽.

23) 김재광 외, 행정조사기본법 제정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 4, 80-81쪽. 이에 대해서는 행정조사기본법상의 조사가 임의조사를 전제로 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세무조사의 경우 등의 강제조사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입법형식적으로 세무조사를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한 것은 입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도 있다. - 최승필, 세무조사에서의 권리구제에 관한 법적 검토 -판례를 중심으로-, KERI Insight(13-07), 한국경제연구원, 2013, 4쪽.

24) 전국경제인연합회, 행정조사기본법(안) 검토 의견, 2006, 5쪽.

따라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점에서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정조사에 관한 통일적인 법리를 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²⁵⁾

따라서 행정조사의 입법유형을 분류하고, 그 법적 성격을 밝힘으로써 「행정조사기본법」과 개별법령에 따른 행정조사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입법모델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2. 행정조사의 분류

(1) 학설상 행정조사의 분류

종래 행정법학에서는 행정조사를 조사의 대상에 따라 대인적조사, 대물적조사, 대가택 조사 등으로 구분하고, 조사의 권력성 여부에 따라 권력적 조사와 비권력적 조사로, 조사방법 및 형식에 따라 직접조사와 간접조사, 개별적 조사와 일반적 조사, 구두에 의한 조사와 문서에 의한 조사로, 조사영역에 따라 경찰행정상 조사 복리행정상 조사, 재무행정상, 군사행정상 조사 등으로 분류해왔다.²⁶⁾

그 이후 행정조사에 대해서 조사 주체에 의한 구분, 법령의 근거에 의한 구분, 법적 성질에 의한 구분, 조사목적에 의한 구분으로 재검토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²⁷⁾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의 주체에 의한 구분으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행정기관,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이나 사인에 의한 조사가 있다.²⁸⁾

둘째, 법령의 근거에 의한 구분으로는 법령에 근거한 행정조사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조사로 나누어볼 수 있다.²⁹⁾

25) 신상환, 行政調査의 法理論과 法制小考, 법제연구 제13호, 한국법제연구원, 1997, 238쪽.

26) 오준근, “행정조사의 공법이론적 재검토”, 공법연구 제31집 제3호(2003. 3.), 534-535쪽.

27) 오준근, 앞의 글, 535-538쪽.

28) 오준근, 앞의 글, 535쪽.

29) 오준근, 앞의 글, 536쪽.

셋째, 법적 성질에 의하면, 행정행위로서의 행정조사와 사실행위로서의 행정조사가 있다.³⁰⁾

넷째, 조사 목적에 따라 i) 관리감독 차원의 조사, ii) 법 또는 규제 위반사실 확인 차원의 조사, iii) 행정처분 전단계로서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 iv) 행정계획 수립·정책 입안을 위한 실태조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³¹⁾

한편, 조사의 방법에 따라서는 출석 및 진술요구,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시료채취 등으로 나뉜다. 「행정조사기본법」에서도 행정조사를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보고 요구·자료제출 요구 및 출석·진술 요구로 유형화하고 있다. 그런데,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행정조사는 이보다 더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실태조사도 행정조사의 하나로 볼 수 있고, 정보 수집이나 범위반 사항 확인 등을 위해 이루어지는 각종 ‘조사’도 행정조사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3의 경우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 중지를 위한 사실 확인에 필요한 조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전술한 유형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³²⁾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6.8.12.] [법률 제13486호, 2015.8.11., 일부개정]
제30조의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의 중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u>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u>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30) 오준근, 앞의 글, 536쪽.

31) 오준근, 앞의 글, 537쪽.

32) <부록> 「개별 법령상 행정조사 목록」에 포함된 행정조사의 하나이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6.8.12.] [법률 제13486호, 2015.8.11., 일부개정]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자기인증, 부품자기인증 또는 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을 한 경우</p> <p>2. 제30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동차자기 인증을 한 경우</p> <p>3.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부품 자기인증을 한 경우</p> <p>3의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 제작자명, 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경우</p> <p>3의3. 제30조의5제5항에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p> <p>4. 제31조제3항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5. 자동차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제작등을 한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p> <p>6. 부품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경우</p> <p>7. 대체부품의 인증 내용과 다른 대체부품을 판매한 경우</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p>

(2)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유형

「행정조사기본법」 제9조 이하에서는 행정조사의 유형으로서 출석·진술 요구, 보고·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시료채취를 규정하고 있다. 개별 법령에서는 보고 명령, 자료제출 명령, 출입 검사 및 질문, 장부나 서류 조사 또는 검사, 실태조사 등의 유형으로 보다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3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가. 출석·진술 요구

행정기관의 장이 조사대상자에게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하는 때에는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출석 요구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9조제1항, 제17조제1항). 출석 요구서에는 일시와 장소, 출석 요구의 취지,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 제출 자료, 출석거부에 대한 제재, 그밖에 행정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자는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경우 업무나 생활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출석일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법 제9조제2항).

나. 보고·자료제출 요구

행정조사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보고’는 그동안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보고의 접수 및 거부, 법적 효과 발생 시기 등에 관한 다툼 및 이로 인한 권리 구제의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학계에서 거의 관심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³³⁾ 따라서, ‘보고’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에 따라 행정법학에서 보고는 “하급행정기관이 상급행정기관에 대하여 또는 국민 또는 기업 등이 행정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이나 결과를 구두 또는 문서로 알리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³⁴⁾ 그런데, 현행법상 행정조사로서의 보고는 자료제출과 함께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입법의 방식은 행정기관의 장이 국민 등 조사대상자에게 일정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거나 요구하는 형

33) 강현철·이세정, 기업 등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보고·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27쪽.

34) 강현철·이세정, 앞의 보고서, 27쪽.

태와 조사대상자에게 일정한 사항을 보고할 의무를 지우는 형태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제4장에서 자세히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이 조사대상자에게 일정한 조사사항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는 때에는 일시와 장소, 조사의 목적과 범위, 보고 내용, 보고 거부에 대한 제재, 그밖에 행정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보고 요구서를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0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한, 행정기관의 장이 조사대상자에게 장부·서류나 그밖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도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자료제출 요구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 입법례 상 보고의무를 규정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감독권의 일환으로 보고를 하게 하는 것과,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의 하나로 보고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³⁵⁾ 전자는 보칙에 규정되는 것이 보통이며, 후자는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규정된다.³⁶⁾ 일반적인 감독권의 하나로 보고를 하게 할 경우에도 보고사항을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있고, 필요한 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추상적으로 규정한 경우도 있다.³⁷⁾ 그리고 보고를 받는 감독청의 요구가 있을 때 보고를 하게 하는 것과 보고의무를 지는 기관이나 사람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주체적으로 보고를 하게 하는 것도 있다.³⁸⁾

행정조사기본법에서 보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제4조제1항에서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개별 법률에서는 보고대상 사항을 한정해야 한다.³⁹⁾

35)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13, 426쪽.

36)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13, 426쪽.

37)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13, 427쪽.

38)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13, 428쪽.

39)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13, 425-426쪽.

다. 현장조사

조사원이 가택·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 또는 법령 등에서 현장조사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를 조사대상자에게 조사개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1조제1항, 제17조제1항). 현장출입조사서에는 조사목적, 조사기간과 장소,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조사범위와 내용, 제출 자료,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 그밖에 행정조사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현장조사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법 제11조제2항). 다만, 조사대상자가 동의하거나,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의 업무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행정조사를 실시하게 될 경우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증거인멸로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법 제11조제2항 단서).

현장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법 제11조제3항). 이러한 증표 제시 의무는 개별 법령에도 다수 규정되어 있다.

개별 법령에서는 출입검사·질문이라는 제목으로 규정된 경우가 많으며, 종래 출입검사·질문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출입검사·질문의 근거와 범위, 사전통지, 출입검사자의 증표제시 의무 등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하였으나, 행정조사기본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 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따로 둘 필요가 있는지 문제된다.⁴⁰⁾ 이에 관하여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서는 행정조사기본법과 중복되는 사항은 규정할 필요가 없고, 개별 법령에는 출입검사·질문의 근거만 두어도 충분하다고 밝히고 있다.⁴¹⁾ 그러나, 국회법제실의 「법제이론과 실무」에서는

40)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13, 425쪽.

41)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13, 425쪽.

2007년 행정조사기본법의 시행 이후에 개별법에서는 행정조사의 근거를 두고, 방법·절차 등은 「행정조사기본법」의 규정을 따른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⁴²⁾ 생각건대, 기본법은 개별 법률에 대해 상위법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조사에 있어서 기본원칙, 방법이나 절차 등의 공통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되도록 행정조사를 규정한 법령에 행정조사의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조사원이 현장조사 중에 자료·서류·물건 등을 영치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시켜야 한다(법 제13조제1항). 자료 등의 영치는 현장조사시 수반되는 행위로서, 조사대상자의 재산권, 프라이버시의 권리 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별도의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원이 자료 등을 영치하는 경우에 조사대상자의 생활이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자료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사본을 작성할 수 있으나(법 제13조제2항),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자료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시료채취

시료채취는 검사, 측정, 분석 등을 할 목적으로 대상이 되는 물질에서 그 일부를 채취하여 조사하는 것으로서 견본이나 표본을 모집단에서 떼어내는 경우 샘플링 혹은 발취라고 한다.⁴³⁾

조사원이 조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시료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도로 하여야 한다(법 제12조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시료채취 당시의

42) 국회법제실, 법제이론과 실무, 2016, 595쪽.

43) 네이버 ‘화학용어사전’에서 “시료채취”를 검색한 결과이다.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19935&cid=50318&categoryId=50318>)

(2016. 10. 31 최종방문)

시장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시료를 채취할 때에 조사대상자에게 손실보상 청구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한다(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청구를 하는 조사대상자는 손실액 및 명세, 산정방법 및 입증 서류 등을 첨부한 손실보상청구서를 시료채취를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조제2항). 청구서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하여 그 결정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하며(시행령 제7조제3항), 이에 대해 이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시행령 제7조제4항).

제 2 절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1. 조사권 남용 금지의 원칙

행정조사는 조사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은 조사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된다(법 제4조제1항). 조사가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상 조사의 목적을 엄격하게 행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⁴⁴⁾ 그러나, 조사의 근거 법령에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포괄적 수권 규정을 둔 입법례가 많다.⁴⁵⁾ 행정조사를 범죄 수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일정한 집단에 대한 정치적 탄압용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조사권의 남용으로서 위법이라고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세무조사 영역에서 납세자의 형사책임 추구를 유일한 목적으로 발하여진 소환영장은 위법이라는 부적절 목적 금지의 원칙(improper purpose doctrine)이 판례상 인정되어 왔다.⁴⁶⁾

44) 김재광 외, 앞의 보고서, 28쪽.

45) 김재광 외, 앞의 보고서, 28쪽.

46) 김재광 외, 앞의 보고서, 29쪽.

2. 객관적 조사대상자 선정의 원칙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행정조사는 법령에 규정된 자에 한하여 행사될 수 있고, 조사상 필요하다고 하여 그 범위를 무한정 확대할 수는 없다.⁴⁷⁾ 개별 법령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반면, 그 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입법례도 다수 존재한다.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입법례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조사대상자의 조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으로 조사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공동조사 및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복조사의 문제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것으로서 2004년 이후로 정비의 대상이 되어 왔다. 사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한부처 내 다른 기관이나 여러 부처간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동조사운영계획을 세워서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 제14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동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4조(공동조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2. 서로 다른 행정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47) 김재광 외, 앞의 보고서, 33쪽.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조사를 해야 하는 분야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건설사업장의 관리에 관한 분야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2. 유해·위험물질의 관리에 관한 분야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3. 식품안전에 관한 분야로서 「식품위생법」 제17조⁴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8조,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76조 및 제102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4. 그 밖에 국무조정실장과 관계 행정기관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간에 협의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분야

이러한 조사 내용에 대해서 사전통지를 받은 조사대상자는 행정기관에 공동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법 제14조제2항),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법 제14조제3항). 또한, 국무조정실장은 각 행정기관이 제출한 행정조사운영계획을 보고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법 제14조제4항). 그런데, 공동조사 신청권을 조사대상자에게 부여하는 것 외에도 행정기관이 자발적으로 공동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4. 사전예방적 조사의 원칙

행정조사는 주로 법령 등의 위반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행정조사는 법령 등의

48) 인용된 다른 조항들이 모두 행정조사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식품위생법 제17조는 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에 관한 규정으로서 행정조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항이라고 할 것이다. 식품위생법에서 행정조사의 근거 규정으로는 제19조의4(검사명령 등),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제70조(지도·감독 등) 등을 들 수 있다.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위해서보다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법 제4조제4항). 이 규정은 선언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종래 행정조사가 제재 위주로 운영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조사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행해지도록 함으로써 조사대상자가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조사결과를 제도개선과 법령정비 등에 활용하는데 주안점을 두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된다.⁴⁹⁾

5. 비밀누설금지 및 정보 부당사용금지의 원칙

행정기관은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4조제5항). 또한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조제6항)

6. 정기조사 실시의 원칙

행정조사는 법령 등 또는 행정조사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행정기관에 의해서 예고없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조사를 지양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을 제출한 정기적인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⁵⁰⁾

첫째, 법률에서 수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예컨대, 「국민건강보험법」 제94조에 근거한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에 있어서 신고한 사항이나 제출받은 자료에 대

49) 김영조, “행정조사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법학연구 제8권 제3호, 101쪽.

50)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

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직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하여 수시 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서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도 그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는 문제된다.

둘째,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경우에도 수시 조사를 할 수 있다.

셋째,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 등의 위반에 관한 혐의를 통보 또는 이첩받은 경우에도 수시 조사가 허용된다.

넷째, 행정기관이 조사대상자의 법령위반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하여 긴급하게 실시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주기 또는 시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수시 조사를 할 수 있다(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 3 절 행정조사의 절차 및 한계

1. 행정조사기본법상 절차

(1) 개별조사계획 수립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기 전에 개별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법 제16조제1항). 다만, 행정조사의 시급성으로 행정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로 개별조사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개별 조사계획에는 조사의 목적·종류·대상·방법 및 기간과 조사의 근거, 조사원의 구성, 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 조사거부시 제재의 내용 및 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16조제2항, 시행령 제10조).

(2) 조사의 사전통지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7조제1항). 누구든지 자신이 어떠한 사유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인지를 알 권리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조사 내용 및 범위를 사전에 통지받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출석요구, 보고요구, 자료제출요구나 현장조사시에 일정한 내용이 기재된 요구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조사 개시 이전에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 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임의적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조사 개시 시에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하는 것이 허용된다(법 제17조제1항 단서).

이러한 사전통지 의무는 현재 행정조사를 규정한 개별 법령에 규정된 사례도 적지 않으며, 이 경우에 사전통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조사의 효력이 문제된다. 행정조사에 대한 사전통지의 요부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 법원에서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사전통지는 질문검사권을 행하는데 있어서 일률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⁵¹⁾ 그러나 이에 관해서는 사전통지가 질문검사권의

51) 荒川民商事件判決, 日本最判 1973. 7. 10. 刑集 27卷 7號, 1205面 - 김재광 외, 앞의 보고서, 49쪽에서 재인용

적법요건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제시된 바 있다.⁵²⁾

미국에서는 사전통지 요건은 전통적으로 확립된 것으로서, 행정적 소환장 및 보고서 요구는 보통 조사목적, 조사범위, 담당부서 및 근거 법률 등의 기재를 포함하는데, 이를 결여한 채 소환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소환장의 적법성 요건의 하나인 조사목적과 구하는 자료의 관련성 요건에 비추어 위법이 된다고 보고 있다.⁵³⁾

(3) 조사 연기신청

출석요구서등을 통지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화재 그밖의 재해로 인해 사업장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와 법 제11조제1항에 의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장부 및 관련 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조사를 받는 개인이 질병이나 출장 등으로 행정조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당해 행정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법 제18조제1항, 시행령 제11조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연기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사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법 제18조제3항).

(4)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당해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조사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는 데 과도한 비용 등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서 제3자에 대한 조사를 허용하고 있거나 제3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제3

52) 北野弘久編, 質問檢事權の法理, 成文堂, 1974, 23-24面 - 김재광 외, 앞의 보고서, 49쪽에서 재인용

53) 김재광 외, 앞의 보고서, 50쪽.

자에 대해서 보충조사를 할 수 있다(법 제19조제1항). 다만, 제3자는 원래 조사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의 범위가 명확하게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때에도 법 제17조제1항과 마찬가지로 조사개시 7일 전까지 보충조사의 일시, 장소, 취지 등을 서면으로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법 제19조제2항), 원래의 조사대상자에게도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 실시를 알려야 한다(법 제19조제3항).

(5) 조사결과 통지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법 제24조). 개별 법령에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둔 경우도 있으나, 날짜를 명시한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조사 결과의 통지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이 조항에 따라서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 2016.7.28.] [법률 제13902호, 2016.1.27., 일부개정]

제58조(지도·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조사를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 2016.8.12.] [법률 제13805호, 2016.1.19., 타법개정]
<p>제109조(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의 자격 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 ③ (생략)</p> <p>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그 사업주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6) 자율신고제도

2004년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도 현행 행정조사 제도의 문제점의 하나로 관 주도의 행정조사 제도 운영이 지적된 바 있다. 정부와 민간 사이에 정보의 소통이 자유로워지고, 기업들 자체의 규제 준수 의식이 제고된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행정기관 중심의 행정조사 제도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⁵⁴⁾ 따라서, 2007년 제정된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행정기관이 조사하고자 하는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자율신고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특히, 양곡의 유통현황 조사, 승강기 검사기관의 인력·설비·검사 실적 조사 등과 같이 정책입안을 위한 단순한 실태조사나 관리감독 차원이 행정조사와 사실 확인 유형의 행정조사도 최대한 자율신고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⁵⁵⁾

54) 국무조정실, 기업 행정조사 개선방안,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 자료집, 2004. 12. 3, 3쪽.

55) 김재광 외, 앞의 보고서, 85쪽.

동법 제25조는 자율신고제도에 대해 규정하면서, 행정기관의 장은 자율관리체제의 기준을 수립하여 공표하고,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자율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것과(법 제26조), 자율신고를 한 기업과 자율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 기업에게 행정조사의 감면 또는 행정·세제상의 지원 등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법 제27조). 개별 법령에서도 인센티브 부여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나,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훈령에 규정되어 있어서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들기 때문에 법령에 직접 규정하여 부여할 필요가 있다.⁵⁶⁾

현재 자율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법령으로는 「환자안전법」과 「항공법」, 「항공보안법」을 들 수 있다. 「환자안전법」 제14조에 따르면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으며(제1항), 사고를 일으킨 자가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제2항). 「항공법」 제49조의4에서는 경미한 항공장애 상태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안 경우 또는 발생할 것이 예견되는 사람은 이를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으며, 보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고자의 신분을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공보안법」 제33조의2에서는 항공보안에 대한 자율적 신고를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법률에서 자율보고 또는 자율신고를 도입한 것은 사고나 장애상태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한 행정조사를 자율보고나 신고로 갈음하려고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6) 김재광 외, 앞의 보고서, 87쪽.

환자안전법

[시행 2016.7.29.] [법률 제13113호, 2015.1.28., 제정]

제14조(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 등) ①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보고자”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이하 “자율보고”라 한다)를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한 경우에는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자율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항공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14호, 2016.3.29., 일부개정]

제49조의4(항공안전 자율보고) ①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 외에 항공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상태(이하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라 한다)를 발생시켰거나 경미한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안 사람 또는 경미한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이하 “항공안전 자율보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보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33조제1항제5호부터 제19호까지 또는 제21호부터 제3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사람이 그 장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항공안전 자율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보고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항공보안법 [시행 2016.1.19.] [법률 제13811호, 2016.1.19., 일부개정]
<p>제33조의2(항공보안 자율신고) ① 민간항공의 보안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실을 안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이하 이 조에서 “항공보안 자율신고”라 한다)할 수 있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u>그 신고 내용을 보안사고 예방 및 항공보안 확보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③ <u>공항운영자등은 소속 임직원이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접수·분석·전파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⑤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신고방법 및 신고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p>

(7) 행정조사의 점검과 평가

「행정조사기본법」에 의하면 국무조정실장은 행정조사의 효율성·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조사 실태, 공동조사 실시현황 및 중복조사 실시 여부 등을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평가하여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29조제1,2항). 이것은 각 부처별 행정조사의 점검과 평가를 위한 조사를 규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사의 점검과 평가는 국무조정실에서 담당한다. 국무조정실은 점검과 평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해당 행정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점검수행자로 하여금 대상 행

정기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확인·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확인·점검 실시계획 및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4조제3항).

2. 행정조사의 한계

(1) 실체적 한계

가. 일반원칙에 의한 한계

행정기관이 행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⁵⁷⁾ 법률유보의 원칙상 국민에 대한 의무 부과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상 근거를 받는 행정처분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적어도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명령이나 강제를 수단으로 하는 권력적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기업 등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침해를 가져오고, 위반시에 일정한 제재가 가해진다는 점에서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어야 하고, 비례원칙이나 명확성 원칙 등 헌법상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⁵⁸⁾

헌행법상 보고나 자료제출 의무 등 행정조사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고 하위법령에서 규정되고 있거나,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목적이나 대상 등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조사의 주체나 보고의무자, 조사의 내용, 시기, 방법, 절차 등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이 결여되어 있거나 행정규칙에서 이에 관해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의무 이행을 위한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⁵⁹⁾

57) 김동희, 행정법(I), 박영사, 2011, 472-473쪽.

58) 강현철·이세정, 앞의 보고서, 30쪽.

59) 강현철·이세정, 앞의 보고서, 30쪽.

또한 보고의무 등 부과 목적은 적정하고도 효과적인 행정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법령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보고의무 등 부과를 통하여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므로, 보고의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 벌칙을 두는 경우에도 행정형벌보다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과태료의 금액도 다른 입법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⁶⁰⁾

나. 행정조사기본법상 기본원칙에 의한 한계

전술한 행정조사기본법의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조사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법령상 규정된 목적에 따른 조사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되고, 조사대상을 선정할 때에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며, 중복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정기조사를 원칙으로 하므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시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다. 진술거부권의 적용 여부

헌법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당연히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여기에서 진술거부권의 대상이 되는 진술은 형사책임과 관련된 것이라면 범죄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간접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발견에 단서를 제공하는 사항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형사절차에서 행하여진 진술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절차에서 행한 진술도 포함된다.⁶¹⁾

60) 강현철·이세정, 앞의 보고서, 30-31쪽.

61) 정한중, 행정조사와 진술거부권 고지의무, 외법논집 제38권 제2호, 한국외국어대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보고 요구나 자료제출요구, 출석·진술 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행정조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 법령에서도 일정한 경우에 조사대상자에 보고나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에 답하도록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제재를 규정함으로써 진술을 강제하고 있다.

행정조사 절차에서 조사대상자 또는 제3자에게 진술을 강제하는 경우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서 학계에서는 찬반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⁶²⁾ 생각건대, 오늘 날에는 행정권의 비대화와 권력적 행정의 증가로 인해 권력적 행정조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헌법상 진술거부권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그 권리를 형사절차에 국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준형사절차, 행정절차, 민사절차에서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⁶³⁾ 따라서, 구두 진술이든 서면보고든지 이를 토대로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술거부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⁶⁴⁾

학교 법학연구소, 2014, 55쪽.

62) 헌법 제12조제2항은 순수한 형사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순수한 행정절차에서는 진술거부권이 적용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행정조사가 형사상 책임추궁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그 질문이 행정조사와 형사절차의 양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진술거부권이 인정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헌법상 진술거부권 규정은 형사절차에만 국한되지 않고, 행정절차 등에 있어서도 형사책임 추구를 위한 자료의 취득 수집과 직결되는 한 적용된다는 견해도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정한중, 앞의 논문, 60쪽 참조.

63) 정한중, 앞의 논문, 62쪽.

64) 정한중, 앞의 논문, 62쪽.

(2) 절차적 한계

가. 행정조사기본법상의 절차

행정조사의 절차에 관해 개별법상 규정된 절차 외에도 행정조사기본법에 규정된 절차인 사전 통지의무, 출입 검사 등의 경우 증표제시의무, 조사 후 결과 통보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된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의견제출(법 제21조), 조사원의 교체신청(법 제22조),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조사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는 권리(법 제23조)를 보장하여야 한다.

나. 영장주의 적용 여부

헌법 제12조제3항과 제16조 후단에 의해서 인정되는 영장주의가 행정조사에도 인정될 것이냐가 문제될 수 있다. 영장주의는 원래 형사사법권의 남용을 억제하고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나, 주거나 가택에 대한 출입 검사 등 행정조사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도 형사소추절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영장주의를 배제할 것인지의문이다.⁶⁵⁾ 이에 관해서는 통상적인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범죄행위의 소추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만 영장주의가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다.⁶⁶⁾ 반면에, 행정조사가 형사소추절차로 이행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영장이 필요하고, 기타 권력적 행정조사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하나 영장을 기다려서는 적시에 적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⁶⁷⁾ 생각건대, 일반적인 행정조사에 모두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개인의 가택이나 영

65) 김동희, 앞의 책, 473쪽.

66) 김성수, 일반행정법, 홍문사, 2014, 522쪽.

67) 김동희, 앞의 책, 473쪽.

업소에 출입하여 검사나 조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의무를 강화하고 조사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와 관계 서류를 함께 제시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해 판례는 행정조사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은 관세법상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압수·수색영장없이 이루어진 우편물의 개봉 등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⁶⁸⁾ 또한, 하급심 판결에서도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행정조사에 있어서도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⁶⁹⁾

제 4 절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행정청의 조사활동이 관련 법령이나 법적 한계를 벗어나서 위법하게 행해졌다면, 그러한 조사활동에 대하여 조사대상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해당 행정조사가 적법하게 행해진 경우라도 이 조사행위로 인하여 일반적·사회적 제약을 넘어서 조사대상자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라면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보상할 수 있는 법리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한편, 행정조사가 행정활동이나 행정결정을 위한 전제로서 사전절차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면, 그로 인한 권리침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절차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68) 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도7718 판결

69) 의정부지법 2008.4.23. 선고 2008고단291 판결

1. 위법한 행정조사로 인한 구제

(1) 항고소송

행정조사가 법적 한계를 벗어나서 위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것을 대상으로 사법적 구제가 가능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것은 행정조사의 처분성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관되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행정조사가 사실행위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고, 특히 상대방의 자발적 협조와 동의하에서 이루어지는 비권력적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처분적 성격이 배제될 것이다. 종래 세무조사의 경우 종래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과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비권력적 조사작용으로 보아 처분적 성격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최근에 세무관서가 세무조사를 하기로 결정한 행위 자체를 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⁷⁰⁾ 그러나, 침익적 성격을 가지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처분성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손해배상

행정기관의 위법한 행정조사로 인하여 조사대상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조사대상자는 행정기관이 속한 행정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성질을 갖는 행정조사뿐만 아니라 사실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행정조사의 경우도 이러한 「국가배상법」상의 직무행

70)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 판결

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행정조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 경우에는, 행정조사는 물론이고 이러한 행정조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로 인한 손해도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이때 행정조사로 인하여 생긴 신체·재산상의 손해 이외에도 기업비밀 침해, 영업방해, 신용상실 등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는데, 행정조사로 인한 사생활침해, 기업비밀 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액은 구체적으로 산정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2. 적법한 행정조사로 인한 구제

행정기관의 적법한 행정조사로 인하여 조사대상자가 일반적인 사회적 제약을 넘는 특별한 희생을 당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행정조사에 대한 손실보상제도를 명문화하고 있는 법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⁷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⁷²⁾ 등이 있다. 이들 법률에서는 토지, 건설, 해양 등의 분야에서 측량(조사)을 위해 토지를 점용·사용하거나 토지상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경우로 국한되어 있으며, 그 외 각종 물건의 수거, 보고서 또는 자료제출 등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⁷³⁾ 이에 대하여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시료채취 등의 경우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⁷⁴⁾, 개별법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도 시료채취 등의 경우에는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7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73) 신종익·임상준, 『행정조사의 실태와 개선방안 - 규제개혁차원의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2004, 51면.

74) 「행정조사기본법」 제12조

3. 행정절차법에 의한 구제

「행정절차법」 제3조제1항에서는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를 ‘행정절차’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조사를 행정절차의 하나로 볼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행정조사가 「행정절차법」에 행정절차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행정활동이나 행정결정을 위한 사전절차적 측면을 강조할 경우 행정조사를 ‘행정절차’로 볼 수 있다.⁷⁵⁾

행정조사에 관한 절차 요건 중 증표 제시 의무와 사전통지 의무는 개별 법령에도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행정조사기본법」에 명시됨으로써 행정조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동법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현장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하고, 동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의 내용, 일시와 장소,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 등이 담긴 내용의 요구서를 서면으로 발송해야 하나, 동항 단서에서는 이러한 사전통지 원칙의 예외가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법률상 명시적으로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여 행정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그 효력이나 조사자에 대한 제재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행정조사의 효력에 대해 취소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행정조사의 ‘처분성’과 관련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행정조사에서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서 실시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상대방의 동의가 결여된 경우 조사행위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 대법원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하여 제3자의 주거나 사업장 등을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75) 장은혜, “행정조사에 있어서의 권리구제”, 국민중심의 행정조사 관련 법제 개선 방안 연구 제1차 워크숍(2016. 6. 22)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32-33쪽.

주거권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에게 외국인 등을 방문하여 외국인동향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그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 출입국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제3자의 주거 또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한 사업장 등에 들어가 외국인을 상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사전 동의가 결여된 경우 공무집행행위의 적법성이 부인되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⁷⁶⁾

4. 기 타

행정조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별 법령에서는 조사행위에 대하여 거부·방해·기피 행위를 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이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⁷⁷⁾ 조사대상자는 이러한 경우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조사행위를 과태료 부과라는 행위를 통해 간접적으로 강제당하고 있는 것이므로, 부과된 과태료에 불복함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과태료 재판도 행정조사로 인해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는 또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⁷⁸⁾

76)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156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흥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

7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제2항 등

78) 장은혜, “행정조사에 있어서의 권리구제”, 국민중심의 행정조사 관련 법제 개선 방안 연구 제1차 워크숍(2016. 6. 22)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43쪽.

제 3 장 주요 국가의 행정조사 관련 법제 분석

제 1 절 미 국

1.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미국은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이하 ‘APA’라 한다)⁷⁹⁾에 행정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은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⁸⁰⁾ 동법 제555조(c)에서 “소환장·보고서의 요구·검사 기타의 조사행위는 요구는 어떠한 방법이거나 목적임을 불문하고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발부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행정조사의 법률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동조(d)는 소환장 발부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러한 근거규정 외에 동법에서는 행정조사의 실제적 한계 및 절차적 한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⁸¹⁾

행정절차법을 일반법으로 본다면 개별 영역에서의 행정조사는 각 정부조직(부처, 위원회)과 업무를 규율하는 법률에 구체화되어 있다. 예컨대 국토부의 해안경비에 관한 규정인 해양경비법(Cost Guard Act) 제93조(a)(5)(14 U.S.C. 93)는 지휘관(Commandant)은 해안경비 직무수행에 필요한 어떤 조사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⁸²⁾ 또한 사법행정(Judicial Administrative Regulation)에서 교도소에서의 차별금지를

79)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5 U.S.C. Subchapter II - Administrative Procedure)

80) 이익현, 미국 행정법의 기초개념(4) - 행정정보의 수집과 공개(acquisit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 -, 법제(2010. 10), 법제처, 48쪽.

81) 김영조, 행정조사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법학연구 제8권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7, 92쪽.

82) 14 U.S.C §93 (Commandant; general powers)

규정한 28 C.F.R. 부분에서는 제115.171조에서 교도소에서 성적 희롱 등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행정 또는 형사조사권을 발동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⁸³⁾ 또한, 연방해양위원회는 해상법(Shipping Act) 제1712(b)(4)조에 의하여 소환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관세미납자에 대하여 재무장관이 승인할 수 없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⁸⁴⁾ 또한,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증권거래법(Security Exchange Act) 제17(a)조, 17(a)-25조에 의하여 중개인-거래인(broker-dealer) 그룹에 대하여 거래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⁸⁵⁾ 그 밖에도 다수의 법률이 있는데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거래비밀법(Trade Secrets Act, 18 U.S.C. §1905); 건강비밀에 관한 소환(42 U.S.C. §290dd-2, 42 C.F.R. Part 2);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18 U.S.C. §2701); 납세환급내역 관련(26 U.S.C. §6103),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5 U.S.C. §552a) 등.⁸⁶⁾

2. 행정조사의 유형

미국에서의 행정조사의 유형은 크게 출입검사(inspection), 소환장발부(subpoenas), 보고서요구(reporting requirement)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⁸⁷⁾

출입검사란 보건, 안전, 위생, 근로조건 등을 조사하기 위해 개인의 주택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일정한 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영장주의를 요하는 압수와 수색에 해당할 것인지가 문제된다.⁸⁸⁾

83) 28 C.F.R. §115.171.

84) 46 U.S.C. § 1712(b)(4).

85) 15 U.S.C. § 17(a).

86) 관련 법률명은 다음 자료 참조.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Legal Policy, Report to Congress on the Use of Administrative Subpoena Authorities by Executive Branch Agencies and Entities, available at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URLs_Cited/OT2014/13-1175/13-1175.pdf

87) 김영조, 미국 행정법상 행정조사의 법리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제21집, 2004, 162-164쪽.

88) 이익현, 앞의 글, 50쪽.

법원에서는 초기에 주거에 대한 조사에서는 영장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예도 있으나, 영업 및 영업장에 대한 조사에 영장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례가 다소 완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⁸⁹⁾ 행정절차법 제555조(b)에 따르면 정부관계자로부터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는 사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법 제555조(c)에서는 출입검사, 보고서요구는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방 수정헌법 제4조에 의한 수색 및 압수(search and seizure)에 의하여 영장주의가 적용되며,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의 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인 한계를 갖는다. 헌법적 한계는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과 관련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1967년 연방대법원이 *Camara v. Municipal Court of City and County of San Francisco* 판결⁹⁰⁾ 주거지에 관하여 특별한 개인의 사적 공간이므로 영장(warrant)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소환장(subpoena) 발부**는 행정기관이 법원의 사전허가 없이 증인의 출석, 회계장부 등 각종 문서와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하는 것이다. 형사소추 절차에서 소환장은 법원에 의해 발급되나 행정기관도 특정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555조(d)에서는 “법률의 근거를 가지는 행정상의 소환장은 당사자에 대하여 구하고자 하는 범위에서 또한 절차의 규정에 따라 요구하는 증거의 일반적 중요성과 합리적인 범위를 제시함으로써 발하여야 한다. 법원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는 한도에서 소환장 또는 그에 유사한 명령을 유지하고, 집행을 하기 위한 절차에 있어서 법원은 증인의 소환을 요구하거나 벌칙을 부과하고 합리적 기간 내에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행정청이 발급한 소환장은 법원이 발급한 소환장과 달리 당사자가 정

89) 이익현, 앞의 글, 50쪽.

90) *Camara v. Municipal Court of City and County of San Francisco*, 387 U.S. 523 (1967).

보제공의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행정청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행정청은 법원에 제소하여 이행명령을 받을 수 있다.⁹¹⁾

예컨대, 법무부에서 행정조사에 관하여 규율한 18 U.S.C. 제3486조에 따르면 행정소환장은 연방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으로 행정청은 법원의 허락없이 소환장을 발부하여 문서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⁹²⁾ 연방대법원은 행정청의 소환장 발급권한을 비교적 넓게 해석하여 범죄 발생의 상당한 가능성(probable cause)에 미치지 않더라도 인정하고 있다. 행정소환장에는 소환목적, 소환대상 등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증권거래위원회는 증권거래위원회법 제19(c)조 및 제21(b)조, 자문법(Advisers Act) 제209(b)조,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제42(b)조에 의하여 소환장을 발급할 수 있으며 어떠한 자료라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사람은 행정조사 당사자인 감독관 등에게 공식문서인 행정소환장 복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⁹³⁾

보고서 요구권은 행정기관이 개인, 단체 및 회사의 조직, 사업, 행동, 관행 경영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연차보고서, 특정질문에 대한 답변서와 같은 양식으로 요구하는 것으로서, 직접 행정조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활용되는 방법이다.⁹⁴⁾ 보고서 요구는 출입검사와 함께 행정절차법 제555조(c)에 기록된 행정조사의 한 유형으로 일정한 법적 근거 하에서만 이루어진다. 소환장발부와 마찬가지로 보고서 요구권에 대해서도 직무집행 영장 소송에 의한 강제를 인정하고 있고,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91) Peter L. Strauss, 이익현 역, 미국행정법 개론, 한국법제연구원, 2010, 48-50쪽.

92) Report to Congress on the Use of Administrative Subpoena Authorities by Executive Branch Agencies and Entities,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Legal Policy, available at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URLs_Cited/OT2014/13-1175/13-1175.pdf.

93) Enforcement Manual,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Division of Enforcement, 2016, 41면.

94) 이익현, 앞의 글, 51쪽.

3. 행정조사의 한계

미국 행정조사에 있어서의 가장 큰 특징은 행정조사에 사인이 따르지 않을 경우에 행정기관이 자력으로 이를 집행할 수는 없고, 그 적법 여부를 사전에 법원에서 심사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그 집행을 명하는 ‘사법적 집행의 원칙’이 확립되어 왔다는 것이다.⁹⁵⁾ 이것은 프라이버시권리 등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행정조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미국의 개인주의적 전통에서 유래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행정조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원칙 하에서 법원이 행정조사를 법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준을 확립시켜왔다. 즉, 강제적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조사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조사대상이 목적과 관련성을 가져야 하고 조사범위가 적절해야 한다.⁹⁶⁾ 수정 헌법 제4조의 영장주의와 수정 헌법 제5조의 자기부죄거부의 특권이 행정조사에도 일정한 경우에 적용되나, 개인의 기본권 보호 못지 않게 적극 국가의 역할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1940년대 이후에는 행정조사의 한계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 입장, 즉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⁹⁷⁾

연방수정헌법 제4조는 수색과 압수(search and seizure)에 대하여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영장 없는 수사로 획득한 증거를 배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영장주의의 요건에 따르면 영장은 수색 또는 압수를 위한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와 대상 장소, 사람, 물건 등에 대한 특정성(particularity)이 있는 경우에는 발부될 수 있다.⁹⁸⁾ 또한 연방대법원은

95) 김영조, 미국 행정법상 행정조사의 법리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제21집, 2004, 181쪽.

96) 김영조, 미국 행정법상 행정조사의 법리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제21집, 2004, 181-182쪽.

97) 김영조, 미국 행정법상 행정조사의 법리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제21집, 2004, 182쪽.

98)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4조. 제5조.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 판단에 있어서 종합판단(totality of circumstance) 원칙을 취하여 영장발급을 위하여 드러난 정황(정보의 정확성, 진실성, 신뢰성)을 판단하고 있다.⁹⁹⁾ 종합판단의 기준은 조사 자체의 객관성, 조사목적 부합성, 절차의 공정성, 조사 전체의 합리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¹⁰⁰⁾ 동 헌법은 형사소송법상 압류 및 수색을 주로 전제하고 있으나 행정조사에 대해서는 영장주의를 완화하되 이와 유사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1) 행정조사에서의 영장주의 적용원칙

연방대법원에 따르면 행정조사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영장주의가 요구된다. 1967년 연방대법원은 *Camara v. Municipal Court* 판결¹⁰¹⁾에서 주거지 등에 대한 행정조사에 대한 영장주의를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동 판례 이전에는 각 주법에서 행정조사에 있어서의 영장주의를 중요하게 해석하지 않았으므로 영장 없는 행정조사가 비교적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예컨대 1950년 *District of Columbia v. Little* 판결¹⁰²⁾에서 주정부의 위생검사관이 행정조사를 위하여 영장 없이 주거지를 방문한 것은 수정헌법 제4조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1959년 *Frank v. Maryland* 판결¹⁰³⁾에서 연방대법원은 건강검사관(health inspector)의 행정조사에 관하여 주거지에 대한 수색이라 할지라도 형사상 수색 및 압수절차가 아니므로 수정헌법 제4조에서 규정한 영장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99) 예컨대 *Illinois v. Gates*, 462 U.S. 213(1983), *Florida v. Harris*, 568 U.S. (2013).

100) 박정훈 외, 미국 등 주요 선진국가의 행정조사와 영장주의, 법무부 연구보고서, 2011, 92-93쪽.

101) *Camara v. Municipal Court of City and County of San Francisco*, 387 U.S. 523 (1967).

102) *District of Columbia v. Little*, 339 U.S. 1 (1950).

103) *Frank v. Maryland*, 359 U.S. 360 (1959).

하지만 *Camara* 판결¹⁰⁴⁾에서 연방대법원은 주정부 주택검사관(house inspector)의 수색에 있어서도 영장주의를 선언하였다. 하지만 동 판결에서 법원은 영장발부에 있어서 일반적인 형사소송법과 달리 범죄 발생의 개연성(probable cause)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화이트 대법관의 판단에 따르면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정헌법 제4조의 근본목적이 “행정권의 자의적 침입으로부터의 배제”에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상 조사가 아닌 통상적인 행정조사라고 수정헌법에서 보장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 제한될 수는 없다. 또한, 보건조사와 같은 건강과 안전을 위한 행정조사는 공익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이지만 수정헌법 제4조의 합리적인(reasonable)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행정조사가 주법 등에서 통상적인 절차에 의한다면 영장주의는 행정조사 상대방인 당사자가 수정헌법 제4조에 규정한 프라이버시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2015년 연방대법원은 *City of Los Angeles v. Patel* 판결¹⁰⁵⁾에서 로스앤젤레스시법(Los Angeles Municipal Code)¹⁰⁶⁾에서 호텔운영자는 90일 이상 숙박하는 고객에 대하여 기록(이름, 투숙날짜, 객실번호, 자동차 정보 등)을 보관하고 경찰국에서 조사(inspection)을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동 규정이 당사자가 법원에 소환장(subpoena)의 적절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수정헌법 제4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프라이버시권에 문언 그 자체로 (facially) 충돌한다고 판단하였다.

104) *Camara v. Municipal Court of City and County of San Francisco*, 387 U.S. 523 (1967).

105) *City of Los Angeles v. Patel*, 576 U.S. ____ (2015).

106) *Los Angeles Municipal Code(LAMC)* §41.49.

(2) 행정조사에서 영장주의의 완화

하지만 사법부는 특정 산업에 대한 행정조사에 관하여 공공성, 위험성 등을 이유로 영장주의의 예외를 적용하였다. 예컨대 “총기업, 주류업, 광업” 등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위험성과 긴급성이 높은 산업이므로 영장없는 행정조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영장주의의 예외가 적용되는 산업은 법률의 규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closely or pervasively regulated”) 산업이라고 판단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1970년 주류업(Colonnade Catering Corp. v. U.S.)¹⁰⁷⁾, 총기업(U.S. v. Biswell)¹⁰⁸⁾ 등에 대하여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였다.

한편, 1987년 연방대법원은 New York v. Burger 판결¹⁰⁹⁾에서 영장주의 예외사업을 “주류, 광업, 총기 등”의 산업에서 벗어나 폐차업까지 확대하면서 행정조사에 대한 적법절차의 범위를 완화하여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¹¹⁰⁾ 뉴욕주 경찰이 뉴욕교통법 제415조¹¹¹⁾에 따른 폐차장에 대한 무영장조사권에 따라 행정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폐차업이 앞선 연방대법원 판례에서 규정한 “총기업, 주류업, 광업” 등과 같이 광범위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동 법원은 영장 없는 행정조사에 대하여 당해 행정조사가 주정부에 상당한 이익(substantial government interest)을 부여하며, 기존 규제에 필요하며, 영장이 없더라도 이를 대안하는 충분한 별도의 절차가 있는¹¹²⁾ 경우에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107) Colonnade Catering Crop. v. United States, 397 U.S. 72 (1970).

108) U.S. v. Biswell, 406 U.S. 311 (1972).

109) New York v. Burger, 482 U.S. 691 (1987).

110) Rosann Greenspan, The Transformation of Criminal Due Process in Administrative State, 2014, at. 99-100.

111) N.Y.Veh. & Traf.Law § 415-a5.

112) New York v. Burger, 482 U.S. 691 (1987).

(3) 행정조사에서 영장제도의 예외

영장없는 행정조사도 긴급한 상황 또는 위법발생의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¹¹³⁾ 예컨대 1978년 연방대법원은 Michigan v. Tyler 사건에서 생명과 재산 등 중요한 기본권과 관련되어 조사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장없는 행정조사가 인정되었다. 따라서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관의 주거지 침입 및 방화에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의 일반적인 발견(plain view)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정조사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긴급성 원칙은 합리적인 시간, 장소 등의 제한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그 밖에 안전법규 위반조사를 위한 행정권 발동 등 일반적으로 생명, 신체, 재산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평가된다.¹¹⁴⁾ 예컨대 공공의 안전보호를 위한 전염병 검사, 음주측정, 마약복용 검수 등 개인적 법익보다 더 중요한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가 인정된다. 예컨대 1989년 Skinner v. Railway Labor Executive Association 판결¹¹⁵⁾에서 연방대법원은 철도업 종사자들에 대하여 의무적인 혈액검사를 규정한 연방법에 따라 연방철도청(Federal Railroad Administration)이 실시한 영장 없는 행정조사에 대하여 공익성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1989년 National Treasury Employees Union v. Von Raab 판결¹¹⁶⁾에서 연방대법원은 마약검사, 무기소지 등은 긴급성이 인정되므로 관세청(Customs Service)이 독자적인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13) 박정훈 외, 미국 등 주요 선진국가의 행정조사와 영장주의, 법무부 연구보고서, 2011, 93-95쪽.

114) 박정훈 외, 앞의 보고서, 93쪽.

115) Skinner v. Railway Labor Executive Association, 478 U.S. 602 (1989).

116) National Treasury Employees Union v. Von Raab, 489 U.S. 656 (1989).

구체적인 범위는 판례를 통하여 조금씩 변동되어 왔지만 9·11 테러가 발생한 이후에는 행정조사권한이 더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예컨대 2011년 연방대법원은 *Kentucky v. King* 판결¹¹⁷⁾에서 경찰이 스스로 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긴급한 상황(exigent circumstances)으로 인한 영장 없는 조사는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1980년 연방대법원의 *Payton v. New York* 판결¹¹⁸⁾에서 영장 없이 주거지를 수색한 것을 위헌으로 판단한 사건의 의견을 변경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디지털 정보에 대해서는 영장 없는 수색을 금지하였다. 2014년 연방대법원은 *Riley v. California* 사건에서 체포 중 영장 없는 수색 또는 압수로 획득한 휴대전화의 전자정보(digital contents)는 위헌적 증거라고 판단하였다.¹¹⁹⁾ 로버츠 대법관은 동 판결에서 “디지털 정보는 행정집행관을 위협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휴대전화 주변 또는 겉면에 대한 일반적인 발견(plain view)은 가능하지만 디지털 정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휴대전화의 디지털 정보는 오늘날 “사적 정보(the privacies of life)”의 총체를 포함하므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 영역에 포함된다고 설명하였다.

(4) 영장 없는 행정조사에 대한 증거배제의 원칙

일반적인 증거배제의 원칙(Exclusionary rule)은 적법절차원칙에 반하여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1914년 *Weeks v. United States* 판결¹²⁰⁾에 의해 정의되었다. 이것은 독사과의 원칙

117) *Kentucky v. King*, 563 U.S. 452 (2011).

118) *Payton v. New York*, 445 U.S. 573 (1980).

119) *Riley v. California*, 573 U.S. ____ (2014).

120) *Weeks v. United States*, 232 U.S. 383 (1914).

(“Fruit of poisonous tree doctrine”)으로 명명되기도 한다. 하지만 동 원칙은 예외적으로 영장 없는 행정조사가 없었더라도 동해 증거가 발견되었을 것임(inevitable discovery)이 명확한 경우에는 증거배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주법 등으로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더라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증거배제의 원칙에 관하여 연방대법원이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Camara* 판결에서 법원은 보건관련 조사 등 공익성을 고려할 때 “당사자가 주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장 없는 행정조사의 결과가 반드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¹²¹⁾ 또한 1986년 연방대법원은 *Dow Chem. Co. v. United States* 판결¹²²⁾에서 행정조사를 위한 영장은 “현재 위법상태의 발견 뿐 만 아니라 합리적인 입법 또는 행정기준정립을 위해서”도 발급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판결에 따르면 행정조사의 결과가 증거배제의 원칙에 의하여 배제될 가능성을 행정조사에 비하여 높지 않게 인정된다.¹²³⁾

(5) 행정조사의 목적 또는 방식상의 한계

행정절차는 행정부에 의하여 위임되지만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각 정부부처(위원회)의 권한범위와 실현내용에 근거한다. 따라서 조사목적상의 한계는 행정조직상의 권한범위에 의하여 규정되며 제한된다.¹²⁴⁾ 법원은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권에 근거하여 행정조사의 위법

121) *Camara v. Municipal Court of City and County of San Francisco*, 387 U.S. 523 (1967).

122) *Dow Chem. Co. v. United States*, 476 U.S. 227, 252 (1986).

123) Shiv Narayan Persaud, Parallel investigations between administrative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A question of civil liberties, *University of Dayton Law Review*, 39(1), 2013, at 88-89.

124) Shiv Narayan Persaud, Parallel investigations between administrative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A question of civil liberties, *University of Dayton Law Review*, 39(1), 2013, at 81-82.

성을 평가하지만 행정조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한을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행정조사의 방법에 대하여는 특별한 전제조건을 두지 않으므로 행정청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당해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는 형사조사를 위하여 최소한 범죄성립에 관한 합리적 의심(reasonable suspicion)이 요구되는 점과 차이를 보인다.¹²⁵⁾ 또한 행정조사는 공공목적달성을 의도하므로 한 당사자의 죄의 유무를 밝히는 형사조사와는 차이점을 갖는다. 공공목적에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를 위하여 보다 넓은 재량을 가짐을 의미한다. 연방대법원에 따르면 행정조사와 형사조사는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진 권한집행행위이므로 각각 신의성실(good faith)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면 두 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만으로 이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¹²⁶⁾

제 2 절 독 일

1. 행정조사의 개념과 유형

독일 행정법학에서 독자적인 행정작용 형식으로서 ‘행정조사’를 별도의 범주로 구분하여 취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행정조사(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에 해당하는 독일법상의 규정은 매우 다양하게 규율되고 있고 그에 해당하는 용어도 다양하다.

125) Shiv Narayan Persaud, Parallel investigations between administrative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A question of civil liberties, University of Dayton Law Review, 39(1), 2013, at 80.

126) Shiv Narayan Persaud, Parallel investigations between administrative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A question of civil liberties, University of Dayton Law Review, 39(1), 2013, at 84-85.

일반 행정법령에서 행정기관의 권한으로 정보제공요구(Auskunftsverlangen), 행정조사(Verwaltungsermittlung), 압수(Beschlagnahme)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행정조사에 관한 권한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대표적인 강제성을 가진 행정조사에 해당하는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독일 조세기본법(Abgabenordnung)에서 현장조사(Außenprüfung)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위생 관련 법령에 있는 행정검사 또는 검역(Inspektion) 규정도 행정조사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들 규정은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침익적 행정으로서 성격상 행정의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의미를 가지며, 다른 한편으로는 권한의 명확한 범위와 그 행사방법과 절차, 불복방법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를 갖는 것이기도 하다. 이하 독일에서 행정조사 권한에 대해 어느 정도로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피조사자에 대한 법치행정의 원칙이 어떤 방식으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행정조사에 관한 입법례

(1) 연방통신법 상의 정보제공의무 및 조사

독일의 통신법(Telekommunikationsgesetz, TKG)은 행정조사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절차에 대해 행정기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이다.

가. 정보제공요구

통신법은 공적 통신망의 운영자와 공중에 대한 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통신법이 정한 권리와 의무의 범위 내에서 규제행정청의 요구에 따라 이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일반적인 보고의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제127조 제1항 제1문). 그리고 규제행정청이 구체적으로 보고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제127조 제1항 제2문), 매출액에 대한 보고요구(127조 제2항 제1호), 통상적인 영업시간 내에 영업상의 서류를 열람하고 검사(127조 제2항 제2호)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때 규제행정청은 문서를 통하여 보고 또는 검사를 요구하여야 하고, 이러한 문서에는 보고 요구의 법적 근거, 대상 및 목적, 보고의 기간을 정해야 한다.¹²⁷⁾ 이것은 우리 행정조사기본법 제10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통신법은 기업주, 당해 기업의 대표, 법인·조합·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 법률 혹은 정관에 따라 대표로 되어있는 자가 보고와 영업상의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보고의무자에게 영업상의 서류에 대한 검토 및 통상적인 영업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영업 공간 및 토지에 대한 출입을 수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127조제4항) 그리고, 규제행정청으로부터 검사를 위탁받은 자가 통상적인 영업시간동안에 기업 및 기업단체의 사무실 및 영업공간에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제127조제5항) 우리나라에서의 출입 검사와 유사한 행정조사를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통신법은 보고 및 검사의 실효성을 위해 수색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수색은 관할하는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만 행해질 수 있으며(제6항 1문) 영장취소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상의 항고에 관한 절차가 준용된다.¹²⁸⁾ 동법은 급박한 위협의 경우 영업시간 동안 법원의 영장 없이 필요한 수색을 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제6항 제2문) 영장이 없이 수색한 경우에 특별히 사후에 적법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조사자는 물품 또는 영업상의 서류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다(제127조제7항 제1문). 규제행정청이 행정조사를 함에

127) 통신법상 정보제공요구에 대해서는 김성태, 통신법상의 행정조사-독일 통신법(TKG)상 행정조사와의 비교고찰-, 행정법연구(2007년 상반기), 한국행정법학회, 179-185쪽을 토대로 하였다.

128) 김성태, 앞의 글, 181-182쪽.

있어 일정한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시간 보관하는 것이 조사활동에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료의 조작, 멸실, 훼손 등의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 행정청이 자료를 보관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¹²⁹⁾

통신법은 보고에 있어 자기부죄거부의 원칙과 일정한 다른 불이익 절차에서의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보고의무를 지는 자는 답변으로 인하여 자신 혹은 친족이 형사재판의 소추 혹은 질서위반법에 의한 절차에 회부될 위험이 있는 질의에 대한 보고를 거부할 수 있다.(제8항 제1문) 다만, 조세범죄에 대한 절차 및 그와 관련된 조세부과절차 그리고 정보제공의무자 또는 그를 위하여 활동하는 자가 고의로 허위의 보고를 행한 경우는 제외된다(동항 제3문)

조사결과 규제행정청에 의한 부담의 부과, 하명 혹은 처분 등에 위반한 경우 기업은 규제행정청에게 감정인에 대한 경비를 포함한 조사의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제9항).

나. 행정조사

통신법 제128조에 따르면 규제기관은 필요한 모든 조사를 수행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규정은 규제기관이 행정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에 대해 준사법적 절차에 기해 판단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의미를 가진다. 즉, 증인 및 감정인에 의한 증거제시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강제적인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증거조사는 서면으로 남기도록 하며 서면을 통한 증인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동의 사실을 기재하고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다.

129) 김성태, 앞의 글, 182쪽.

다. 압수 절차

규제기관은 조사를 위한 증거자료로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목적물을 압수할 수 있다(통신법 제129조). 그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의 법관에 의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당사자들은 압수 행위에 대해 언제든지 법관에 의한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법관이 한 결정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라. 이행강제 규정

통신법상 명령사항의 이행을 위해 행정집행법에 따라 500,000유로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127조 제10항). 통신법은 통신법상의 규제행정청의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혹은 소송의 제기가 집행 정지의 효과를 갖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제137조) 이에 따라 통신법상의 행정행위는 일반적으로 행정집행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관철을 위한 행정강제가 허용될 수 있다.¹³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보고의 요구등과 관련하여 행정강제의 수단이 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보고와 서류의 제출은 통상적으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라 는 점에서 통신법은 이행강제금을 강제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업공간에의 출입(제127조 제5항)에 대한 수인의무의 확보에 있어서도 이행강제금은 적절한 강제수단이 된다.

마지막으로 통신법은 제127조의 보고·검사와 관련하여 한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¹³¹⁾ 즉, 제1항에서 정한 통신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한 경제적 사정 및 매출액에 대한 보고명령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자는 질서위반에 해당하고(제149조 제1항 제4호

130) 김성태, 앞의 글, 183-184쪽.

131) 김성태, 앞의 글, 185쪽.

c목), 이에 대해 10,000유로 이내의 질서 위반금이 부과된다.¹³²⁾

(2) 세무조사에 관한 규정

가. 현장조사에 대한 조사명령과 조사개시

독일 조세기본법(Abgabenordnung) 제193조~203조는 현장 세무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세무조사는 기업에 대한 현장조사의 경우 기업조사라는 용어로도 불리어졌다. 법 제193조 이하는 현장조사(Außenprüfung)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현장조사란 납세의무자의 조세사정을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장조사의 기회에 현장조사관은 납세와 관련한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한 사정을 확인하게 된다. 과세관청은 현장조사 권한을 가지고 그에 따른 재량권을 가지는데, 적법과세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조사 자체의 합목적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조사의 범위는 종목과 기간, 사실관계 차원에서 제한될 수 있다(법 제194조).

과세관청은 현장조사의 실시 전에 납세의무자와 현장조사의 인적·물적·시간적 범위에 대해 서면으로 조사명령을 발급하게 된다(제196조). 즉 ‘조사명령’을 통해서 현장조사의 범위를 확정한다. 납세의무자는 조사명령에 의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수인의무를 부담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협력의무를 진다. 또한 조사명령을 통해 현장조사의 시간적, 물적 범위가 확정되어야 하고, 조사명령에서 조사의 범위를 알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제193조 제1항, 제2항 제1호)와 별도의 충분한 근거 제시가 필요한 경우(제193조 제2항 제2호)가 구분된다.

132) 김성태, 앞의 글, 185쪽.

조사명령은 납세의무자의 보호를 위해 적시에 조사 전에 고지되어야 한다(제197조 제1항). 또한 조사명령은 주가 조사주체인지를 명확히 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한다. 또한 조사개시는 납세의무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조사개시 전 적절한 시기의 고지가 요구된다. 만약 중요한 이유를 설득할 수 있다면 조사개시를 연기할 수 있다(제197조 제2항). 이상의 조사명령 및 이하의 조사과정은 각 단계에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

나. 조사과정

조사관은 현장조사 시 지체 없이 신분증명을 해야 하고 조사 개시를 고지해야 한다(제198조). 조사가 개시되면 납세의무자는 협력 의무를 가지며 그에 따라 조사관이 권리를 갖게 된다(제200조). 납세의무자는 과세를 위한 중요한 사실의 확인에 대하여 협력해야 하며, 정보를 제공하고 자료를 제시, 설명할 의무를 가진다(제200조 1항). 필요한 적절한 공간 및 작업장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고(제2항), 조사는 영업시간 또는 작업시간 동안 이루어진다(제3항).

다. 종결협의 및 조사보고서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종결협의를 이루어져야 한다(제201조 제1항). 종결협의를 납세의무자에게 법적인 청문을 보장하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설명을 통해 의견일치의 조사종결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장조사를 기초로 이루어진 조사결정은 종결협의를 없다는 이유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고, 종결협의를 없더라도 조사확인된 사항은 조세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다고 한다.

최종적으로 현장조사의 결과는 서면에 의한 보고서로 작성되어야 한다(제202조). 이는 충분한 법적인 청문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다. 납세의무자가 조사결과에 대해 다시 입장을 표명할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조사보고서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보고서 자체에 이의제기를 할 필요는없고, 납세의무자는 조세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

(3) 검사 및 검역에 관한 규정

그 밖에 건강과 관련한 위생검역 및 질서유지와 관련하여 독일 연방 및 각 주 법은 경찰법, 영업법, 건강 관련 법령에서 행정조사의 취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종종 감독(Überwachung) 규정의 장에서 규율된다. 가령 독일 의약품법(Arzneimittelgesetz) 제11장 감독 규정이나 식품법 제7장 감독 규정에서는 감독조치의 시행과 관련하여 시료채취 권한(Probenahme, 의약품법 65조, 식품법 제43조), 수인 및 보고의무(Duldungs- und Mitwirkungspflicht, 의약품법 66조, 식품법 제44조)에 관한 규정이 예이다. 이들 규정은 한편으로는 행정조사에 대한 행정기관의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지만, 다른 한편으로 행정조사에 대한 법적 제한으로서의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

제 3 절 일 본

1. 행정조사의 개념

일본의 행정법학계에서는 행정조사의 정의나 체계에 대해서 다양한 학설이 존재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행정조사를 “행정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조사(정보수집) 활동”으로 “정보의 수집·가공·이용·관리·개시라고 하는 정보관리행정의 제1단계”로 정의하는 학설이 유력하다¹³³⁾. 일본의 행정절차법 제정 당시에 “행정조사”에 대한 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행정조사가 매우

133) 芝池義一、行政法總論講義, 2006, pp.267-268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어렵다는 결론을 맺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물론 일본에서도 종래에는 행정조사를 즉시강제의 수단으로 인식해 왔으나 특히 세무조사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행정조사를 즉시강제에서 분리하여 비권력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수집이라는 관점이 강조되어 왔다. 즉, 행정기관의 정보수집활동은 출입검사나 보고의 징수 등 적극적·능동적인 성격의 것과 신고나 신청 등 소극적·수동적인 성격의 것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행정조사는 적극적·능동적 정보수집활동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다¹³⁴⁾.

2. 행정조사의 종류

행정조사는 대상에 따라서는 다수를 상대방으로 하는 일반적 조사와 자료제출명령이나 출입검사와 같이 상대방이 특정되는 개별적 조사로 구분된다. 예를 들면,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조사, 주택·토지 통계조사와 같은 유형은 일반적 조사이며, 조사대상자의 임의적 협력을 얻어서 실시된다.

이에 대해서 개별적 조사는 보고징수, 자료제출명령과 같이 행위의무를 부여하는 경우, 출입검사나 질문, 검사와 같은 조사에 대한 수인의무 내지 대응의무를 부과하는 유형의 것이 있다. 이 경우에는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제재조치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행정조사를 분류하는 기준은 다양하지만 특히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얻어서 이루어지는 임의조사, 상대방의 저항을 배제하더라도 행할 수 있는 실력 강제조사, 벌칙에 의하여 담보되는 간접강제조사로

134) 藤原静雄、行政調査論の現状と課題—行政情報管理の視点を踏まえて—、筑波ロー・ジャーナル (2009), p.177

분류와 상대방에게 작위의 의무를 부과하는 의무부과형의 조사, 행정기관의 실행행위를 수반하는 사실행위로서의 조사라고 하는 분류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¹³⁵⁾.

(1) 임의조사와 강제조사

행정조사는 사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강제할 수 있는 체계, 예를 들면 제재조치가 수반되는 경우, 즉 강제조사와 행정조사에 응할 것인가를 사인의 임의에 맡겨둔 경우, 즉 임의조사로 구분된다.

임의조사의 경우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절차적 규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조사대상이 되는 국민의 입장에서 임의조사에 대해서 절차적 규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견해가 존재한다¹³⁶⁾.

첫째, 행정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간접강제조사인지 임의조사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행정조사에 응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임의조사임을 조사대상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¹³⁷⁾. 왜냐하면, 임의조사에 있어서 상대방의 임의성, 즉 조사에 응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권이 상대방에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목적이나 조사의 범위 등을 명확히 고지하고 조사에 협력할 것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다¹³⁸⁾.

둘째, 조사대상자가 수집하여 보유하는 정보를 해당 정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동의 없이 행정조사를 통하여 수집한다면 해당 행정조사의 법적 성격이 반드시 임의조사라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소득세를 확정하기 위하여 은행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조사의 상대방인 은행과의 관계에서는 임의조사이지만 조사대

135) 深澤龍一郎, 行政調査の分類と手続, JURIST 増刊 「行政法の争点」, p.56

136) 曾和俊文, 行政調査手続の整備, JURIST No.1304, 有斐閣 (2006.1.1.-15), p.73

137) 曾和俊文, 앞의 논문, p.73

138) 曾和俊文, 앞의 논문, p.73

상이 되는 정보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납세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로 행정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실질적인 조사대상인 납세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행정조사로 이런 경우를 반드시 임의조사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을 어렵다는 요건이 필요하며, 특별한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되어야 한다¹³⁹⁾.

(2) 조사수단에 따른 구분

행정조사는 조사수단에 따라서 질문, 출입검사, 보고의 징수, 문서제출명령 등으로 구분된다.¹⁴⁰⁾ 이러한 조사수단들은 간접강제에 수반하는 사실행위의 성격을 가지지만, 보고의 징수나 자료제출의 요구는 상대방에게 작의의무를 부과하는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부과형조사 또는 행정행위 형식의 조사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¹⁴¹⁾.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조사명령이 처분성이 없다고 하여 취소소송을 각하한 하급심 판결¹⁴²⁾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작의의무를 부과하는 유형의 보고징수나 자료제출명령이 반드시 처분성이 있다고 일반화시키는 것은 논의를 복잡하게 할 것이다.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자료제출요구는 제출해야 할 자료의 범위 등이 사전에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통지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나, 출입검사는 대부분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불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사전통지절차를 적용하기 어렵다. 결국 행정조사의 목적에 따라서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른바 비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한다¹⁴³⁾.

139) 曾和俊文、앞의 논문, p.73

140) 芝池義一、行政法總論講義〔第4版〕、有斐閣(2001)、p.269

141) 芝池義一、앞의 책、p.269

142) 静岡地裁, 1951.12.4.行集32卷12号、p.2205

143) 曾和俊文、앞의 논문, p.74

(3) 행정영역에 따른 구분

일부 학자들은 행정조사를 정보의 수집·가공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행정지도나 행정처분 등 개별 행정활동의 전제가 되는 정보의 수집활동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가 대부분의 행정조사가 취하고 있는 입법형식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후속하는 행정활동의 법적 성격에 따라서 행정조사의 필요성이 결정된다고 한다¹⁴⁴⁾. 예를 들어, 법위반에 대한 침해적 처분의 전제가 되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을 감추는 상대방과 일정한 긴장관계 속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프라이버시 등을 어느 정도로 고려해야 하는가 등이 문제가 된다. 과세처분의 자료를 수집하는 질문검사권, 도로교통법 위반사실의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일제검문, 독점금지법위반사실의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조사 등이 그러한 예이다. 이 경우에는 처분 상대방의 권익보호라는 관점에서 행정조사의 절차적 통제를 고려할 수 있다.

반면 처분의 상대방 보다는 제3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안전규제나 환경규제의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적절한 발동으로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가지는 자의 관점에서 행정조사에 대한 법적 통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¹⁴⁵⁾.

생활보호법과 같은 급부행정의 영역에서도 본인의 신청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조사가 이루어지며, 이 경우 요보호자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경우에도 절차적 통제가 요구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고 한다.¹⁴⁶⁾

144) 曾和俊文、앞의 논문, p.75

145) 曾和俊文、앞의 논문, p.75

146) 曾和俊文、앞의 논문, p.75

3. 행정조사의 절차

일본에는 우리나라의 「행정조사기본법」과 같이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절차와 방법 등을 규율하는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행정절차법에서는 “보고 또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처분, 그밖에 그 직무의 수행상 필요한 정보의 수집을 직접 목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처분 및 행정지도”를 적용제외하고 있다(일본 행정절차법 제3조제1항제14호). 행정절차법에서 행정조사를 적용제외하고 있는 이유는 행정조사가 다양한 법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를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¹⁴⁷⁾. 행정절차법 제정시에 행정조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가 이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선언된 것이 그 반증일 것이다¹⁴⁸⁾.

따라서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의 범위 내에서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가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행정기관이 강제적인 수단에 의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조사 상대방의 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보호 등의 관점에서 법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행정조사의 절차적·실체적 통제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행정조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에 관해서는 일의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개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영장주의, 사전통지, 공무원의 신분증 휴대·제시 등이 논의의 내용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분증 휴대·제시

출입검사를 규율하는 법률에서는 조사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이를 제시할 것이 규정되는 경우가

147) 曾和俊文、앞의 논문, p.72

148) 宇賀克也、行政手続法の解説〔改訂版〕、学陽書房(1995)、p.65

많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법 제27조¹⁴⁹⁾가 그러하다. 반면 관계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항상 신분증을 제시할 의무규정을 두기도 하는데 조사 대상자의 관점에서는 신분증 제시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당연히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¹⁵⁰⁾.

(2) 사전통지의 필요성

개별법령에 따라서는 행정조사에 앞서서 사전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일본 최고재판소는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과 관련하여 “질문검사의 필요가 있고 이것과 상대방의 사적 이익 간의 형량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상당한 한도에 그치는 한 권한 있는 세무직원의 합리적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하여 질문검사권이 재량행위임을 밝히면서 “검사실시의 일시장소의 사전통지, 조사의 이유 및 필요성의 개별적·구체적 고지도 질문검사를 하기 위한 법률상의 일률적인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¹⁵¹⁾. 즉 사전통지가 없는 행정조사의 적법성을 승인하고 있다.

사전통지가 필요한가는 조사의 목적이나 기능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대기오염방지법에 따른 출입검사는 사전통지를 함으로써 사업자가 범위반사실을 은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통지와는 친숙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즉, 사전통지절차가 친숙한 행정조사와 사전통지절차에 친숙하지 않은 행정조사의 유형을 행정조사의 목적에 적합하게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49) 일본 도시계획법 제27조에서는 (증명서등의 휴대)라는 제명 아래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제1항)”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증명서 또는 허가증은 관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것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50) 曾和俊文、앞의 논문, p.76

151) 最決 1953. 7. 10 刑集27卷7号、p.1205.

4.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자료제출명령이나 보고의 징수 등 행정기관의 정보 수집에 대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의무부과형 강제조사의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준하는 것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판례에 따라서는 처분성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사실행위적 행정조사는 계속적 성질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일본 행정소송법상의 중지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¹⁵²⁾.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행정조사를 규정하는 다양한 입법형식에 비추어볼 때 반드시 처분성이 가진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된다.

하자의 승계문제로 행정조사의 위법성을 다룰 수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위법한 행정조사로 인하여 후행하는 일정한 처분에 영향을 미쳤다면 행정소송에서 행정조사의 위법성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 견해로 보여진다. 그러나 판례에서는 행정조사의 위법성이 후행하는 행정행위에 승계될 여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듯 하다¹⁵³⁾.

그리고, 위법한 행정조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특히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조사의무위반의 결과로서 공무원의 과실이나 가해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한 판례가 다수 존재한다.

152) 芝池義一, 앞의 책, p.273.

153) 東京地判, 1973·8·8行集24卷8=9, p.763.

제 4 장 개별 법령상 행정조사 실태와 문제점

제 1 절 부처별 행정조사 운영 현황

개별 법령상 행정조사 실태와 운영상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행정조사의 목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행정조사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규제개혁 차원에서 행정조사 정비를 담당해온 국무조정실의 관련 자료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2004년 국무조정실의 자료에 따르면, 행정조사는 15개 부처 소관 137개 법률에 근거하여 총 160개 종류의 행정조사가 운영되고 있으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각 부처의 훈령·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조사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¹⁵⁴⁾ 행정조사는 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유사·동일한 사안에 대해 여러 부처가 중복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서 피조사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행정조사의 요건이 불명확하여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적법 절차 등 통제장치가 미흡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행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중복조사로 인한 기업활동의 애로 요소를 해소할 필요에서 기업 대상 행정조사 정비가 추진되었다.¹⁵⁵⁾

「행정조사기본법」 심사보고에서 제시된 2006년 9월 당시 법률에 규정된 부처별 행정조사의 현황을 살펴보면, 161개 법률에 241건의 행정조사가 존재하며, 조사유형별로는 관리감독을 위한 조사 90건, 위반

154) 국무조정실, 기업 행정조사 개선방안,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 자료(2004. 12. 3), 2쪽.

155) 국무조정실, 기업 행정조사 개선방안,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 자료(2004. 12. 3), 1쪽.

확인을 위한 조사 71건,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 46건,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33건, 심사를 위한 조사 1건으로 나타났다.¹⁵⁶⁾

2013년 한국행정연구원(KIPA)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행정조사 운영계획에 따르면 노동부, 환경부 등 25개 부처에서 총 407건의 행정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⁵⁷⁾ 이 중에서 법령 등에 근거를 두지 않고 시행되는 행정조사는 16건(4%)으로서 대부분의 행정조사는 법령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⁵⁸⁾

2016년에 실시될 행정조사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무조정실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총 697건의 행정조사가 실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¹⁵⁹⁾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용노동부 57건, 관세청 23건, 교육부 6건, 국가보훈처 3건, 국민안전처 9건, 국토교통부 171건, 기상청 2건, 기획재정부 5건, 농림축산식품부 49건, 농촌진흥청 1건, 문화체육관광부 14건, 미래창조과학부 33건, 방송통신위원회 25건, 보건복지부, 21건, 산림청 6건, 산업통상자원부 12건, 식품의약품안전처 45건, 여성가족부, 18건, 원자력안전위원회 5건, 중소기업청 11건, 통계청 36건, 특허청 4건, 해양수산부 36건, 행정자치부 7건, 환경부 98건이었다(<표 2>

156) 김영조, 행정조사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법학연구 제8권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7, 90쪽.

157) 김신·최진식, 행정부담 감축을 위한 행정조사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3, 92-93쪽.

158) 김신·최진식, 앞의 보고서, 97쪽.

159) 국무조정실의 규제조정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행정조사 목록은 총 697건이나, 과거부터 시행되고 있는 목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2016년에 수행되었거나 수행될 예정인 행정조사 건수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행정조사로 분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록에서 누락된 행정조사가 존재하는 것(예컨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출입·검사 및 수거는 목록에서 빠져있음. 또한 경찰청 소관의 법률은 목록에서 누락되어 있음)으로 보이므로 전체 건수에는 변동이 가능하다. 일단 이 보고서에서는 국무조정실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추후 확인을 통해 목록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자 한다.

참조). 그러나, 이 자료에는 각 부처에서 제출된 행정조사 목록만 포함되어 있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조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시행되는 행정조사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행정조사로 분류될 수 있음에도 목록에서 누락된 것도 다수 존재하고, 법령의 제·개정 사항이 적시에 반영되지 않은 것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 목록으로부터 2016년 한해 동안 행정조사의 운영 현황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행정조사에 관해 개별 법령에서는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와 출입 검사 등을 한 개 조문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목록에는 보고와 자료제출 요구 또는 현장조사가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으나, 사실상 해당 조문에 근거하여 하나의 유형의 행정조사만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행정조사 유형으로 분류된 경우도 있고, 다수의 행정조사로 나누어진 경우도 있었다.

<표 2> 2016년 행정기관별 행정조사 운영 현황¹⁶⁰⁾

번호	부처	행정조사 명칭 및 개수
1	고용노동부	개업노무사·노무법인에 대한 보고·자료제출 요구 등 57건
2	관세청	관세사회 정기보고 등 23건
3	교육부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등 자료제출 요구 등 6건
4	국가보훈처	방위산업체 실태조사 등 3건
5	국민안전처	관련 사업체 소방대상물 등의 감독 등 9건

160) 2016. 4. 국무조정실에 요청하여 받은 2016년 행정조사 목록을 토대로 분류 작업한 것으로서,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누락된 사항을 반영한 부처별 행정조사 목록은 후술하는 <부록>에 제시할 것이다.

제 4 장 개별 법령상 행정조사 실태와 문제점

번호	부처	행정조사 명칭 및 개수
6	국토교통부	간선시설 및 공공편의시설 설치사업 시행자 지정 등 171건
7	기상청	기상산업 지도검사 등 2건
8	기획재정부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검사 등 5건
9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병성감정실적 보고자료 제출 등 49건
10	농촌진흥청	농작물 생육조사 1건
11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련사업자 실태조사 등 14건
12	미래창조과학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하기 위한 자료 제출 등 33건
13	방송통신위원회	경쟁상황평가자료 제출 등 25건
14	보건복지부	감염병 실태조사 등 21건
15	산림청	목재제품 규격·품질 및 품질인증 조사 등 6건
16	산업통상자원부	공산품안전관리 실태조사 등 12건
17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점검 등 45건
18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실태조사 등 18건
19	원자력안전위원회	발전용 및 연구용 원자로 등에 대한 검사 등 5건
20	중소기업청	1인창조기업 실태조사 등 11건
21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등 36건
22	특허청	무상실시권 실적 제출 등 4건
23	해양수산부	검사대행기관 지정기준 적합여부 확인 자료제출 등 36건

번호	부처	행정조사 명칭 및 개수
24	행자부	기부금품의 모집 또는 접수행위의 위법성 검사 등 7건
25	환경부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지도 점검 등 98건
합계	25개 행정기관	총 697건

제 2 절 행정조사의 입법 유형

1. 개 관

전술한 바와 같이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행정조사를 정의하면서 행정조사의 유형을 현장조사, 자료열람, 시료채취 또는 보고 요구, 자료제출 요구, 출석 요구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법령에서는 보다 다양한 형태의 행정조사가 규정되어 있다. 사업주 등 국민에게 일정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 또는 명령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기타 장소에 출입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관계 서류나 장부를 열람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 등 샘플을 수거 또는 채취할 수 있다는 규정도 존재한다. 그밖에 현장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명문화한 규정도 있고,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 등 수집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다양한 행정조사를 몇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해볼 수 있다.

우선, **조사의 방식**에 따라 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출입 검사·질문·열람, 시료채취, 출석·진술 요구, 현장조사, 실태조사로 나누어볼 수 있다. 행정조사에 해당하는 보고나 자료제출에 관해 행정기관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령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방식과 사업주 등 조사대상자에게 보고나 자료제출에 관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사업주에게 법령상 일정한 사항의 보고 의무를 규정하는 것도 수인의무를 발생시키므로 행정부담이 되는 행정조사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무소 등 일정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 질문, 열람하는 경우를 현장조사로 볼 수 있는데, 입법례에 따라서는 출입 검사 규정 외에 현장조사 또는 현지 조사를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 **조사의 목적**에 따라 정책 결정을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 행정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해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일정한 조치의 이행을 사후관리 하거나, 지도·감독 차원에서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셋째, 실체규정으로서 행정조사가 규정된 경우와 보칙 규정에서 행정조사가 규정된 것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주로 보칙 규정에서 행정 조사를 규정하는 경우는 지도·감독의 차원에서 이 법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하에서는 조사의 형식에 따라 행정조사의 유형을 1차적으로 분류하여 입법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고, 제3절에서 부처별 주요 법령에서 행정조사 규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2. 보 고

‘보고’에 관해서는 행정기관이 기업주 등 국민에게 일정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요구하는 경우와 국민에게 일정한 사항의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로 나뉜다.

(1) 보고 명령 또는 요구

보고 명령이나 요구를 규정한 입법례는 다음과 같으며, 일반적으로 자료 제출과 함께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 보고 명령이나 요구의 목적은 법의 위반 여부 확인, 지도·감독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공인노무사법 [시행 2016.4.28.] [법률 제13898호, 2016.1.27., 일부개정]
<p>제18조(감독상의 명령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u>개업노무사 또는 노무법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u>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하략)</p> <p>제25조(지도·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하략)</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5.1.1.] [법률 제11862호, 2013.6.4., 타법개정]
<p>제51조(감독상의 조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근로자 또는 제52조의4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명할 수 있다.</p>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16.7.1.] [법률 제13921호, 2016.1.27., 일부개정]
<p>제15조의5(공단에 대한 감독 등)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에 대하여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16.7.1.] [법률 제13921호, 2016.1.27., 일부개정]	
제21조(보고 및 검사)	<p>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그 인력·장비·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p>② 시·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다음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 생산량, 수입량, 유지관리용 부품 확보 현황 등2. 유지관리업자: 기술인력, 보수 대수,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한 승강기 현황 등3. 승강기 관리주체: 자체점검, 안전관리자, 사고의 현황 등

(2) 보고의무

사업주 등에게 일정한 사항의 보고의무를 규정한 입법례는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 산업재해발생에 대한 보고와 동법 제42조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 동법 제43조의 건강진단결과 보고는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안전기준 위반 또는 중대한 사고 발생 어린이제품에 대한 보고의무는 사고 등에 대한 후속대책 수립을 위한 정보 수집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5.1.1.] [법률 제11862호, 2013.6.4., 타법개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제43조(건강진단) ④ 건강진단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 2016.1.27.] [법률 제13851호, 2016.1.27., 일부개정]

제12조(사업자 보고의무) ①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시킨 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어린이제품의 명칭·상표·모델명·사고내용, 제조·수입수량 및 판매수량 등을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어린이제품안전과 관련된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어린이제품이 중상 또는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3. 어린이제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②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시킨 어린이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 2016.1.27.] [법률 제13851호, 2016.1.27., 일부개정]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자발적으로 수거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자료제출

자료제출은 보고와 함께 규정되어 있기도 하고, 별도로 자료제출 요구가 규정된 입법례도 존재한다. 자료제출을 요청 또는 요구하는 목적은 행정기관이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수립 기타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거나, 조치의 이행상황을 감독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료제출을 요구 또는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수범자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도 하다.

(1) 자료제출 요청 또는 요구

기업 등 국민에게 일정한 자료제출을 요청 또는 요구하는 입법례는 다음과 같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6.7.28.] [법률 제13897호, 2016.1.27., 일부개정]
제 4 조의3(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p>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6.7.28.] [법률 제13897호, 2016.1.27., 일부개정]</p>
<p>제 4 조의8(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연령 차별행위를 한 사업주에게 제4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8.12.] [법률 제13474호, 2015.8.11., 타법개정]</p>
<p>제18조의4(자료제출 요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 2016.1.27.] [법률 제13851호, 2016.1.27., 일부개정]</p>
<p>제14조(어린이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u>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기 위하여</u> 사업자에게 사고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6.7.1.] [법률 제13697호, 2015.12.29., 일부개정]</p>
<p>제14조의3(조사·질문 등)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p>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6.7.1.] [법률 제13697호, 2015.12.29., 일부개정]
<p>제74조의8(자료제출 요구권 등)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미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완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 2.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 3. 병무청장 4.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장 6.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자료제출의무

사업주 등에게 일정한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례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다. 동법 제13조와 제20조는 각각 사업주에게 매년 고령자 고용현황과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제출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와 제13조에 따르면, 제출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동일한 서식(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현황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6.7.28.] [법률 제13897호, 2016.1.27., 일부개정]
<p>제13조(사업주의 고령자 고용현황의 제출 등)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령자 고용현황을 고용노동</p>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6.7.28.] [법률 제13897호, 2016.1.27., 일부개정]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정년제도 운영현황의 제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년 제도의 운영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출입 검사 등

「행정조사기본법」에는 조사원이 가택·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관해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개별 법령에서는 ‘현장조사’라는 용어보다는 일정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물건을 검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출입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경우에 필요하면 필요한 물품을 수거하거나 시료를 채취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영치할 수도 있다. 즉, 물품에 대한 수거와 시료채취, 자료의 영치 등은 출입 검사 및 질문에 수반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전술한 보고나 서류 제출에 비해서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검사 등 조사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조사대상자인 국민에게 주거권이나 재산권,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더욱 크므로 이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에 조사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보고나 자료제출로 조사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소·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도록 규정한 입법례도 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제3항이 그것이다. 출입 검사 등의 규정에

는 사전 통지 의무와 조사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이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할 의무가 함께 규정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6.7.1.] [법률 제13697호, 2015.12.29., 일부개정]
<p>제14조의3(조사·질문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u>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주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u></p> <p>③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④ 국가보훈처장은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각하하거나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p>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16.7.1.] [법률 제13921호, 2016.1.27., 일부개정]
<p>제21조(보고 및 검사) ③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u>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로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소·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u></p> <p>④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검사를 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16.7.1.] [법률 제13921호, 2016.1.27., 일부개정]</p>
<p>⑤ 제3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해당 공무원의 성명, 출입 시간 및 출입 목적 등이 적혀 있는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p>

<p>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15.11.19.] [법률 제13323호, 2015.5.18., 타법개정]</p>
<p>제117조(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① 공단은 <u>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u></p> <p>② 제1항의 경우에 공단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제118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등) ① 공단은 <u>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u></p> <p>②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제117조제2항을 준용한다.</p>

5. 현장조사

개별 법령 중에 출입 검사 외에 ‘현장조사’의 근거를 직접 명시한 입법례도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 신고받은 사항이나 자료제출의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장기요양신청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재해구호법」 제10조에서도 각각 현장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현장조사는 법률에 따라서는 ‘현지조사’로 명명되어 있기도 한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전술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에 따른 조사에 대해서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서는 ‘현지조사’로 표현하고 있다.

현장조사를 규정한 경우에도 사전통지의무 및 관계공무원의 증표제시의무가 함께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16.7.8.] [법률 제13750호, 2016.1.7., 일부개정]
<p>제22조(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6.9.23.] [법률 제14084호, 2016.3.22., 일부개정]
<p>제94조(신고 등) ① 공단은 사용자,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것을 포함</p>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6.9.23.] [법률 제14084호, 2016.3.22., 일부개정]

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
2. 가입자의 보수·소득
3. 그 밖에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나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직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97조(보고와 검사)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7조제6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대행청구단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대행청구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검사·조사 또는 확인을 하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16.6.30.] [법률 제13647호, 2015.12.29., 일부개정]

제14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① 공단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심신상태
2.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3.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16.6.30.] [법률 제13647호, 2015.12.29., 일부개정]
<p>하는 사항</p> <p>② 제1항에 따라 <u>조사를 하는 자는 조사일시, 장소 및 조사를 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p> <p>③ 공단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조사를 의뢰받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는 조사를 완료한 때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사를 의뢰받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는 지체 없이 공단에 조사결과서를 송부하여야 한다.</p>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5.11.21.]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p>제16조(현장조사) ①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신고를 접수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그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현장에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p> <p>②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행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발달장애인 또는 유기등 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은 그 발달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p> <p>④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재해구호법

[시행 2016.7.8.] [법률 제13753호, 2016.1.7., 일부개정]

제10조(현장조사) ① 구호기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소유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2016.2.4.] [법률 제13201호, 2015.2.3., 제정]

제 6 조(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제조업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6. 실태조사

행정조사기본법에는 행정조사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다수의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실태조사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해 시행된다는 점에서 행정조사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아래 입법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보통이며, 실태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일정 범위의 기업이나 국민에게 자료제출이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하나의 법률에 여러개의 실태조사가 규정되어 있거나, 부처간 실태조사의 내용이 중복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합동으로 진행하거나, 중복조사는 생략하는 등 조사상대방의 행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2016.7.28.] [법률 제13877호, 2016.1.27., 일부개정]

- 제 7 조(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석면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그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2016.8.4.] [법률 제14024호, 2016.2.3., 일부개정]

- 제26조의2(실태조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6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5.] [법률 제13433호, 2015.7.24., 타법개정]
<p>제 6 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한다)는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관할 지역의 보행자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행자길에 설치된 안전시설 및 관리 현황 2. 보행자길에서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積置物) 등의 현황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 보안등, 그 밖에 보행자를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4.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특별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제 3 절 개별 법령상 행정조사 관련 규정 분석

1. 분석 기준

(1) 국무조정실의 행정조사 정비기준

2012년 규제개혁백서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조사 정비의 기준은 5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불요불급한 행정조사를 폐지하고, 행정조사의 기준을 완화하며, 공동조사 실시 및 대상 발굴을

통해 중복조사를 방지하고, 자율관리체제로 전환하고, 행정조사 근거를 규정한 개별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다.¹⁶¹⁾

<표 3> 행정조사의 정비 기준¹⁶²⁾

기 준	내 용
불요불급한 행정조사 폐지	○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최소한의 행정조사만 존치시키고, 실효성이 상실된 행정조사 폐지
행정조사 기준 완화	○ 행정조사 대상 업종별 성수기 등을 피해 조사 실시, 행정조사의 횟수나 주기 조정 ○ 행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사 대상자의 범위 축소 ○ 기술발전 등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를 고려, 현장 조사 및 서면에 의한 조사 등을 온라인 등에 의한 조사로 방법 개선
공동조사 실시 및 대상 발굴	○ 기업 및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공동조사 대상 행정조사 자체 발굴 ○ 동일·유사사항에 대한 행정기관간 공동조사 실시
자율관리체제 전환	○ 행정조사사항을 조사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조사·신고할 경우 행정조사 실시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행정조사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행정조사 근거법령 정비	○ <u>행정조사의 근거는 원칙적으로 법령에 규정하도록 정비하고, 법률의 명확한 위임없는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행정조사 금지</u> ○ <u>개별 법령의 행정조사 근거규정은 행정조사기본법의 원칙과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정</u>

161) 국무조정실, 2012 규제개혁백서, 2013, 706-707쪽.

162) 국무조정실, 2012 규제개혁백서, 2013, 706-707쪽 - 김신 · 최진식, 행정부담 감축을 위한 행정조사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3, 88쪽 <표3-3>에서 재인용

이에 따르면, 행정조사 제도 자체의 개선 사항 외에 행정조사 근거 법령 정비 기준으로서 행정조사의 근거를 원칙적으로 법령에 규정하도록 정비하고, 개별 법령상 행정조사에 관한 규정을 행정조사기본법의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2)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분석 기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조사기본법」은 개별 법령에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 행정조사의 기본원칙과 방법과 절차 등의 공통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따라서,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은 개별 법령에 다르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행정조사기본법」의 원칙과 방법,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조사는 원칙적으로 법령을 근거를 두고 시행되어야 하고, 조사는 법령에 규정된 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조사자는 조사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되며,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름으로써 형평성 위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사대상자에 대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부처간, 한 기관내 다른 부서간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내용적으로 중복된 조사는 금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조사는 원칙적으로 범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어야지 사후에 처벌을 위해 활용되어서는 안되고, 조사를 행하는 공무원 등은 조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의 누설이 금지되고, 이를 조사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도 안된다. 조사는 정기적 조사가 원칙이므로, 수시조사는 몇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밖에도 행정조사는 그 형식을 불문하고 조사를 받는 기업이나 국민에게 일정한 부담이나 기본권 제한 등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적법절

차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즉, 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출입 검사 등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의 목적, 내용, 시기 및 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 요구서로 알려야 하고, 영업소나 타인의 주거 등에 출입할 때에는 별도로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행정조사의 결과가 확정된 후에 조사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에 따라 개별 법령상 행정조사 관련 규정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설정하였다.

첫째, **행정조사의 근거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조사는 법령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지침이나 훈령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그런데, 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출입 검사, 현장조사 등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조사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근거해야 하므로, 법률에서 명확하게 위임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는 것도 지양해야 할 것이다.

둘째, **조사의 목적과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자는 조사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되고, 조사대상자인 기업 등 국민의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조사의 목적과 내용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조사의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등으로 규정하는 것은 되도록 지양해야 한다.

셋째, **조사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조사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선정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야 할 것이므로 선정의 기준을 명시하거나, 선정위원회 등을 두어서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기업이나 사인만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넷째, 행정조사는 정기조사가 원칙이고, 수시 조사는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 등 몇가지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므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수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일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규칙에서 수시 조사를 규정했다면, 이것은 전술한 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시 조사를 실시하려면 원칙적으로 법률에 규정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개별 법령상 **행정조사의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해서 사전통지, 증표 등 제시, 조사결과 통보 등 행정조사기본법의 내용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전통지’에 관한 문제이다. 행정조사기본법상 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출석이나 진술 요구, 현장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의 목적, 범위, 내용, 시기, 방법 등이 기재된 조사요구서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개별 법령에는 행정조사의 사전통지에 관한 규정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미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된 경우도 적지 않다. 입법례에 따라서는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사전 통지를 기다려서는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예외 규정이 사전통지의무를 규정한 취지를 형해화시키지 않도록 좁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출입 검사나 현장조사시 조사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은 조사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이 개별 법령에 반영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관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이의신청 등 **조사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분석 내용

(1) 조사의 법적 근거 유무

가. 입법례

① 법률에 규정한 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5.1.1.] [법률 제11862호, 2013.6.4., 타법개정]
<p>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38조의5(석면농도기준의 준수) ①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석면농도기준”이라 한다)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식품위생법 [시행 2016.8.4.] [법률 제14022호, 2016.2.3., 일부개정]
<p>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

<p>식품위생법 [시행 2016.8.4.] [법률 제14022호, 2016.2.3., 일부개정]</p>
<p>가.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나. 가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등의 무상 수거 다.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p>

<p>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8.12.] [법률 제13474호, 2015.8.11., 타법개정]</p>
<p>제17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제18조(역학조사) ①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p>

② 하위법령에 규정한 예

<p>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6.9.23.] [보건복지부령 제441호, 2016.9.23., 일부개정]</p>
<p>제20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 ①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으면 그 심사청구 내용이 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및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의 명세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이 경우 <u>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12조, 제19조 및 법 제96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 조사를 통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u></p>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6.9.23.] [보건복지부령 제441호, 2016.9.23.,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시행 2015.8.1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43호, 2015.8.11., 일부개정]
<p>제 6 조(요양급여비용 내역의 현지확인) ① 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요양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요양기관현황 등 요양급여비용 산정내역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항에 대하여 현지출장하여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소속직원이 현지출장하여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요양급여비용 현지확인통보서와 심사평가원의 소속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요양기관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p>

③ 법령이 아닌 훈령/고시 등에 규정한 예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15.12.30.] [관세청고시 제2015-71호, 2015.12.30., 일부개정]
<p>제42조(특히 변경사항의 보고 등) ① <u>보세공장 운영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보고 또는 신청(신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193조에 따른 폐업 등의 사항 보고·신고(별지 제23호 서식) 2. 영 제190조에 따른 업무내용 등의 변경 사항에 대한 변경 승인신청(별지 제24호 서식) 3. 영 제191조에 따른 수용능력 증감에 관한 사항 승인신청(별지 제25호 서식) 4. 법 제179조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특히보세구역(보세공장) 승계신고(별지 제2-2호 서식)('05.1. 신설) 5. 기타 설치·운영특히 내용중 변경사항 신고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15.12.30.] [관세청고시 제2015-71호, 2015.12.30., 일부개정]
<p>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화물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05.1. 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74조 제1항 및 영 제188조에 따른 보세공장 설치·운영의 특허 및 기간갱신 2. 법 제178조에 따른 보세공장 설치·운영특허의 취소 3. 법 제17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세공장 설치·운영특허의 상실('05.1. 개정) 4. 영 제194조에 따른 보세공장 설치·운영특허의 승계 ('05.1. 신설) 5. 영 제193조에 따른 보세공장의 폐업 6.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설치·운영특허의 변경사항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16.8.12.] [관세청고시 제2016-47호, 2016.8.12., 일부개정]
<p>제 5 조(운영인의 의무) ① ~ ⑦ (생략)</p> <p>⑧ 운영인은 보세판매장 반출입물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재고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월의 보세판매장의 업무사항(별지 제7호 및 제7-1호에서 제7-5호 서식)을 다음 달 7일까지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⑨ 운영인은 다음 달 7일까지 월별 해당 보세판매장에 근무하는 소속직원과 판매물품의 관측·물류·사무 등을 위하여 근무하는 직원(이하 “관측사원 등”이라 한다)의 현황 및 변경사항(별지 제7-6호 서식)에 대하여 관할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측사원 등은 운영인의 사용인으로 본다.</p> <p>제32조(세관장의 업무감독) ① ~ ② (생략)</p> <p>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율점검표 등의 심사결과 보세판매장 물품관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율점검표를 받기 1회 재고조사에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보세판매장에 대하여는 제4항에</p>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16.8.12.] [관세청고시 제2016-47호, 2016.8.12., 일부개정]
<p>따라 재고조사를 하여야 한다.</p> <p>④ 세관장은 매 반기별로 1회 이상 보세판매장의 판매량, 외국반출현황, 재고량 및 제37조의 행정제재 규정에 해당하는 각 항목의 운영 실태 및 특허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이행실적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이하 “재고조사”라 한다)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고조사의 횟수 및 그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특허 후 결산기준일이 6개월 미만인 때에는 결산기준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재고조사를 실시한다.</p> <p>⑤ 세관장이 제4항의 재고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세관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특정 품목 및 업무사항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조사반을 지명하고 7근무일 이내의 조사기간을 지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p> <p>⑥ 세관장은 재고조사 시 필요한 경우 법 제266조에 따라 보세판매장운영과 관련한 계약서, 판매대장 등 기타 관계서류를 조사하거나 그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⑦ 제4항에 따른 재고조사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이 때에도 조사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징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2. 행정조사를 긴급히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검토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문언상으로는 훈령/고시도 행정조사의 근거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행정조사는 조사대상자에게 보고나 자료제출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조

사대상자의 주거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질문이나 수거 등을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에 규정해야 할 것이며,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경우에도 법률에 구체적으로 위임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행정조사는 다양한 형태로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그 유형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보고 의무, 출입 검사, 현장조사, 실태조사 등 다양하며, 조사의 근거는 법률에 두면서 조사의 방법이나 절차 등 세부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같이 법률에 위임을 받지 않고 시행규칙에서 현장조사의 근거를 규정한 경우도 있다. 즉, 동 시행규칙 제20조는 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은 경우, 제출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고시(「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로 이에 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제263조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관세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자료제출, 보고, 현장조사 등의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7호, 2016.3.29., 타법개정]
<p>제263조(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이 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운송수단 또는 장치 장소에 관한 서류의 제출·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출입자·판매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관계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이와 같이 법률에서 포괄적인 행정조사의 근거를 규정하고, 관세청 고시를 통해 보고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2조는 보세공장 특허변경 사항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규정은 관세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도 세관장에게 보세판매장 재고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에 관해서 직접적인 위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법률에서 포괄적인 행정조사의 근거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별도의 위임 규정을 두지 않은 채 고시에서 행정조사의 근거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 조사의 목적과 내용의 구체성 여부

가. 입법례

① 조사의 목적과 내용이 거의 규정되지 않은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 2016.8.4.] [법률 제14022호, 2016.2.3., 일부개정]
제70조(지도·감독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원에 대하여 <u>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u>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2016.8.4.] [법률 제14024호, 2016.2.3., 일부개정]
제21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지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u>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u>

<p>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2016.8.4.] [법률 제14024호, 2016.2.3., 일부개정]</p>
<p>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에 대한 감독·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p>

<p>학교급식법 [시행 2013.11.23.] [법률 제11771호, 2013.5.22., 일부개정]</p>
<p>제19조(출입·검사·수거 등)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식품위생 또는 학교급식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출입하여 식품·시설·서류 또는 작업상황 등을 검사 또는 열람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p>

② 조사의 목적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

<p>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8.12.] [법률 제13805호, 2016.1.19., 타법개정]</p>
<p>제 4 조(소방특별조사)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p>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8.12.] [법률 제13805호, 2016.1.19., 타법개정]

(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② 소방특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관계인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3.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5.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검토

다수의 입법례를 살펴본 결과, 지도·감독이란 제목으로 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출입 검사 등 행정조사를 규정한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이나 내용이 구체적이라기보다는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 행정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사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고, 어떠한 내용에 관해서 조사를 수행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식품위생법」 제70조와 같이 규정된 조항들이 다른 법령에서도 다수 존재한다. 「어린이식생활안전

관리 특별법」 제21조의2제1항에서도 “감독상 필요한 때”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학교급식법」 제19조에서도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출입하여 식품·시설·서류 또는 작업상황 등을 검사 또는 열람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의2 제2항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급식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평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사의 목적을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감독상 필요한 경우” 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규정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조사권 발동에 있어서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조사권의 남용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가 있다.¹⁶³⁾ 따라서, 조사대상자의 조사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조사권의 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사 근거 법령에 그 목적이 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¹⁶⁴⁾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제1항에서도 행정조사는 조사목적 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서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조사 목적은 되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가장 잘 반영했다고 여겨지는 것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동법 제4조에 따르면, 국민안전처 장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이나 관계

163) 유승희, 자료제출요구권 등(행정조사)의 행사 범위와 그 한계 : 정보통신망법 제 55조 개정안을 중심으로, 2006년 정기국회 정책자료집(2), 2006. 9., 1쪽.

164) 유승희, 앞의 글, 2쪽.

지역, 관계인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시설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 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동조 제2항에는 특별조사를 실시하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어떤 경우에 소방특별조사가 실시될 것인지에 관해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특별조사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¹⁶⁵⁾ 「철도안전법」 제73조(보고 및 검사)에서도 철도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열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조사의 목적 또는 사유, 조사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열거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65) 시행령 제 7 조(소방특별조사의 항목) 법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세부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소방시설, 법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및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 및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작성한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소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5. 「소방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조·제6조·제14조·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9.14.]

(3) 조사대상자 기준 및 절차 규정 유무

가. 입법례

① 조사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경우

<p>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7.28.] [법률 제13832호, 2016.1.27., 일부개정]</p>
<p>제15조(감독) ① 허가관청은 <u>필요하다고 인정하면</u>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u>사격장의 시설,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u></p>

② 조사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한 경우

<p>출입국관리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06호, 2016.3.29., 일부개정]</p>
<p>제81조(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 동향조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은 <u>외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방문하여 질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인 2. 외국인을 고용한 자 3. 외국인의 소속 단체 또는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소의 대표자 4.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

<p>식품위생법 [시행 2016.8.4.] [법률 제14022호, 2016.2.3., 일부개정]</p>
<p>제19조의4(검사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u></p>

식품위생법 [시행 2016.8.4.] [법률 제14022호, 2016.2.3., 일부개정]
<p>운반 또는 진열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이하 “검사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써 위해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자료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품등 2. 삭제 <2015.2.3.> 3. 그 밖에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식품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5.1.1.] [법률 제11862호, 2013.6.4., 타법개정]
<p>제40조(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외의 화학물질(이하 “신규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이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③ 조사대상 선정에 있어서 별도의 절차나 기준을 규정한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8.12.] [법률 제13805호, 2016.1.19., 타법개정]
<p>제 4 조(소방특별조사) ③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소방본부장은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p>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8.12.] [법률 제13805호, 2016.1.19., 타법개정]

선정할 수 있다.

- ⑦ 소방특별조사의 세부 항목, 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

조사를 받게 되는 조사대상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입법례에서는 조사대상자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사격 및 사격장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서는 허가신청은 “필요한 경우에” “사격장의 시설,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이다. 동 조문에서 검사나 질문의 대상이 되는 자가 사격장의 소유자인지, 운영자인지 명확하지 않다.

반면에, 조사대상자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하는 입법례도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81조제1항, 「식품위생법」 제19조의4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제1항에서와 같이 조사대상자를 한정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조사대상자 선정에 있어서의 자의성을 차단하고 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제2항과 제8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조사의 대상을 선정해야 하므로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두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대상자의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방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조사의 주기 명시 여부

가. 입법례

① 정기조사를 규정한 경우

<p>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 2016.8.4.] [법률 제14024호, 2016.2.3., 일부개정]</p>
<p>제26조의2(실태조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6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p>

<p>국민연금법 [시행 2016.6.30.] [법률 제13642호, 2015.12.29., 일부개정]</p>
<p>제122조의2(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① 공단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의 사망·이혼·생계유지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과 실시 결과를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그러나, 실태조사를 규정하면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은 입법례도 있다.

<p>석면안전관리법 [시행 2016.7.28.] [법률 제13877호, 2016.1.27., 일부개정]</p>
<p>제 7 조(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석면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2016.7.28.] [법률 제13877호, 2016.1.27., 일부개정]
<p>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p> <p>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그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② 수시조사를 법률에 규정한 경우

교통안전법 [시행 2016.7.20.] [법률 제13788호, 2016.1.19., 일부개정]
<p>제33조(교통안전점검) ① <u>교통행정기관은 소관 교통수단·교통시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안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u> 이 경우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라 교통안전진단을 받은 교통시설 등에 대하여는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교통안전점검의 실시 시기를 정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점검의 분야·대상과 분야별·대상별 점검 항목·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③ 수시조사를 하위법령에 규정한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6.3.31.] [총리령 제1268호, 2016.3.31., 타법개정]
<p>제43조(출입·검사·수거 등) ① 법 제25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은 국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등은 그 처분일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그 처분의 이행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p>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16.8.4.] [총리령 제1313호, 2016.8.4., 일부개정]
<p>제19조(출입·검사·수거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은 국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한다.</p>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시행 2016.4.20.] [교육부령 제96호, 2016.4.20., 타법개정]
<p>제 8 조(출입·검사 등) ① 영 제14조제1호의 시설에 대한 출입·검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되, 학교급식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제1항에 따른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 및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의 확인·지도 :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제2호의 확인·지도시 함께 실시할 수 있음 2.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관리기준 이행여부의 확인·지도 : 연 2회 이상

나. 검토

행정조사는 법령 등 또는 행정조사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므로(행정조사기본법 제7조) 법령 등에서 조사의 주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실태조사를 규정하는 경우에 그 주기를 명시하는 입법례가 많으나, 「석면안전관리법」 제7조와 같이 실태조사를 규정하면서도 그 주기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동조에서 실태조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주기와 맞추어 조사의 주기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행정조사로 인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조사의 횟수를 줄이고, 주기를 되도록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시조사는 행정기관의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행정조사기본법은 몇가지 경우에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7조 각호에서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에서 수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경우”,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등의 위반에 관한 혐의를 통보 또는 이첩받은 경우”,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법령등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반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시조사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근거는 「교통안전법」 제33조와 같이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규칙에서 수시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은 “국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행정기관에 의한 자의적인 수사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들은 적어도 법률에 규정해야 할 것이다.

(5) 조사절차의 적법성 여부

가. 입법례

① 사전통지의무 관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6.7.20.] [법률 제13799호, 2016.1.19., 일부개정]
제33조의2(실태점검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를 점검하는 경우에는 <u>점검 시작 7일 전까지 방문 일자, 목적, 공무원의 성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서로써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u>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8.12.] [법률 제13805호, 2016.1.19., 타법개정]
제 4 조의3(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u>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u>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화재, 재난·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소방특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2016.7.28.] [법률 제13877호, 2016.1.27., 일부개정]

제40조(보고 및 검사)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3일 전까지 검사 일시·목적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입국관리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06호, 2016.3.29., 일부개정]

제81조(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 동향조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은 외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방문하여 질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외국인
2. 외국인을 고용한 자
3. 외국인의 소속 단체 또는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소의 대표자
4.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허위초청 등에 의한 외국인의 불법입국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인의 초청이나 국제결혼 등을 알선·중개하는 자 또는 그 업소를 방문하여 질문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거동이나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게 정지를 요청하고 질문할 수 있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6.9.23.] [법률 제14084호, 2016.3.22., 일부개정]

- 제97조(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용자,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가입자의 이동·보수·소득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제49조에 따라 요양을 실시한 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양·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해당 보험급여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7조제6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대행청구단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대행청구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검사·조사 또는 확인을 하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16.6.30.] [법률 제13647호, 2015.12.29., 일부개정]

- 제14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① 공단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심신상태
 2.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3.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p>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16.6.30.] [법률 제13647호, 2015.12.29., 일부개정]</p>
<p>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조사일시, 장소 및 조사를 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u>미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p>

② 증표제시의무

<p>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8.12.] [법률 제13474호, 2015.8.11., 타법개정]</p>
<p>제7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및 검사)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p>

<p>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16.6.30.] [법률 제13647호, 2015.12.29., 일부개정]</p>
<p>제61조(보고 및 검사)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소속 공무원은 <u>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u></p>

나. 검토

보고나 자료제출 요구를 규정한 법령에는 보고나 자료제출 요구서에 의해 사전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반면에, 출입 검사나 현장조사의 경우에는 사전통지에 관해 규정한 입법례가 대부분이며, 이때에는 증표제시 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통지를 규정한 경우에도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조사개시

7일 전까지라고 규정한 입법례도 있는 반면에, 단순히 ‘미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는 입법례가 다수이다. 조사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7일 전 사전통지의무를 부과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괄적으로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개정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요양기관이나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¹⁶⁶⁾에 있어서, 법령상에는 조사의 사유나 기간 등에 대한 사전통지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대신, 보건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에서 현지조사 진행시 미리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나, 이 지침은 그 효력이 내부관계자에게만 미치는 한계가 있다.¹⁶⁷⁾ 또한, 이 지침에 현지조사 진행시 조사사유나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요양기관 대표자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조사의 분위기가 매우 강압적이고 처벌 중심이고, 조사대상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¹⁶⁸⁾ 현행 지침에서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요양기관 조사관련 통보제도 등을 보완하여 현지조사의 내용,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며, 조사기간 연장에 관해서도 확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조사 진행 도중 조사기간을 확대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¹⁶⁹⁾ 최근에는 안산시에서 현지조사를 받은 의료인이 목숨을

166)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행한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청구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에 대해 요양기관이 행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현지인 요양기관에 출장하여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 김계현·김한나, 요양기관 현지조사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고려법학 제65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70쪽.

167) 김계현·김한나, 의료기관현지조사에 대한 법적 검토와 개선방안, 의료정책연구소, 2011, 79쪽.

168) “의료계, 복지부 현지조사 개선에 ‘회의적’ ” 의학신문 2016. 8. 16 기사 참조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607898) (2016. 10. 31 최종 방문)

169) 김계현·김한나, 앞의 보고서(주 167), 92-94쪽.

끊는 사건까지 발생하여, 지침의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¹⁷⁰⁾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결정에서 “현지조사의 특성상 미리 통지할 경우 한의원로서는 관련 자료를 소급해 작성하거나 관계인들의 진술을 맞추는 방법으로 현지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실사 개시와 동시에 조사명령서를 제시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¹⁷¹⁾

개별 법령에서 출입 검사나 현장조사를 규정한 경우에는 대부분 관계 공무원에게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입법례에 따라서는 증표 외에도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6) 기타 조사대상자의 권익 보호

가. 입법례

① 조사를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

<p>출입국관리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06호, 2016.3.29., 일부개정]</p>
<p>제78조(관계 기관의 협조) ④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유하고 관리한다.</p>

②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 없음

170) “복지부 '강압 논란' 의료기관 현지조사 방식 개정”, SBS뉴스 2016. 8. 21 기사 참조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743352&plink=COPYPASTE&cooper=SBSNEWSSEND) (2016. 10. 31 최종 방문)

171) “현지조사 거부한 한의원 1년 업무정지 정당”, 인터넷의협신문 2016. 9. 23 기사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730>) (2016. 10. 31 최종 방문)

나. 검토

행정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정보나 자료는 행정기관에 의해 보관·처리·관리되며 구체적인 정책 결정이나, 정책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 등으로 이용된다.¹⁷²⁾ 그런데,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정보들은 수집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고, 정보의 부당한 유통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의 정보를 국가가 독점하게 될 경우 정보의 왜곡이나 부당한 오남용이 이루어질 위험성이 높다.¹⁷³⁾ 따라서, 행정조사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며, 사생활의 자유와 그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보유에 일정한 제한을 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¹⁷⁴⁾ 이러한 취지에서 당초 「행정조사기본법(안)」에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존재했었다.¹⁷⁵⁾ 그러나, 법안검토과정에서 삭제되어 현재 행정조사기본법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 대신에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제6항에 행정조사로 취득한 정보를 조사목적 외 이용 금지 및 타인에게 제공 금지가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규정만으로는 개인정보의 수집·처리·보유에 있어서 정보의 분실이나 왜곡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 제78조제4항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는 규정을 두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172) 김재광 외, 앞의 보고서, 54-55쪽.

173) 김재광 외, 앞의 보고서, 55쪽.

174) 김재광 외, 앞의 보고서, 55-56쪽.

175) 행정조사기본법(안) 제36조(개인정보의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의 실시와 그 결과의 처리 등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김재광 외, 앞의 보고서, 127쪽.

그밖에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조사 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현재 행정조사기 본법 제21조에서는 사전통지된 내용에 대한 의견 제출 절차만 보장되어 있으므로, 조사가 완료된 후 통지받은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의견 제출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제 5 장 행정조사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제 1 절 「행정조사기본법」의 개선방안

1. 「행정조사기본법」의 문제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행정조사기본법」은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과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동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조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비교적 국민의 권익 보호에 충실하고, 절차의 적법성이 확보되며 행정조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사기본법은 제정 초기부터 적용제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조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는 점, 그리고 조사를 통해 얻어지는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관리에 관한 규정이 결여되었다는 점, 조사대상자의 이의신청 제도 등 권리구제 제도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¹⁷⁶⁾

그밖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해볼 수 있다.

첫째, 행정조사기본법은 다양한 행정조사의 유형을 포괄하지 못하고 유형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즉, 기본법에는 행정조사의 유형으로 보고·자료제출 요구, 출석·진술 요구,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를 들고 있으나, 개별 법령에서는 이외에도 실태조사, 출입 검사, 점검 등이 규정되어 있다. 조사의 유형별로 조사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정들이 일부 존재한다.

둘째, 행정조사기본법에는 조사 원칙을 규정하면서도 그 예외가 폭넓게 규정되어 있다. 예컨대, 조사의 주기에 관하여 수시조사가 인정

176) 김영조, 행정조사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법학연구 제8권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7, 107-116쪽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되는 예외가 제7호 각호에 규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정기조사보다 수시조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수시조사의 사유로서 들고 있는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경우”는 자칫 수시조사를 제한 없이 허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¹⁷⁷⁾

셋째, 제17조의 조사의 사전통지에 관해서도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사전통지의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그에 대한 제재규정과 조사자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조사 시기를 연기한 경우에 영업 등 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 규정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의하면 조사원은 사전통지한 사항과 관련된 추가적인 행정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추가조사의 필요성과 조사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이나 구두로 통보한 후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어서 사전통지 및 당사자의 의견진술기회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넷째, 제4조제3항과 제14조, 제15조에서는 공동조사를 활성화하고 중복조사를 제한해야 함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부처간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 중복적인 보고의무가 부과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행정부담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공동조사 사항의 발굴이 그리 활발하지 않다. 기본법에서는 공동조사 실시에 대해 조사대상자에게 신청권을 인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효과적인 대책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77) 김영조, 행정조사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법학연구 제8권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7, 116쪽.

2. 「행정조사기본법」의 개선방안

(1) 행정조사 유형별 조사대상자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 보완

「행정조사기본법」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행정조사의 유형별로 조사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행정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면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행의 규정 체계에서는 조사대상자가 제18조에 따른 조사의 연기 신청, 제21조에 따른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제22조에 따른 조사원 교체신청을 할 수 있을 뿐 조사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행정조사로 인한 국민의 편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조사방법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행정조사로 인한 국민 권익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 출석·진술 요구시 출석일시의 변경 신청 거부 제한

제9조에서는 출석·진술요구를 요구하는 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자는 출석일시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변경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의 목적 달성 범위 안에서 그 변경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출석일시의 변경 신청이 허용될 것인가는 행정기관의 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바, 출석일시의 변경신청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여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신청을 거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수 있다.

현 행	개정안
제 9 조(출석·진술 요구) ① (생 략) ② 조사대상자는 지정된 출석일시	제 9 조(출석·진술 요구) ① (생 략) ② 조사대상자는 지정된 출석일시

현 행	개정안
<p>에 출석하는 경우 업무 또는 생활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출석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u>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출석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u> (단서 신설)</p>	<p>에 출석하는 경우 업무 또는 생활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출석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u>출석일시를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일시의 변경으로 말미암아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2) 보고요구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신설

다음으로 제10조에서는 보고요구와 자료제출 요구 방법에 대해서 각각 보고요구서의 발송과 자료제출요구서의 발송을 규정하고 있을 뿐, 조사대상자는 제17조에 따른 의견제출 이외에 해당 보고요구나 자료제출요구의 부당성이나 위법성을 다툴 방법이 없다.

따라서 보고요구서나 자료제출요구서를 받은 조사대상자가 보고요구나 자료제출요구의 부당성 또는 위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보고하여야 하는 내용이나 제출서류에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에 속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제10조에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그러하다.

현 행	개정안
<p>제10조(보고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 ① ~ ② (생략) <신설></p>	<p>제10조(보고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p>

현행	개정안
	<p><u>요구서 또는 자료제출요구서를 받은 조사대상자는 해당 보고요구 또는 자료제출요구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위반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서 보호되는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u></p>
<신설>	<p><u>④ 국무조정실장은 제3항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보고요구 또는 자료제출요구를 중지할 것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u></p>

3) 시료채취에 대한 시료 소유자 등의 확인 또는 입증방법 규정

제12조의 시료채취의 경우에는 채취의 시기나 방법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료채취 방법과 채취일시에 대해서 조사대상자의 확인을 받거나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시료채취를 하는 목적이 물리적이거나 화학적인 기준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조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협력할 것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령상 기준 위반이 명확하여 시료를 채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력이 없다 하더라도 이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비디오촬영이나 제3자인 전문가의 동

행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사의 목적 달성을 배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 행	개정안
제12조(시료채취) ① (생 략)	제12조(시료채취) ① (생 략)
② “③으로 조항 이동”	② 조사원은 시료채취를 한 때에는 그 시료의 소유자 및 관리자로부터 시료채취의 일시, 방법, 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시료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확인을 거부하거나 전자기기를 통해서 시료채취 과정을 녹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2) 수시조사의 예외 규정의 정비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 각호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는 예외가 규정되어 있다. 법률에 수시조사가 직접 규정된 경우(제1호) 외에도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해 혐의가 있는 경우(제2호),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 등의 위반에 관한 혐의를 통보 또는 이첩받은 경우(제3호),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제4호), 그 밖에 행정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5호)가 그것이다. 이에 따른 시행령 제3조는 “조사대상자의 법령위반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하여 긴급하게 실시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주기 또는 시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를 수시조사를 실시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의 사유들 중 제2호, 제3호, 제4호는 결국 법령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시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세분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동조 제5호에 따라 규정된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도 법령등의 위반을 사전에 예방 또는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사실상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재량권이 상당히 늘어난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 행	개정안
<p>제 7 조(조사의 주기) 행정조사는 법령등 또는 행정조사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률에서 수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법령등의 위반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경우 3.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등의 위반에 관한 혐의를 통보 또는 이첩받은 경우 4.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5. 그 밖에 행정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p>제 7 조(조사의 주기) 행정조사는 법령등 또는 행정조사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률에서 수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혐의가 있거나, 위반에 대한 신고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그 밖에 행정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사전통지사항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규정화

행정조사기본법에는 위법한 행정조사에 관한 제재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본법의 특성상 벌칙이나 제재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개별 법령에도 행정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조사대상자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존재할 뿐, 행정기관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행정조사의 절차나 한계를 준수하지 않고 이루어진 행정조사에 근거해 이루어진 행정처분의 효력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¹⁷⁸⁾

한편, 행정기관이 법령에 규정된 조사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조사대상자에게 영업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규정도 둘 필요가 있다. 현재 행정조사기본법에는 시료채취로 인한 손실보상의 근거만 규정되어 있는데, 사전통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제17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된 출석요구서 등에 기재된 사항에 위반함으로써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현 행	개정안
제17조(조사의 사전통지) ①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제17조(조사의 사전통지) ①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178) 조사의 위법이 바로 행정행위를 위법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소극설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 반면, 행정조사와 행정행위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행정조사의 위법이 행정행위도 위법하게 만든다는 적극설과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위법한 행정조사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절충설 등으로 나뉜다. 자세한 내용은 김영조, 앞의 글, 110-111쪽 참조.

현행	개정안
<p>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 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 3. 제5조 단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 <p>② 행정기관의 장이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는 경우 출석요구서등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신설></p>	<p>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 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 3. 제5조 단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 <p>② 행정기관의 장이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는 경우 출석요구서등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u>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된 출석요구서 등에 기재된 사항에 위반함으로써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u></p>

현 행	개정안
	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4) 공동조사, 중복조사 제한의 활성화를 위한 절차 보완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에서는 중복조사의 제한에 관해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동 조문을 살펴보면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동일 사안에 대해서 동일 조사대상자를 재조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2항에서는 중복조사 방지를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에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동일 또는 유사 사안에 대한 행정조사 실시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 관련 자료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행정조사가 중복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하나의 행정기관이 동일 사안에 대해서 동일 조사대상자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는 사례보다는 복수의 행정기관이 서로 다른 목적으로 동일한 조사대상자에 대해서 행정조사를 하는 사례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복수의 행정기관의 장이 동일한 조사대상자에 대해서 중복해서 행정조사를 하는 것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일 지라도 근거법령이 각각 다르거나 복합규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행정조사의 중복성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행정조사의 실시가 각 개별법령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개별사안에 대한 행정조사 계획이 관련 부처의 관련 부서에 공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어느 기관이 어떤 내용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하는지의 정보가 최소한 관련 기관의 관계 부서에 공유되도록 함으로써 공동조사를 촉진하도록 하고, 중복조사를 회피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4조에서는 공동조사의 요건과 조사대상자의 공동조사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입장에서 공동조사신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실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오히려 행정기관의 의무규정으로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공동조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복조사의 제한에 관한 제15조를 하나의 행정기관이 동일 사안 동일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는 경우와 복수의 행정기관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하나의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로 나누고 후자에 대해서는 조사실시계획 수립시에 관계 부처(부서)에의 공동조사 요청 또는 의견 조회를 원칙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현 행	개정안
<신 설>	<p>제15조의2(조사계획 등 정보의 공유와 공동조사의 촉진) ① 행정 조사를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개별조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유사 또는 동일한 사안과 동일한 조사대상자에 대해서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권한을 보유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동조사를 요청하거나 개별조사계획에 대한 의견을 물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공동조사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하고자 하는 사안이 유사 또는 동일하고 조사대상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공동조사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제 2 절 개별 법령상 행정조사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1. 개별법령에서 행정조사 규정의 문제점

(1) 행정조사기본법과의 관계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동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동법에 규정된 조사의 기본원칙과 조사 절차, 조사대상자의 권리구제 등은 개별 법령에 규정되지 않아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서, 개별 법령에 이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도 있다. 개별 법령상 행정조사 관련 규정을 조사한 결과, 행정조사의 원칙,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지 않고 실시 근거만 규정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이 행정조사기본법에 규정된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행정조사의 근거는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특히 개인이나 기업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출입 검사 등 현장조사의 경우에는 그 근거와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조사로 인한 기업 등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도모하며, 행정조사로 인한 권리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조사기본법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고, 행정조사기본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특례 등을 개별 법령에 규정하는 방식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개별 법령에서 행정조사기본법의 원칙과 절차, 통제 등의 규정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2) 조사목적 및 조사대상의 포괄성, 불명확성

현행 개별법령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할 때 조사대상 사무를 특정하지 않거나 조사목적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등과 같이 포괄적이고 불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조사대상 사무의 불특정이나 조사목적의 포괄성·추상성은 피조사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행정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되도록 조사목적과 조사대상, 조사의 내용 등에 대해 법령에서 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해줄 필요가 있다.

(3) 조사 내용의 중복성

2015년 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행정부담 애로 실태 조사’에서 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정부에 대한 의무보고(신고)와 관련한 행정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곳으로 나타났다.¹⁷⁹⁾ 이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연간 의무보고 건수는 평균 27.6건이며 건당 투입시간은 평균 4.01시간이었고, 중소기업들이 가장 크게 겪는 애로사항(복수응답)은 ‘보고(이행, 신고) 부처의 중복’(41.1%)으로 나타났다. △과다한 제출서류(28.4%) △불필요한 절차 및 단계(22.5%) 등으로 확인되었다.¹⁸⁰⁾ 전술한 바와 같이 행정조사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자료제출이나 보고요구의 경우에 동일·유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적인 조사나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그 절차가 불필요하거나 번거로운 점 등이 행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179) 중기 3곳 중 1곳 “각종 신고로 행정부담 가중”, 이데일리 2015. 12. 16 기사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C61&newsid=02886406609599176&DCD=A00306&OutLnkChk=Y>) (2016. 10. 31 최종 방문)

180) 중기 3곳 중 1곳 “각종 신고로 행정부담 가중”, 이데일리 2015. 12. 16 기사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C61&newsid=02886406609599176&DCD=A00306&OutLnkChk=Y>) (2016. 10. 31 최종 방문)

조사내용의 중복성을 개선하고 자료제출이나 보고 절차를 간소화,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위법한 행정조사로 인한 권리구제 미흡

행정조사기본법에서와 마찬가지로 개별 법령에서도 위법한 행정조사로 인한 권리 구제에 관해서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개별 법령에서는 조사대상자가 행정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만 그에 대한 벌칙 규정이 존재할 뿐, 행정조사의 원칙과 절차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조사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

행정조사의 유형 가운데 보고나 자료제출보다 출입 검사 등 현지 조사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출입 검사 등의 요건을 강화하고, 타인의 주거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승낙을 얻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고, 행정조사에 결과에 대한 법적인 보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개별 법령에서의 행정조사 규정 개선방안

(1) 조사 목적 및 대상의 명확화

개별법령의 보칙에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형태로 보고의 징수나 자료제출요구 등을 규정하는 입법례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개선될 필요가 있다.

우선, 조사대상 사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개별 법령에서는 “이 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고를 징수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사대상 사무나 자료의 종류 등을 특정함이 없이 포괄적인 규정을 두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포괄적이고 추상적 목적 아래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조사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행정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하게 열거하는 것이 적절하다.

일부 법령에서는 조사의 대상사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사 대상사무를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p>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 2. 삭제 <2010.1.27.> 3. 제32조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② ~③ “생략”</p>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소방특별조사의 목적과 어떤 경우에 실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한정적,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p>제 4 조(소방특별조사)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u>소방시설 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u>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p>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19.>

② 소방특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관계인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3.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5.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행정조사기본법의 원칙과 절차 준수

행정조사에 관한 개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법령에서 행정조사 실시의 근거는 규정하고 있는 반면, 행정조사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입법례는 드물었다. 이에 관하여 행정조사기본법이 제정되었으므로 당연히 이 법의 기본원칙, 방법 및 절차 등이 적용되므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행정조사기본법」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걸쳐서 행정조사의 유형별로 절차와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법령에서 행정조사의 절차와 방식을 규정할 때에는 달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

조사기본법」을 따라야 할 것이다. 즉, 개별법령에서는 행정조사의 근거와 목적, 조사대상 사무를 규정하고,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는 「행정조사기본법」 제9조부터 제13조에 걸쳐서 규정되어 있는 유형에 따라서 해당 조문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의 규정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수시조사의 법적 근거를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로 변경하고 사전통지나 증표제시 의무와 같은 기본법상의 원칙을 달리 규정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7일 전 사전통지 의무, 출입 검사 또는 현장조사시에는 증표 제시 이외에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서류를 제시함으로써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개별 법령에 기본법의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방식 외에도 개별 법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행정조사기본법을 따른다는 규정을 두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실제로 아래와 같이 보건복지부 소관의 다수의 법률에서 2016년에 이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령명	규정 내용
의료급여법	제32조(보고 및 검사)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질문 또는 조사의 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신설 2016.2.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조사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29.>

제 5 장 행정조사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법령명	규정 내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7 조(수급자격의 조사) ⑥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신설 2016.2.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신청에 따른 조사) ⑧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2.3.>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5(조사·질문) ⑦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의 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⑨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신설 2016.2.3.>
국민연금법	제122조(조사·질문 등)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의 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12.29.>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61조(보고 및 검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질문 또는 검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12.29.>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 9 조(지도·감독 등) ④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2.3.>

법령명	규정 내용
모자보건법	<p>제15조의7(보고·출입·검사 등) ③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범위·시기·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u>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신설 2015.12.22.></p>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p>제15조(보고와 검사 등) ③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업무 상황, 시설 등을 검사하는 경우 그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u>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 <신설 2016.5.29.></p>
약사법	<p>제68조의12(약물역학조사관) ⑤ 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u>이 법 또는 약물역학조사와 관련된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 <신설 2015.12.29.></p> <p>제69조(보고와 검사 등)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u>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 <신설 2015.12.29.></p> <p>제86조의6(부작용 피해의 조사 등) ⑥ 제3항에 따라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 복사하려는 경우 그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u>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 <신설 2015.12.29.></p>

「사회서비스의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유에 따르면, 행정조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해 이 법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개정된 것은 “그 밖에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조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조

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서비스 신청자와 공급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한다.¹⁸¹⁾

(3) 조사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 보완

행정조사기본법에는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영장주의나 진술거부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관해서는 학설상 견해의 대립도 있고, 판례의 태도도 일관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입법례 중에서 행정조사를 위해 타인의 토지나 주거에 출입할 경우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명시한 것이 있다. 또한, 이러한 출입 검사 등을 통해서 손해나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에 관해 배상 또는 보상 규정을 둔 입법례도 존재하므로, 이를 참고하여 조사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81)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6.8.4.] [법률 제13997호, 2016.2.3., 일부개정]) 일부 개정 이유 참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0747&lsId=&efYd=20160804&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0000>)

제 6 장 결 론

행정기관이 정책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거나 법령 등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는 일반적인 지도·감독 차원에서 실시하는 각종의 조사활동은 그 자체만으로도 기업이나 국민 등에게 행정 부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조사절차에서 헌법상, 법률상 보장된 조사대상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면, 그 절차의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으며 나아가 그 조사결과를 근거로 이루어진 행정행위의 효력까지 문제될 수 있다.

종래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에 의해서 자의적, 강압적, 수시로 행해지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인식되어 왔다. 행정조사의 방법이나 절차가 유형화되어 있지 않아서 행정기관의 잦은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고, 행정조사의 목적이나 대상, 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조사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이나 조사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가 위법한 행정조사로 인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행정조사는 기업 등 국민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한편, 행정조사는 부처별로 소관 법령이나 지침, 고시 등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행정조사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에 대해 중복적 조사가 실시됨으로써 조사의 비효율성과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따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규제 개혁의 관점에서 행정조사의 정비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결과, 2007년 다양한 행정조사에 적용될 수 있는 기본 원칙과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행정조사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이 법이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법이다보니, 행정조사를 규정한 개별 법령에 상위법으

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법이 적용되는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개별 행정조사의 유형과 특성이 매우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적용을 강제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사기본법」에 규정된 조사의 기본원칙과 방법, 절차 등은 개별 법령에도 유용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제 1 절 행정조사 관련 법령 정비 방안

「행정조사기본법」에는 행정조사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는 대원칙뿐만 아니라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으로서 조사권한 남용 금지의 원칙,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대상자 선정의 원칙, 공동조사 및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 사전예방적 조사의 원칙, 비밀누설금지의 원칙, 정기조사 실시의 원칙 등이 제4조에 규정되어 있고,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른 사전 통지의무, 증표제시 의무, 결과통보 의무 등도 함께 규정되어 있다. 이로부터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각 개별 법령의 규정들을 다음의 몇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구 분	내 용
분석기준 1	조사의 법적 근거 유무 ➡ 행정조사의 근거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분석기준 2	조사의 목적과 내용의 구체성 여부 ➡ 조사의 목적과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분석기준 3	조사대상자 선정 기준 및 절차 규정 유무 ➡ 조사대상자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조사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가?

구분	내용
분석기준 4	조사의 주기 명시 여부 ➡ 수시조사의 근거가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가? 예외적 허용사유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분석기준 5	조사절차의 적법성 여부 ➡ 행정조사의 방법이나 절차 등이 행정조사기본법의 내용에 부합하는가?
분석기준 6	조사대상자의 권익 보호 ➡ 조사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개별 법령상 행정조사는 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보고의무, 출입 검사, 현장조사, 실태조사, 점검 등의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조항들이 실제적 규정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보칙에 일반적인 지도·감독의 차원에서 규정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6가지 분석 기준에 따라 개별 법령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에 관해서는 대부분 법령에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래 법령이 아니라 지침이나 훈령/고시 등에 근거를 두고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 대부분 법률이나 하위법령에라도 근거를 두고 있으며, 관세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다수의 고시에 행정조사의 근거가 규정된 경우가 더러 있었다. 특히, 출입검사나 행정조사는 개인의 주거나 영업소에 출입 또는 방문하여 서류 검사나 질문 등을 행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과 같이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 시행규칙에서 현장조사의 근거를 규정한 예도 있었다. 따라서, 훈령/고시에 근거하거나 아예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행정조사를 전수 조사하여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를 모두 법령에 두도록 정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조사의 목적과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한지 여부에 관해서 행정조사기본법의 조사권 남용금지 원칙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아직까지 많은 개별 법령에서 조사의 목적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사례가 발견되었고, 조사 내용에 대해서도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례도 더러 있었다. 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경우에 행정기관에 의한 조사권의 남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사유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개별 법령에 규정해야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입법례도 상당수 발견되어서 그러한 규정들을 모델로 하여 개별 법령상 행정조사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사의 대상 선정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개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입법례는 다수 존재하였으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대상자 선정을 위한 특별한 프로세스를 두고 있는 입법례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조사대상자 선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입법례가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조사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절차를 둬으로써 조사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넷째, 조사의 주기와 관련하여 정기조사가 원칙이고, 수시조사는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법령에서 수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률에서 수시조사를 규정한 경우에는 기본법의 규정에 비추어서도 허용할 수 있으나, 이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기본법에 합치되지 않으므로 **부득이하게 수시조사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조사의 절차와 관해서 행정조사기본법에는 조사를 실시하려고 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과 내용, 방법, 시간, 관련 법령 등을 명

시한 조사 요구서로 조사개시 7일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사전 통지의무를 아예 규정하지 않은 것도 다수 존재하고, 사전 통지를 규정했으나 단순히 ‘미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도 있었으며, 조사개시 7일전까지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입법례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의 목적과 긴급성 등에 따라서는 조사개시 7일전 통지라는 요건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모든 행정조사에 7일 전 통지의무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는 조사가 개시되기 전에 조사의 계획과 범위, 내용, 위반시 제재 등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모든 법령에 되도록 사전 통지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표제시의무는 출입검사 또는 현장조사를 규정한 입법례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함께 규정되어 있으나, 단순히 증표만 제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사에 관해 법령에서 규정한 관계 서류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별 법령상 행정조사 절차와 방법에 관해서는 되도록 「행정조사기본법」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각 규정을 기본법에 맞게 전부 수정하는 방법 외에도 “**행정조사의 방법과 절차에 관해 개별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규정을 두는 것도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행정조사기본법」에는 조사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연기신청, 전문가의 참여 보장 등 몇가지 규정이 존재하고 있으나, 개인정보의 보호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절차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기본법에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거나, 개별 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행정조사기본법에서 도출한 몇가지 분석 기준에 따라 개별 법령을 분석, 검토한 결과 **아직 행정조사기본법의 원칙과 절차가**

개별 법령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하고 있어서 실무에서도 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행정조사를 통해서 기업이나 국민은 보고나 자료제출, 질문 검사 등을 받느라 업무나 주거, 재산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므로, 그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행정조사기본법」이 2007년 제정된 이후 단 한번도 실질적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므로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우선, 다양한 행정조사의 유형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의 방법에 실태조사나 점검 등 유형을 추가하고, 조사대상자의 조사 연기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거부하는 규정으로 수정하거나,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해서만 의견 제출을 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시조사의 예외를 넓게 규정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 사전통지 내용을 위반함으로써 조사대상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이에 대한 보상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동조사를 활성화하고, 중복조사를 지양하기 위해서는 조사대상자에게 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은 실제로 활용되기 어려우므로, 행정기관 간 조사내용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행정기관 간 공동조사 요청 제도를 통해서 불필요하고 중복적인 조사를 정비하도록 규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제 2 절 행정조사 합리적 운용 및 실효성 확보 방안

행정조사기본법과 개별 법령에 규정된 행정조사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행정조사기본법의 가이드라인이 개별 법령에 제

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대체로 행정조사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권한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조사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이나 권익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행정조사 제도가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가져오지 않고, 정부의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행정조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행정조사 제도의 정비를 위해서는 **행정기관별 행정조사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행정조사기본법 제6조제1항에 근거하여 국무조정실에서 매년 행정기관별 행정조사 운영계획을 취합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각 행정기관에서 제출된 내용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행정조사의 내용이 전부 포함되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고, 행정조사의 개념에 관해서도 부처별 인식이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처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면접조사 등의 방식을 통해 행정조사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 애로사항 등에 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행정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기업 등 국민을 대상으로 한 **행정조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조사대상자인 기업 등 국민의 입장에서 현행 행정조사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상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조사 정비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행정조사기본법 및 개별 법령의 행정조사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행정조사 정비를 추진한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때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기업 등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현행 행정조사기본법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특히 규정은 있으나 제대로 운용되고 있지 않은 부분을 발굴

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행정조사기본법 제25조에 규정된 자율신고제도는 관 주도의 행정조사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으나, 개별 법령에 규정된 예가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셋째, 행정조사 제도가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행정조사에 대한 점검과 평가 제도가 제대로 확립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행정조사기본법 제29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국무조정실의 담당 부서에서 매년 전 부처의 행정조사 현황을 파악하고 그 실태까지 점검, 평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므로, **행정조사에 관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여기에는 국무조정실의 관리 담당자, 각 부처의 담당 공무원, 조사대상자인 국민이 모두 참여하여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조사의 결과 등에 관해서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중복조사를 지양하고 공동조사를 활성화할 수도 있으며, 조사대상자인 국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창구가 마련될 것이므로 보다 소통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행정조사 정비방안의 추진절차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 강현철·이세정, 기업 등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보고·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 국무조정실, 기업 행정조사 개선방안,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 자료, 2004
- 국무총리실, 행정조사 정비에 따른 행정부담 감축효과 측정 요령, 2009
- 국회법제실, 법제이론과 법제실무, 국회, 2016
- 국회 정무위원회, 행정조사기본법 심사보고서, 2007
- 국무조정실, 2007 규제개혁백서, 2008
- 국무조정실, 2012 규제개혁백서, 2013
- 김계현·김한나, 요양기관 현지조사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고려법학 제65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 김계현·김한나, 의료기관현지조사의 법적 검토와 개선방안, 의료정책연구소, 2011.
- 김남철, 행정법강론, 박영사, 2014
- 김동희, 행정법(I), 박영사, 2011
- 김성수, 일반행정법, 홍문사, 2014
- 김성태, 通信法上の 行政調査 : 독일 통신법(TKG)상 행정조사와의 비교고찰, 행정법연구 통권17호, 한국행정법연구소, 2007
- 김신·최진식, 행정부담 감축을 위한 행정조사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3

참 고 문 헌

- 김영조, 미국 행정법상 행정조사의 법리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제21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4
- 김영조, 행정조사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법학연구 제8권 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7
- 김재광, 행정조사기본법 입법과정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제33권 제2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김재광 외, 행정조사기본법 제정방안 연구, 국무조정실 연구용역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05
-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15
- 박정훈 외, 미국 등 주요 선진국가의 행정조사와 영장주의, 법무부 연구보고서, 2011
-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법제처, 2013
- 신상환, 行政調査의 法理論과 法制小考, 법제연구 제13호, 한국법제연구원, 1997
- 신종익·임상준, 행정조사의 실태와 개선방안: 규제개혁 차원의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원, 2004
- 오준근, “행정조사”의 공법이론적 재검토, 공법연구 제31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03
- 오준근, 행정조사제도의 법리적 논의·입법동향의 평가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45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 유승희, 자료제출요구권 등(행정조사)의 행사 범위와 그 한계 : 정보통신망법 제55조 개정안을 중심으로, 2006년 정기국회 정책자료집 (2), 2006

- 이익현, 미국행정법의 기초개념(4)-행정정보의 수집과 공개(acquisition and freedom of information)-, 법제(2010. 10), 법제처, 2010
- 장은혜, “행정조사에 있어서의 권리구제”, 국민중심의 행정조사 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 제1차 워크숍(2016. 6. 22)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 전국경제인연합회, 행정조사기본법(안) 검토 의견, 2006
- 정한중, 행정조사와 진술거부권 고지의무, 외법논집 제38권 제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조이현, 중소기업 행정조사 간소화방안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2007
- 최봉석, 행정법총론, 법령정보관리원, 2014
- 최승필, 세무조사에서의 권리구제에 관한 법적 검토 -판례를 중심으로-, KERI Insight(13-07), 한국경제연구원, 2013
-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4
-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15
- Peter L. Strauss, 이익현 역, 미국행정법 개론, 한국법제연구원, 2010

2. 외국 문헌

- Shiv Narayan Persaud, Parallel investigations between administrative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A question of civil liberties, University of Dayton Law Review, 39(1), 2013
-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Legal Policy, Report to Congress on the Use of Administrative Subpoena Authorities by Executive Branch Agencies and Entities, available at

참고 문헌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URLs_Cited/OT2014/13-1175/13-1175.pdf (2016. 10. 31 최종방문)

芝池義一、行政法総論講義〔第4版〕、有斐閣 (2001)

芝池義一、行政法総論講義, 2006

藤原静雄, 行政調査論の現状と課題—行政情報管理の視点をふまえて—,
筑波ロー・ジャーナル5号 (2009 : 3)

深澤龍一郎, 行政調査の分類と手続, ジュリスト増刊 行政法の争点,

曾和俊文、行政調査手続の整備、ジュリストNo.1304, 有斐閣 (2006.1.1.-15)

宇賀克也、行政手続法の解説〔改訂版〕、学陽書房(1995)

3. 신문기사

“기업 부담 늘리는 주범은 ‘행정조사·사회보험·법인세’”, 헤럴드 경제 2015.

1. 19. 기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119000352&md=20150119110118_BL (2016. 10. 31 최종방문)

“의료계, 복지부 현지조사 개선에 ‘회의적’ ” 의학신문 2016. 8. 16. 기사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607898) (2016. 10. 31 최종방문)

“중기 3곳 중 1곳 “각종 신고로 행정부담 가중”, 이데일리 2015. 12. 16 기사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C61&newsid=02886406609599176&DCD=A00306&OutLnkChk=Y>) (2016. 10. 31 최종방문)

“현지조사 거부한 한의원 1년 업무정지 정당”, 인터넷의협신문 2016. 9. 23.

기사(<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730>)
(2016. 10. 31 최종방문)

4. 기 타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6.8.4.] [법률 제13997호, 2016.2.3., 일부개정]) 일부 개정 이유 참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0747&lsId=&efYd=20160804&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0000>)

부 록

<부 록>

개별 법령상 행정조사 목록¹⁸²⁾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 고
1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제18조제1항	개업노무사, 노무법인에 대한 보고, 자료제출 요구, 출입 검사 및 질문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 조사	사전통지, 증표제시
2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사업주, 공제회에 대한 보고, 자료제출 요구	자료제출·보고요구	
3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퇴직공제 적용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 대한 보고 및 서류 제출 요구	자료제출·보고요구	
4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44조	보고, 서류 제출	자료제출·보고요구	* 조사의 목적 시 행령 위임
5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45조	사업장 및 보험사무대행기관 출입 검사	현장조사	* 조사의 목적 시 행령 위임 사전통지, 증표제시, 결과통보 규정

182) 이하의 목록은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697개의 목록 중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중복되거나 부정확한 목록을 정리하고 새로운 규정을 발굴한 것으로서 보고서 본문에서 언급한 부처별 행정조사 개수에 차이가 있음을 밝혀둔다.

부 록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 고
6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제108조제1항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보고, 자료제출, 출석 요구	자료제출·보고요구 출석 요구	
7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제108조제3항	피보험자, 수급자격자 등 자격확인, 부정수급조사를 위한 보고, 자료제출, 출석 요구	자료제출·보고요구 출석 요구	
8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제109조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 조사	현장조사	
9	고용노동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공공부문 우선고용직종 고용현황 조사	자료제출 의무	시행령에 근거
10	고용노동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현황 제출	자료제출 의무	
11	고용노동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고령자인재은행 및 증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보고요구 및 출입검사	보고 요구 현장조사	사전통지, 증표제시, 결과통보 규정
12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 제38조	고용관리 및 고용조정 지원제도 위반 여부 보고 요구, 출입 검사	보고 요구 현장조사	사전통지, 증표제시, 결과통보 규정
13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제25조제1항	공인노무사에 대한 보고, 자료제출 요구, 장부, 서류 등 검사 및 질문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 조사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고
14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의3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사용 및 알선자 조사(제1항)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상황 및 소속 사업장에 관한 자료 제출(제2항)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사전통지, 증표제시, 결과통보 규정
15	고용노동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8조	직업훈련기관 등에 대한 보고, 자료제출 요구, 출입검사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사전통지, 증표제시, 결과통보 규정
16	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제6항	퇴직연금사업자의 퇴직연금제도 취급 실적 제출	자료제출 의무	
17	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제7항	퇴직연금사업자의 약관 또는 표준계약서 보고	보고의무	
18	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0조제1항	퇴직연금제도의 실시 상황 등에 관한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출석요구	자료제출·보고요구 출석요구	
19	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0조제2항	퇴직연금제도 실시 사업장 및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출입 검사	현장조사	증표제시
20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제출(제1항),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제출(제2항)	자료제출 요구, 자료제출 의무	
21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제1항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 제출	자료제출 의무	

부 록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 고
22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실태조사	정기적 실시
23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7조제1항	사업보고서 제출	자료제출 의무	
24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7조제2항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 자료제출	자료제출·보고요구	
2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	안전·보건진단결과의 보고	보고 의무	시행규칙에 근거
2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산업재해 발생 보고	보고 요구	
27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 제1항	석면농도 자료 제출	자료제출 요구	
28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제1항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및 제출	자료제출 의무	
29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8항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자료제출 명령	
30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	보고 의무	
31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4항	건강진단결과 보고	보고 의무	
3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1항, 제3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자료제출 의무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고
33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자료제출 의무	
34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제2항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제출	자료제출 요구	
35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4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보고, 자료 제출	자료제출·보고요구	
36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7조	산재 사업장 조사	현장조사	증표제시 규정
37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	산재보험 의료기관 조사	현장조사	증표제시 규정
38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 제1항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진료 계획 제출	자료제출 의무	
39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 제2항	진폐진단결과 제출	자료제출 의무	
40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사용자, 외국인근로자 관련단체 등에 대한 보고 및 관련 서류 제출, 관계인에 대한 질문, 조사, 검사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증표제시
41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	실태조사	
42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제1항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	자료제출 요구	
43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6조제1항	장애인 고용사업장 점검, 보고	보고요구 현장조사	증표제시

부 록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 고
44	고용노동부	직업안정법 제41조	근로자공급사업자 자료제출·보고 및 출입 검사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 조사	사전통지, 증표제 시규정
45	고용노동부	직업안정법 제41조	직업소개사업자 및 직업정보제공사업 자 등에 대한 보고, 자료제출 요구, 출입 검사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사전통지, 증표제 시규정
46	고용노동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정기·임시 이직자의 건강진단 실시 결과 제출	자료제출 의무	
47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청년고용현황 제출	자료제출 의무	시행령에 근거
48	관세청	관세사법 제22조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11-1조	관세사회 정기 보고	보고의무	고시에 근거
49	관세청	관세법 제143조,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 역 등에 관한 고시 제30조	선(기)용품 재고조사	기 타	
50	관세청	관세법 제164조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자율관리보세구역 정기감사	자료제출·보고요구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고
51	관세청	관세법 제180조제2항	특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보고 요구, 운영상황 검사	보고요구	
52	관세청	관세법 제203조	종합보세구역 내 기록 검사 또는 조사, 업무실적 등 보고 요구	현장조사 보고요구	
53	관세청	관세법 제222조제3항	보세운송업자들에게 영업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	자료제출·보고요구	
54	관세청	관세법 제222조제4항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보고요구	보고요구	
55	관세청	관세법 제241조, 제263조	통관고유부호 등록사항 조사	현장조사	
56	관세청	관세법 제255조의2, 제263조	종합인증우수업체 자체평가서 제출 및 수출입 관리현황 변동사항 보고	자료제출·보고요구	
57	관세청	관세법 제263조	물품·운송수단 또는 장치 장소에 관한 서류의 제출·보고 요구, 관계자 조사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58	관세청	관세법 제327조의2 제7항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지도·감독	보고요구	
59	관세청	관세법 제327조의3 제7항	전자문서증계사업자 사업현황 보고 및 현장점검	보고요구 현장조사	
60	관세청	관세법 제89조	제조(수리)공장 현장확인	현장조사	

부 록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 고
61	관세청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2조	보세공장 특허변경사항 보고	보고요구	고시에 근거
62	관세청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5-1조	보세판매장 재고조사	자료제출 · 보고요구	고시에 근거
63	관세청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 제11조	특별통관대상업체의 분기별 운영현황 제출	자료제출	고시에 근거
64	관세청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관세법 제222조, 제263조	특송업체 정기점검	현장조사	
65	교육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	특수교육 실태조사	실태조사	3년마다 정기 실시
66	교육부	학교급식법 제19조제1항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출입 검사, 시료채취	현장조사 시료채취	증표제시
67	교육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점검 및 점검결과 보고	현장조사 보고요구	시행규칙에 근거
68	교육부	학교보건법 제4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상태 점검	현장조사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고
69	교육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고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학원, 교습소, 개인과의교습자에 대한 보고 요구, 출입 검사	보고요구 현장조사	
70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제3항	교육기관의 장 등에게 수업료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자료제출요구	
71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제2항	취업지원실시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출입검사	자료제출요구 현장조사	증표제시
72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취업지원희망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출입 검사질문	자료제출요구 현장조사	증표제시
73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대군인 실태조사	실태조사	
74	국민안전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소방특별조사	현장조사	제4조의2(소방특별조사에의 전문가 참여) 제4조의3(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제4조의4(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의무 등)

부 록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 고
75	국민안전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1조	소방시설업자나 관계인에게 보고, 자료제출 요구, 출입 검사 질문(제1항) 소방관련 정부위탁업무 수행기관에 대한 보고, 자료제출 요구, 출입검사 질문(제2항)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증표제시
76	국민안전처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21조	승강기 제조, 수입, 관리, 검사 실태 및 현황 파악을 위한 보고, 자료제출 요구, 출입검사 질문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사전통지, 증표제시
77	국민안전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	어린이놀이시설 중대사고 조사	자료제출요구 현장조사	
78	국민안전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79	국민안전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위험물시설에 관계인에 대한 자료제출, 보고 요구, 출입검사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시료채취	
80	국민안전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제5항	탱크시험자에 대한 보고, 자료제출 요구, 출입검사 질문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시간제한, 비밀누설금지
81	국민안전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보고, 자료제출 요구, 출입검사 또는 질문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고
82	국토교통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6조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보고, 자료제출 요구, 출입검사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사전통지, 증표제시
83	국토교통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8항	감정평가법인의 재무제표 제출	자료제출 의무	
84	국토교통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7조	감정평가업자 및 협회에 대한 보고, 자료제출 요구, 출입검사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증표제시
85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4	비용 지원대상 자격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보고 요구, 출입검사 질문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증표제시
86	국토교통부	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	건설기계소유자 등에 대한 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출입 검사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증표제시
87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2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위한 자료제출	자료제출 의무	
88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자료제출 요구	
89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90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제65조	공제조합에 대한 조사 및 검사	현장조사	증표제시
9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제75조	건설분쟁에 대한 조사	현장조사	

부 록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 고
92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의2 제5항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자료제출 요구	
93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7항	건축사보 배치현황 제출	자료제출 의무	시행령에 근거
94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제22조의3제2항	전산자료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자료제출 요구	시행령에 근거
95	국토교통부	건축법 제25조제4항, 제6항	건축물의 공사감리 보고 및 보고서 제출	자료제출 · 보고요구	
96	국토교통부	건축법 제87조	건축물의 건축주등, 공사감리자, 공사 시공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에게 자료제출, 보고요구, 출입검사	자료제출 · 보고요구 현장조사	
97	국토교통부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26조	실무교육 결과보고	보고의무	
98	국토교통부	건축사법 제19조의2 제1항	건축사 수행업무실적 제출	자료제출	
99	국토교통부	건축사법 제30조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게 보고, 자료제출 요구, 출입검사	자료제출 · 보고요구 현장조사	증표제시
100	국토교통부	건축사법 제38조의2	건축사협회의 업무보고	보고요구	
101	국토교통부	경관법 제18조	경관사업시행자에 대한 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자료제출 · 보고요구	
102	국토교통부	경관법 제25조제2항	경관협정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자료제출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고
103	국토교통부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골재채취 분기별 현황 제출	자료제출 의무	시행규칙에 근거
104	국토교통부	골재채취법 제21조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증표제시
105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기본측량이나 수로조사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자료제출 요구	
106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7	공공주택의 거주 실태조사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증표제시
107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제54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보고, 자료제출 요구, 출입검사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증표제시
108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제44조	공인중개사 협회나 지부 등에 대한 보고, 자료제출 요구, 출입검사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증표제시
109	국토교통부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공항소음대책사업 또는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보고, 자료제출 요구, 출입 검사 질문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사전통지, 증표제시
110	국토교통부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공항주변의 공항소음도 조사	실태조사	
11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법 제14조	관계인에 대한 자료제출	자료제출 요구	
112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법 제20조	계획수립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자료제출 요구	

부 록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 고
113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법 제21조제1항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	자료제출 의무	
114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법 제33조제4항	교통안전점검을 위한 보고, 자료제출 요구, 출입검사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사전통지, 증표제시
115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법 제34조제2항	교통안전진단보고서의 제출	자료제출 의무	
116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법 제36조제2항	교통안전진단결과보고서 제출	자료제출 의무	
117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법 제37조제3항	권고 등의 이행실적 제출 요청	자료제출 요구	
118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법 제45조제2항	교통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119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법 제47조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또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에게 보고, 자료제출 요구, 출입검사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사전통지, 증표제시
120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법 제50조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등의 교통사고 원인조사	기 타	
12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 보관 및 제출	자료제출	
122	국토교통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5조	실태조사 및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실태조사 자료제출 요구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고
123	국토교통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8조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와 관련되는 사항의 보고, 자료제출 요구, 출입검사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증표제시,
124	국토교통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4조	정보통신수단 등을 통한 교통조사	실태조사 자료제출 요구	
125	국토교통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9조제1항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의 타당성 평가서 제출	자료제출	
126	국토교통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8조	평가대행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보고 요구, 관계공무원에게 조사명령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사전통지, 증표제시
127	국토교통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9조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의 보고	보고의무	
128	국토교통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9조	복합환승센터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 자료제출, 출입검사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사전통지, 증표제시
129	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실태조사, 자료제출요구	
130	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실태조사	
131	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7조제2항	토지거래허가 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	기 타	

부 록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 고
132	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토지의 개발·이용 등의 실태조사	실태조사	
133	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전국 지가변동률 조사	실태조사, 자료제출 요구	
134	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7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나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보고, 자료제출요구, 출입검사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증표제시
135	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실태조사, 자료제출요구	
136	국토교통부	궤도운송법 제16조제2항	건설·설비 내용 및 자체 안전관리규정 제출	자료제출 요구	
137	국토교통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 계획 제출요구	자료제출 요구	
138	국토교통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대중교통현황조사	실태조사	
139	국토교통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자료제출 요구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고
140	국토교통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 대중교통운영자의 장부·서류, 물건 검사 또는 관계인 질문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14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대중교통운영자에게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자료제출 요구	
142	국토교통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결과 제출	자료제출의무	시행령에 근거
143	국토교통부	도로법 제77조제4항	제한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여부 확인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144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3항	건축물 안전진단 실시 여부 결정을 위한 현지조사	현장조사	
145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4항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출	자료제출의무	
146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2항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의 조사	기 타	
147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증표제시

부 록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 고
148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74조의5제2항	협회업무 감독을 위한 보고, 자료제출	자료제출·보고요구	
149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75조	도시정비사업 실적 보고의무 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제출, 보고요 구, 출입검사 등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사전통지
150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77조제3항	도시정비사업 현장조사	현장조사	
151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 제6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기 초조사, 자료제출	자료제출요구 현장조사	
152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 제74조	도시개발사업 시행 관련 보고, 자료제 출, 출입검사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중표제시
153	국토교통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5항	특정원인 녹지설치자에게 자료제출 요구	자료제출 요구	시행령에 근거
154	국토교통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2항	특정원인 녹지설치자에게 재정신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자료제출 요구	시행령에 근거
155	국토교통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 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총괄사업관리자의 자료 요구	자료제출 요구	
156	국토교통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 별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주거 실 태조사	실태조사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고
157	국토교통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6조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단계별 현황 자료 등 필요한 자료 요구	자료제출 요구	
158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기 타	
159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1조	복합물류터미널 건설, 물류단지 개발에 관해 필요한 보고, 자료제출, 출입 검사 등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증표제시
160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기본법 제15조제1항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한 관련 기초 자료 제출 요청	자료제출 요구	
16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제3항	인증종합물류기업 정기점검	현장조사	
162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기본법 제7조제1항	물류현황조사	기 타	
163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기본법 제7조제2항	물류현황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자료제출 요구	
164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기본법 제9조제1항	지역물류현황조사	기 타	
165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기본법 제9조제2항	지역물류현황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자료제출 요구	
166	국토교통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8조	부도임대주택의 시설물 상태, 보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기 타	
167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사전통지, 증표제시

부 록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 고
168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	부동산개발업자의 위반행위 조사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결과통지
169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부동산개발업협회 감독을 위한 보고, 자료제출 요구	자료제출 · 보고요구	
170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9조의2	부동산투자회사등의 금융감독 관련 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 보고 요구, 업무 검사	자료제출 · 보고요구 현장조사	
171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9조제1항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 보고 요구, 출입검사	자료제출 · 보고요구 현장조사	
172	국토교통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4	재생사업지구의 입주기업에 대한 조업 실태조사	실태조사	
173	국토교통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7조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출입 검사	자료제출 · 보고요구 현장조사	사전통지, 증표제시
174	국토교통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	기초조사	실태조사	
175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7조,	감리보고서, 설계도서, 관리대장 등 제출의무, 서류 열람	자료제출 현장조사	
176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	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 등 제출	자료제출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고
177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자료제출 요구	
178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지도·감독을 위한 보고, 자료제출, 출입검사 등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179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실태 점검, 자료제출 등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사전통지
180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보고, 자료제출		
181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6	유지관리업자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현황 제출, 서류 조사 등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사전통지, 증표제시
182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보고	보고의무	
183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사항 또는 자동차 소유 또는 사용 사항 보고, 서류제출, 출입검사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증표제시
184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3제2항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 증지를 위한 조사	기타	
185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제32조제4항	성능시험평가서 제출	자료제출	
186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제33조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자료제출	

부 록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 고
187	국토교통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3조의2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운영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자료제출	
188	국토교통부	자동차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제5조	운송사업자에게 운행기록 제출 요청	자료제출 요구	지침에 근거
189	국토교통부	자동차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제8조	운행기록장치 및 운행기록의 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	실태조사 자료제출 요구	지침에 근거
190	국토교통부	주거기본법 제20조	주거실태조사(정기, 수시)	실태조사	증표제시
191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제19조의2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자료제출 의무	
192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제19조의6	기계식주차장치의 조립도, 안전장치의 도면 등 제출	자료제출 의무	
193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제25조	노외주차장관리자 등에 대한 보고, 자료제출 요구, 출입검사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증표제시
194	국토교통부	주택법 제14조제1항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 등의 확인	기 타	
195	국토교통부	주택법 제41조제6항	성능등급의 인정현황 등 업무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출입검사	자료제출요구 현장조사	증표제시
196	국토교통부	주택법 제44조제2항	감리자의 업무수행상황 등 보고	보고의무	
197	국토교통부	주택법 제48조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현장조사	
198	국토교통부	주택법 제49조	사용검사	현장조사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고
199	국토교통부	주택법 제93조	주택법에 따른 인가승인, 등록된 자에게 보고 요구, 출입검사	보고요구, 현장조사	사전통지, 증표제시
200	국토교통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0조	지하수 관련 시정 조치 확인 조사	현장조사	시행규칙에 근거
201	국토교통부	지하수법 제17조제1항	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기 타	
202	국토교통부	지하수법 제21조	수질검사 이행 여부, 수질검사결과서, 지하수개발·이용상황 또는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상황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보고, 출입검사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사전통지, 증표제시
203	국토교통부	지하수법 제34조	등록요건 및 법령 위반 여부 확인이 필요하거나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사항 보고, 자료제출, 출입검사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사전통지, 증표제시
204	국토교통부	지하수법 제5조	지하수에 대한 기초조사	기 타	
205	국토교통부	철도안전법 제31조	형식승인의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 자료제출, 검사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증표제시
206	국토교통부	철도안전법 제61조	철도사고등 보고, 사고내용 조사	보고의무 현장조사	
207	국토교통부	철도안전법 제71조제2항	철도안전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자료제출 요구	

부 록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 고
208	국토교통부	철도안전법 제73조	철도관계기관 등에 대한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 출입검사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증표제시
209	국토교통부	택지개발촉진법 제24조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현황 보고 및 조사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사전통지, 증표제시
210	국토교통부	항공법 제153조	항공안전을 위한 업무보고, 자료제출 요구, 출입검사 질문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사전통지, 증표제시
211	국토교통부	항공법 제95조제6항	공항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지형도면 제출	자료제출	
212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의2제4항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관리를 위한 자료 요청	자료제출 요구	
213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의5	위·수탁계약의 실태조사	실태조사	
214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1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경영 지도	자료제출·보고요구	
215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4조의2제3항 내지 제5항	재정지원 및 지원금 사용에 대한 감독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사전통지, 증표제시
216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7조의6제5항	화물운송서비스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실지조사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217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의7	공제조합에 대한 보고서 제출 요구, 조사 검사	자료제출요구 현장조사	사전통지, 증표제시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고
218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4조	협회 및 연합회 감독을 위한 보고서 제출, 출입검사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증표제시
219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1조	화물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 출입검사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증표제시
220	기상청	기상산업진흥법 제12조	기상산업 실태조사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221	기상청	기상산업진흥법 제22조	기상사업자나 기상정보지원기관 대상 자료제출, 출입검사 등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증표제시
222	기획재정부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3조	귀속재산 관리조사	현장조사	시행령에 근거 증표휴대
223	기획재정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검사 등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증표제시
224	기획재정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보조금 집행 적정성 조사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증표제시
225	기획재정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제41조의 9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조사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226	기획재정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7조	수입인지 관리 실태조사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부 록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 고
227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에 필요한 자료 확인 조사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228	농림축산 식품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가축 소유자, 농장경영자 등에 대한 보고, 출입검사, 시료 수거	보고요구 현장조사	증표제시
229	농림축산 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2조	가축병성감정 실적 보고 등	보고의무	
230	농림축산 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	가축전염병 역학조사	현장조사	
231	농림축산 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5	시설출입차량에 대한 조사	현장조사	증표제시
232	농림축산 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3조, 제44조, 제52조제2항	불합격 검역물의 처리 검토 자료 제출	자료제출 · 보고요구	
233	농림축산 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1조	가축전염성질병 예방을 위한 보고 명령	보고요구	
234	농림축산 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1조	가축전염성질병 예방을 위한 보고 요구	보고 요구	
235	농림축산 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5항	가축소유자 등의 검역을 위한 자료제 출, 검사 등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고
236	농림축산 식품부	국가품종목록등제품종성능 심사요령	국가품종목록 등제품종 신청 자료 제출	자료제출·보고요구	예규에 근거
237	농림축산 식품부	낙농진흥법 제17조	보고 요구, 출입검사 등	자료제출·보고요구	*보고사항을 불명확하게 규정 증표제시
238	농림축산 식품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 에 관한 법률 제76조	도매시장 실태 조사	실태조사	
239	농림축산 식품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 에 관한 법률 제79조	도매시장 등에 대한 재산, 업무집행상 황 등 보고 요구	보고 요구	
240	농림축산 식품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 에 관한 법률 제80조	도매시장 운영 등에 대한 검사	현장조사	증표제시
241	농림축산 식품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	원산지표시 실태조사	현장조사	증표제시
242	농림축산 식품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3조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 우수관리시 설 등에 대한 보고, 자료제출, 출입검 사 등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사전통지, 증표제시
243	농림축산 식품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0조	농산물 우수표시품의 사후관리를 위 한 조사 등	현장조사	사전통지, 증표제시

부 록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 고
244	농림축산 식품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9조 제1항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조사	현장조사	
245	농림축산 식품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농산물 안전성 실태조사	현장조사	
246	농림축산 식품부	농약관리법 제25조	농약 등 또는 원제 관리 상황 보고	보고의무	
247	농림축산 식품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5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확인조사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증표제시
248	농림축산 식품부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 리 규정 제13조	검사기관의 검사 실적 제출, 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자료제출 · 보고요구	고시에 근거
249	농림축산 식품부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 리 규정 제24조제2항	동물병원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 육 계획 및 결과 보고	자료제출 · 보고요구	고시에 근거
250	농림축산 식품부	동물보호법 제39조	동물현황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한 자 료제출 · 보고 요구 및 출입검사	자료제출 · 보고요구 현장조사	사전통지
251	농림축산 식품부	동물보호법 제45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및 동물실 험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 동물의 등록 자료 제출 동물판매업 및 동물장모업 등록과 운 영실태 자료 제출 등	자료제출 요구 실태조사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고
			유기동물 및 동물보호센터에 관한 자료 제출		
252	농림축산 식품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발농업직불제이행점검조사 조건불리직불제 이행점검조사	현장조사	* 조사의 직접적 근거가 명시되지 않음
253	농림축산 식품부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 역요령 제11조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실적 보 고 및 자료제출	자료제출·보고	고시에 근거
254	농림축산 식품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5	식물검역대상물품을 1개월 이상 미검역 상태로 장치한 물품 목록 자료 제출	자료제출·보고요구	시행규칙에 근거
255	농림축산 식품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수출입목재 열처리업체 점검	현장조사	
256	농림축산 식품부	식물방역법 제18조, 제19조 제1항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 조제6항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관리상황 보고 및 자료 제출	자료제출·보고요구	
257	농림축산 식품부	식물방역법 제23조	경유물품의 안전사고에 대한조사	현장조사	
258	농림축산 식품부	식물방역법 제31조의5	분포조사	현장조사	

부 록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 고
259	농림축산 식품부	식물방역법 제31조의6	역학조사	현장조사	
260	농림축산 식품부	식물방역법 제33조	병해충 발생 예찰 조사	현장조사	
261	농림축산 식품부	식물방역법 제34조	방제 필요 사실 보고의무	보고의무	
262	농림축산 식품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1조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 위한 자료 제출	자료제출 요구	
263	농림축산 식품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1조	보호품종의 실시여부 등에 관한 보고 요구	보고 요구	
264	농림축산 식품부	식품산업진흥법 제26조	우수식품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사전통지(3일전), 증표제시
265	농림축산 식품부	약사법 제38조제2항, 제42조 제4항	동물용의약품등 생산,수출입 및 판매 실적 보고자료 제출	자료제출·보고요구	
266	농림축산 식품부	양곡관리법 제27조	감독을 위한 보고, 자료제출, 출입검사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사전통지, 증표제시
267	농림축산 식품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사료용 유전자변형 생물체(LMO) 표 시사항 조사	현장조사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고
268	농림축산 식품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6 조의2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환경영향 등의 조사	현장조사	
269	농림축산 식품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출입 검사, 보고, 자료제출 요구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증표제시
270	농림축산 식품부	인삼산업법 제15조제3항	인삼류 제조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자료제출, 보고, 출입검사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증표제시
271	농림축산 식품부	인삼산업법 제17조제5항	인삼류 검사수량과 검사성적서 등 제 출의무	자료제출	
272	농림축산 식품부	인삼산업법 제20조의3	인삼산업 통계조사	실태조사	
273	농림축산 식품부	인삼산업법 제29조	출입검사, 시료수거 등	현장조사, 시료채취	증표제시
274	농림축산 식품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 률 제21조	소싸움경기시행자 보고 요구 및 출입 검사	보고요구 현장조사	증표제시
275	농림축산 식품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업용 면세유류 사후관리 조사	현장조사	
276	농림축산 식품부	종자산업법 제23조제2항	종자결함으로인한 피해 현황 조사	현장조사	

부 록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 고
277	농림축산 식품부	종자산업법 제45조	종자 유통조사	현장조사, 시료채취	증표제시
278	농림축산 식품부	종자산업법 제4조	종자산업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실태조사 자료제출 요구	
279	농림축산 식품부	초지법 제24조제1항	초지관리 실태조사	실태조사	
280	농림축산 식품부	초지법 제5조의2	초지조성의 적지조사	현장조사	사전통지, 증표제시
281	농림축산 식품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	축산물의 검사 결과 및 수출입 실적 보고, 출입검사, 수거	보고요구 현장조사, 시료채취	증표제시
282	농림축산 식품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4조	도축실적, 집유실적, 축산물가공품 또는 포장육의 생산실적 보고	보고의무	
283	농림축산 식품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 한 법률 제11조	농어업 자원과 농어업 환경의 실태조 사 및 평가	실태조사	
284	농림축산 식품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 한 법률 제12조	농어업 자원과 농어업 환경의 실태조 사를 위한 사업장 출입조사, 시료채취	현장조사, 시료채취	증표제시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고
285	농림축산 식품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 한 법률 제31조제1항	친환경인증농산물 시판품 조사, 인증 품 생산 과정 조사 등	현장조사	사전통지
286	농림축산 식품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 한 법률 제32조제1항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실태조사	실태조사	
287	농림축산 식품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 한 법률 제49조제1항	유기농어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제 품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시료채취	
288	농림축산 식품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 한 법률 제50조제1항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사후관리 조사	현장조사	
289	농림축산 식품부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제 12조	반출·반입 검사	현장조사	
290	농림축산 식품부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제 6조	진도개 사육 실태 조사(정기)	실태조사	증표제시
291	문화체육 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게임산업 현황 및 이용실태 조사	실태조사	
292	문화체육 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4항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예방조치 자료제출 및 보고 요구	자료제출·보고요구	

부 록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 고
293	문화체육 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6항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보고의무	
294	문화체육 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법령 준수사항 주기적 조사 관리 게임물관리사업자에 대한 보고, 출입 검사 게임물관리 사업자 실태보고서 제출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295	문화체육 관광부	공연법 제12조의4	안전검사 결과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현장확인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증표제시
296	문화체육 관광부	공연법 제12조제5항	공연장 안전검사 결과 제출	자료제출 의무	
297	문화체육 관광부	공연법 제31조	공연자 또는 공연장 등에 대한 감독	현장조사	
298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진흥법 제33조의2	유원시설에서의 중대사고 발생시 보 고의무 및 사고 조사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299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진흥법 제78조	관광 사업 보고·검사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증표제시
300	문화체육 관광부	국어기본법 제12조제1항	한글맞춤법 영향 평가	현장조사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고
301	문화체육 관광부	국어기본법 제9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 1항	국민의 국어능력, 국어의식, 국어사용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302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0조	콘텐츠산업통계 실태조사	자료제출·보고요구	
303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0 조의3	문화산업통계 작성을 위한 실태 조사	실태조사	
304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5조	문화산업전문회사의 감독 검사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증표제시
305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제4항	기부금품 가액 및 품명 보고	보고의무	
306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자료제출·보고요구	
307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예술진흥법 제40조	감독에 필요한 사항 보고, 출입검사	보고 요구 현장조사	
308	문화체육 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6조제3항	사행산업 관련 통계 조사	실태조사	
309	문화체육 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	사행산업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	현장조사	증표제시

부 록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 고
310	문화체육 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9조	사행산업 부작용 예방과 치유를 위한 현장 실태조사	실태조사	
311	문화체육 관광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여론집중도조사	현장조사	
312	문화체육 관광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신문사업자의 소유제한 위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자료제출 요구	
313	문화체육 관광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	자료제출 · 보고요구	
314	문화체육 관광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음악산업 관련 자료 조사	자료제출 · 보고요구	
315	문화체육 관광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전통사찰 지정관련 현지조사	현장조사	*조사의 직접적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316	미래창조 과학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8조	정보화선도사업 추진실태 등 실태조사	현장조사	
317	미래창조 과학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9조	정보화 지표조사	기 타	
318	미래창조 과학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50조	기본계획 수립 지원 등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자료제출 요구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고
319	미래창조과학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실태 조사	실태조사 자료제출 요구	
320	미래창조과학부	방송법 제79조	유선방송국 설비검사	현장조사	
321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5항	기술기준 적합 설치·운영 여부 조사	현장조사	
322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2조	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계 등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자료제출 요구	
323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3조	방송통신설비 보고 및 출입 검사	현장조사	사전통지, 증표제시
324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7항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현장조사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325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현황 등 검사	현장조사	
326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연구실 사고 조사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327	미래창조과학부	우주개발진흥법 제24조	우주산업실태 조사	실태조사, 자료제출 요구	

부 록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 고
328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 진흥법 제16조	원자력산업실태조사	실태조사, 자료제출 요구	
329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2항부터 제4항	영업보고서 제출 및 검증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검사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330	미래창조과학부	전기통신사업법 제11조제3항	공익성심사위원회의 공익성심사를 위한 조사, 자료제출 요구	자료제출 요구	
331	미래창조과학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5항	설비등의 제공 및 이용 실태에 관한 현장조사	현장조사	사전통지, 증표제시
332	미래창조과학부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영업보고서 제출, 내용 검증을 위한 자료제출 또는 검사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증표제시
333	미래창조과학부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금지행위 확인을 위한 사실조사	현장조사	사전통지, 증표제시
334	미래창조과학부	전기통신사업법 제56조	전기통신업무 품질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	자료제출 · 보고요구	
335	미래창조과학부	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관련 자료 조사	현장조사	
336	미래창조과학부	전기통신사업법 제82조	전기통신설비상황 등 검사, 보고요구	보고요구 현장조사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고
337	미래창조과학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6항	통신자료제공현황 연2회 보고의무	보고의무	
338	미래창조과학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4항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 검사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339	미래창조과학부	전기통신사업법 제8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58조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통계 보고	보고의무	
340	미래창조과학부	전기통신사업법 제88조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59조	기간통신사업자의 자료제출의무 및 행정기관에의 관련 자료제출 요구	자료제출	
341	미래창조과학부	전기통신사업법 제88조제4항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 현황 등의 보고	보고의무	
342	미래창조과학부	전자서명법 제19조제2항	공인인증기관 정기 점검	현장조사	
343	미래창조과학부	전파법 제24조	무선국 검사	현장조사	
344	미래창조과학부	전파법 제30조	무선국통신보안 준수확인 및 교육지도점검	현장조사	* 조사의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음

부 록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 고
345	미래창조과학부	전파법 제44조의4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조사	기 타	
346	미래창조과학부	전파법 제47조의2제5항	무선국 전자파 강도 측정 조사	기 타	
347	미래창조과학부	전파법 제47조의3제3항	전자파 적합성 여부 측정 또는 조사	기 타	
348	미래창조과학부	전파법 제58조의6	지정시험기관 검사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사전통지, 증표제시
349	미래창조과학부	전파법 제6조제2항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	기 타	
350	미래창조과학부	전파법 제71조의2	전파법 위반 관련 조사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사전통지, 증표제시
35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과징금부과를 위한 금지행위 위반여부 조사	현장조사	
35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영업보고서 제출, 검증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검사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35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광고판매대행자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자료제출 요구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고
354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제35조의5제3항	경쟁상황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자료제출 요구	
355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제58조제2항	당해연도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 제출	자료제출 요구	
35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제76조의3 제3항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의5	금지행위 위반여부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출입검사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357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제85조의2제4항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여부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자료제출 요구	
358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제8조제4항 방송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일간신문의 발행부수, 유가판매부수 등의 자료 제출	자료제출 요구	
359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제98조	방송사업자 관련 자료제출 요구	자료제출·보고요구	
36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 제5항	방송통신설비 조사	현장조사	사전통지, 증표제시
36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6조 제2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4조	방송사업자의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제출	자료제출 요구	

부 록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 고
36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2조	방송통신 관련 통계 자료 제출	자료제출·보고요구	
36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3조	방송통신 설비에 관한 보고, 출입검사	보고요구 현장조사	사전통지, 증표제시
364	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에 관한 통계자료 제출	자료제출 요구	
365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여부 조사	현장조사	
366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제47조	재정사건 처리를 위한 자료제출, 영치, 출석요구	자료제출·보고요구 출석요구	
367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8조의4제4항	침해사고 원인 조사	현장조사	
368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자료의 제출	자료제출·보고요구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369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전송 관련 자료	자료제출·보고요구	
370	방송통신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23조 제1항	한국교육방송공사 전년도 결산서 제출	자료제출 요구	
371	방송통신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20조	한국교육방송공사 예산 편성 제출	자료제출 요구	
37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제83조	방송실시 결과 제출	자료제출 요구	
37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제59조제1항	전회계연도 결산서 제출	자료제출 요구	
374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제90조 방송법 시행령 제64조	시청자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자료제출·보고요구	
375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3항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현장감사	현장조사	

부 록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 고
376	보건복지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감염병 실태조사	실태조사	
377	보건복지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감염병 역학조사	현장조사	
378	보건복지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감염병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자료제출 요구	
379	보건복지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예방접종에 관한 조사 및 역학조사	현장조사	
380	보건복지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사 기록 제출 요청	자료제출요구	
381	보건복지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예방·치료 의약품의 효과와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역학조사	현장조사	
382	보건복지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감염병 확인을 위한 조사	현장조사	증표제시
383	보건복지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소독의 실시에 관한 관계 서류 제출 요구, 검사 또는 질문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증표제시
384	보건복지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감염병관리시설,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료 제공 요청, 출입검사 질문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고
385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제94조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지도 점검	현장조사	
386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치료재료 실거래가 현지조사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387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제2항	요양기관 현지조사	현장조사	
388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제14조, 제122조	국민연금 사업장 및 가입자 적정 관리실태 확인	현장조사	
389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제5조제1항	노인실태조사	실태조사	
390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현장조사	
391	보건복지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28조	보건진료소 운영실적 보고	보고요구	시행규칙에 근거
392	보건복지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4조제2항	생명윤리법 관련 기관 현장점검	현장조사	
393	보건복지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관계장소 출입.조사	현장조사	
394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제13조제3항	아동복지시설 조사	현장조사	
395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제41조, 제42조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장조사	
396	보건복지부	의료급여법 제32조제2항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부 록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 고
397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예관한법률 제 11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조사	현장조사	
398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제31조	장애인실태조사	현장조사	
399	보건복지부	정신보건법 제39조	정신보건시설 운영상황조사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400	보건복지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부적격 혈액 처리현황 조사	자료제출의무	시행규칙에 근거
401	보건복지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특정수혈부작용 발생현황 보고	자료제출·보고요구	
402	보건복지부	혈액관리법 제10조	특정수혈부작용 발생 원인의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	실태조사	
403	보건복지부	혈액관리법 제13조제1항	혈액관리업무 검사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404	보건복지부	혈액관리법 제13조제3항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405	산림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목재제품 규격·품질 및 품질인증 조사	현장조사 시료채취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 고
406	산림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목재유통현황 등의 보고, 출입 검사	보고요구 현장조사	사전통지, 증표제시
407	산림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산림자원의 조사	현장조사	사전통지(3일전)
408	산림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중요생산업자 등에 대한 업무 보고, 관련 자료제출, 출입검사 양묘사업실태조사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증표제시
409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	소나무류 취급업체 조사	현장조사 시료채취	
410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7조의2	재선충병 역학조사	현장조사 시료채취	
411	산림청	통계법 제18조	임산물생산조사	현장조사	
412	산업통상 자원부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 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항	부품소재산업 동향조사	실태조사	
413	산업통상 자원부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 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의2	공모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의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 검사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부 록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 고
414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 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	실태조사	
415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의2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실태조사	
416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8조제3항	산업디자인 전문인력 실태 조사	실태조사	
417	산업통상 자원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 발·이용·보급 촉진법 제 12조의9제3항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관한 보고, 자 료제출 요구	자료제출·보고요구	
418	산업통상 자원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 발·이용·보급 촉진법 제 23조의5제3항	혼합의무관리기관의 업무에 관한 보 고, 자료제출 요구	자료제출·보고요구	
419	산업통상 자원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 발·이용·보급 촉진법 제 25조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수급에 관한 통 계자료 조사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420	산업통상 자원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	액화석유가스 거래상황기록 제출	자료제출·보고요구	
421	산업통상 자원부	에너지법 제19조제5항	에너지총조사	실태조사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고
422	산업통상 자원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2조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사후관리	현장조사	
423	산업통상 자원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2조 제2항	공단의 업무, 회계, 재산에 관한 보고, 검사	보고요구 현장조사	
424	산업통상 자원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6조	효율관리기자재·대기전력저감대상제 품·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각 시험기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에너지 다소비사업자, 진단기관과 검사대상기 기설치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출입검사	보고요구 현장조사	증표제시
425	산업통상 자원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7조	엔지니어링사업자 점검을 위한 실태 조사	실태조사	
426	산업통상 자원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 한 법률 제27조	이러닝산업 실태조사	실태조사	
427	산업통상 자원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5조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업무에 관한 보고, 자료제출, 회사의 업무와 재산 에 대한 검사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부 록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 고
428	산업통상 자원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7조제2항	지능형 로봇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실태조사 자료제출 요구	
429	산업통상 자원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 리법 제32조	공산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보고, 자료 제출 요구, 출입검사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사전통지, 증표제시
430	산업통상 자원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 리법 제33조	공산품안전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자료제출 요구	
431	산업통상 자원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3 조의2	산업환경통계조사	실태조사	
432	식품의약품 안전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6조, 제58조	GMO 표시대상 농산물의 표시 실태 조사	현장조사	
433	식품의약품 안전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17조	의료용 마약류 수거검사 및 표시기재 점검	현장조사	
434	식품의약품 안전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41조	원료물질취급자 지도 점검	현장조사	
435	식품의약품 안전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41조	마약류 취급자 지도 점검	현장조사	
436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 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험검사기관 검사실적 보고	보고요구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고
437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위생법 제22조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출입검사, 물품수거	자료제출요구 현장조사	증표제시
438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위생법 제33조제2항제1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식품접객업소 위생상태 점검	현장조사	증표제시
439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위생법 제46조	식품 등의 이물 발견 보고	보고요구	
440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위생법 제86조	식중독 발생에 관한 조사, 보고	보고요구 현장조사	
441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시험검사 교육기관 교육결과 보고	보고요구	
442	식품의약품 안전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6조	동물실험시설 등의 지도, 감독(정기)	현장조사	
443	식품의약품 안전처	약사법 제38조	의약품 등의 생산, 수입실적 보고	보고요구	
444	식품의약품 안전처	약사법 제39조	의약품 등의 회수계획 보고	보고요구	
445	식품의약품 안전처	약사법 제47조의2제4항	의약품 유통관리현황에 대한 보고	보고요구	

부 록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 고
446	식품의약품 안전처	약사법 제69조	의약품등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자료제출 요구, 의약품등을 취급하는 업무를 하는 장소에 출입검사, 물품 수거 비임상시험기관 실태조사 생동성시험 실태조사 생물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지도 점검 의약품 제조, 수입업체 지도 점검 임상시험 실태조사 한약(생약)제조, 수입업체 출입검사 한약재 판매업소 출입검사 등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시료채취	
447	식품의약품 안전처	약사법 제86조의6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의 조사	출석요구 자료제출요구 현장조사	
448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료기기법 제13조제2항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 수입실적 보고	자료제출·보고요구	
449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료기기법 제30조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관리 점검	현장조사	
450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료기기법 제31조제1항	부작용 보고	자료제출·보고요구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고
451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료기기법 제34조	회수, 폐기 보고	자료제출·보고요구	
452	식품의약품 안전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3	HACCP운용의 적정성 검증	현장조사	
453	식품의약품 안전처	화장품법 제18조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게 보고, 출입검사, 물품수거	보고요구 현장조사, 시료채취	
454	식품의약품 안전처	화장품법 제5조제3항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자료제출·보고요구	
455	식품의약품 안전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4조	축산물가공품 등 생산실적 보고	자료제출·보고요구	
456	식품의약품 안전처	약사법 제68조의8	의약품 등 부작용 보고	보고요구	
457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험·검사를 행하는 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보고 요구, 출입 검사 질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점검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지도 점검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지도·점검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정기 지도 점검	보고요구 현장조사	

부 록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 고
458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료기기법 제32조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출입·검사	현장조사, 시료채취	증표제시
459	식품의약품 안전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	생산실적 보고	보고요구	
460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위생법 제42조제2항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	보고요구	
461	식품의약품 안전처	약사법 제34조 약사법 시행규칙 제32조	임상시험 계획서 또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계획서 변경사항 보고	보고요구	
462	식품의약품 안전처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인체조직은행 지도, 점검	현장조사	
463	여성가족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실태조사	현장조사	
464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가족친화 사회환경 실태조사	자료제출·보고요구	
465	여성가족부	건강가정기본법	가족실태조사	현장조사	
466	여성가족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국제결혼실태조사	현장조사	
467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7조제1항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현장조사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고
468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현장조사	
469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다문화수용성 조사	현장조사	
470	여성가족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매매 실태조사	현장조사	
471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 실태조사	현장조사	
472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본법 제10조	양성평등 실태조사	현장조사	
473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본법 제13조	여성정책수요조사	현장조사	
474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본법 제32조	성희롱 실태조사	현장조사	
475	여성가족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실태조사	현장조사	

부 록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 고
476	여성가족부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1항	청소년가치관국제비교조사	기 타	
477	여성가족부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1항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현장조사	
478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2항 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 구사업의 지원 등	청소년매체이용실태조사	현장조사	
479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법 제33조제3항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현장조사	
480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6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현장조사	
481	원자력안전 위원회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23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현장조사	
482	원자력안전 위원회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8조	방사능방재 정기검사	현장조사	
483	원자력안전 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조	원자력안전 실태조사	현장조사	
484	원자력안전 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제16조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검사	현장조사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고
485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제22조,제37조	발전용 및 연구용 원자로 등에 대한 검사	현장조사	
486	중소기업청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실패조사	1인 창조기업 실패조사	현장조사	
487	중소기업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2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수탁·위탁거래 실패조사	현장조사	
488	중소기업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	벤처기업 정밀실패조사	현장조사	
489	중소기업청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상가건물임대차실패조사	현장조사	
490	중소기업청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전국소상공인실패조사	현장조사	
491	중소기업청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여성기업 실패조사	현장조사	
492	중소기업청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7조제1항	장애인기업실패조사	현장조사	

부 록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 고
493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	전통시장 및 점포경영실태조사	실태조사	
494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본법 제21조	중소기업실태조사	실태조사	
495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실태조사	
496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소모성자재납품업 실태조사	현장조사	
497	통계청	통계법 시행령 제22조 통계법 제17조	농어업법인조사	현장조사	
498	통계청	통계법 시행령 제22조 통계법 제17조	사교육비조사	현장조사	
499	통계청	통계법 시행령 제22조 통계법 제17조	농작물생산조사	현장조사	
500	통계청	통계법 시행령 제22조 통계법 제17조	사회조사	현장조사	
501	통계청	통계법 시행령 제22조 통계법 제17조, 제25조, 제32조	가축동향조사	현장조사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고
502	통계청	통계법 제17~18조	온라인쇼핑동향조사	현장조사	
503	통계청	통계법 제17조	가계동향조사	현장조사	
504	통계청	통계법 제17조 통계법 시행령 제22조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조사	현장조사	
505	통계청	통계법 제17조	어업생산동향조사	현장조사	
506	통계청	통계법 제17조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현장조사	
507	통계청	통계법 제17조 통계법 시행령 제22조	전국사업체조사	현장조사	
508	통계청	통계법 제17조	농가경제조사	현장조사	
509	통계청	통계법 제17조 통계법 시행령 제22조	가계금융·복지조사	현장조사	
510	통계청	통계법 제17조 통계법 시행령 제22조	외국인고용조사	현장조사	
511	통계청	통계법 제17조 통계법 시행령 제22조	운수업조사	현장조사	
512	통계청	통계법 제17조	소비자물가조사	현장조사	
513	통계청	통계법 제17조 통계법 시행령 제22조	광업·제조업조사	현장조사	

부 록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 고
514	통계청	통계법 제17조 통계법 시행령 제22조	기업활동조사	현장조사	
515	통계청	통계법 제17조	서비스업조사	현장조사	
516	통계청	통계법 제17조 통계법 시행령 제22조	건설업조사	현장조사	
517	통계청	통계법 제17조 통계법 시행령 제22조	농축산물생산비조사	현장조사	
518	통계청	통계법 제17조	농업면적조사	현장조사	
519	통계청	통계법 제17조 통계법 시행령 제22조	농림어업조사	현장조사	
520	통계청	통계법 제17조,제18조	도소매업조사	현장조사	
521	통계청	통계법 제17조,제18조	기계수주동향조사	현장조사	
522	통계청	통계법 제17조,제18조	건설경기동향조사	현장조사	
523	통계청	통계법 제17조,제18조	서비스업동향조사	현장조사	
524	통계청	통계법 제17조,제18조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현장조사	
525	통계청	통계법 제17조제1항	인구동향조사	현장조사	
526	통계청	통계법 제17조제1항	어가경제조사	현장조사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고
527	통계청	통계법 제17조제1항	지역별고용조사	현장조사	
528	통계청	통계법 제17조제1항	경제총조사	현장조사	
529	통계청	통계법 제17조제1항	경제활동인구조사	현장조사	
530	통계청	통계법 제18조 통계법 시행령 제24조	산지쌀값조사	현장조사	
531	통계청	통계법 제18조	어류양식동향조사	현장조사	
532	통계청	통계법 제18조 통계법 시행령 제24조	양곡소비량조사	현장조사	
533	특허청	발명진흥법 제10조	무상실시권 실적 제출	자료제출·보고요구	
534	특허청	발명진흥법 제20조의6조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현장조사	
535	특허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현장조사 및 시 료체취	현장조사	
536	특허청	특허법 제125조	특허실시 보고	자료제출·보고요구	
537	해양수산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	공유수면 관리 실태조사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538	해양수산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공유수면 매립 관련 보고 및 검사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부 록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 고
539	해양수산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1조	국제항해선박소유자, 안전관리대행자 등에 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자료제출 · 보고요구	
540	해양수산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	수산물원산지표시등의 조사	현장조사	
541	해양수산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4조	수산물품질인증 사후관리 점검	현장조사	
542	해양수산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수산물안전성 조사	현장조사	
543	해양수산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6조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5조	수출용수산물 생산가공시설 조사	현장조사	
544	해양수산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무인도서 이의신청 현장조사	현장조사	
545	해양수산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무인도서 점검	현장조사	
546	해양수산부	선박안전법 제69조제2항, 제69조제3항	국적선 특별점검	현장조사	
547	해양수산부	선박안전법 제75조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자료제출 · 보고요구	
548	해양수산부	선박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 및 선박운용회사에 대한 감독, 검사	자료제출 · 보고요구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고
549	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33조제1항	선박평형수관련 보고 및 자료 제출	자료제출·보고요구	
550	해양수산부	선원법 제126조	선원근로 감독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출석요구	
551	해양수산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44조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재무제표와 사업 보고서 제출	자료제출 요구	
552	해양수산부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	수입염 입고확인서 자료 제출	자료제출·보고요구	
553	해양수산부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	부산물염 판매계획서 자료제출	자료제출·보고요구	
554	해양수산부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	국내염 생산 및 재고량 확인 자료 제출	자료제출·보고요구	
555	해양수산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	양식제한조치 명령 이행여부 점검 결과와 방역교육 실시결과 보고	보고요구	
556	해양수산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0조제2항	수산생물병성감정 결과의 보고	보고요구	
557	해양수산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1조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	현장조사	
558	해양수산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4조	수산생물양식자와 수산생물집합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보고 요구	보고요구	
559	해양수산부	수산업법 제96조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자료 제출	자료제출·보고요구	

부 록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 고
560	해양수산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5조제1항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의 체결 강제	자료제출·보고요구	
561	해양수산부	종자산업법 제26조,제138조, 제147조	제출된 종자의 처리 관련 자료 제출	자료제출·보고요구	
562	해양수산부	종자산업법 제38조,제46조	종자 시료 제출	시료채취	
563	해양수산부	항로표지법 제20조	항로표지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자료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564	해양수산부	항로표지법 제32조제4항	검사대행기관 지정기준 적합여부 확인 자료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565	해양수산부	항만법 제28조제5항	항만시설장비 검사 대행기관 확인 점검	현장조사	
566	해양수산부	항만법 제41조제4항	종합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필요한 자료	자료제출·보고요구	
567	해양수산부	항만법 제73조제1항	항만공사업자 및 항만시설운영자 점검	자료제출·보고요구	
568	해양수산부	항만법 제91조제5항	항만협회에 대한 감독	자료제출·보고요구	
569	해양수산부	해사안전법 제48조제6항	인증심사업무의 대행실적 보고	보고요구	
570	해양수산부	해사안전법 제58조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	현장조사	
571	해양수산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8조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관련 조사	자료제출·보고요구 출석요구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고
572	행정자치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국가기록물의 지정	현장조사	
573	행정자치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	자료제출·보고요구	
574	행정자치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전국 공중화장실 실태조사	현장조사	
575	행정자치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9조	기부금품의 모집 또는 접수행위의 위법성 검사	현장조사	
576	행정자치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제7항	옥외광고업자 영업실태 조사	현장조사	
577	행정자치부	온천법 제25조	온천 허위 과장광고 등 관리실태 점검	현장조사	
578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 주민등록법 제20조	주민등록 일제정리	현장조사	
579	환경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건설폐기물 관련사업자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 출입검사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사전통지(3일 전), 증표제시
580	환경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특정유해물질 배출량 등 줄이기 계획 보고 (금강)	자료제출·보고요구	

부 록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 고
581	환경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	사업장별 할당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 배출량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보고, 자료제출 요구, 출입검사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증표제시
582	환경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특정수질유해물질 취급량과 배출량 조사	현장조사	증표제시
583	환경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 및 운영자료 보고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584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3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증표제시
585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3조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결과보고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증표제시
586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3조	신축공동주택 공기질 측정 결과 보고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증표제시
587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 점검	현장조사	
588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제50조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	자료제출·보고요구	
589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제5항	평균배출량(FAS) 관련 자동차 판매현황자료 제출	자료제출 요구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고
590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법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검사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증표제시
591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제5조	수질기준 및 검사횟수 설정변경 보고	자료제출·보고요구	
592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제22조	샘물등의 수위, 수량, 수질 등 측정결과	자료제출·보고요구	
593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제42조	먹는샘물 제조업체 및 수입판매업체 지도점검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594	환경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관리감독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시료채취 출석요구	
595	환경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수입반입허가 실적 보고	자료제출·보고요구	
596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제40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필요사항 조사 및 보고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597	환경부	석면피해구제법 제43조	진료에 관한 보고, 진료기록 자료 보고	자료제출·보고요구	
598	환경부	석면피해구제법 제43조제1항	석면질병 조사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599	환경부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	소음진동배출시설 등 지도점검 및 검사보고	자료제출·보고요구	

부 록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 고
600	환경부	소음·진동관리법 제52조	소음진동관리 시책의 추진상황 연차 보고서 제출	자료제출·보고요구	
601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 및 보급실적 보고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시료채취	
602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저공해자동차 구매실적 및 계획 보고	자료제출·보고요구	
603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자	현장조사, 시료채취	
604	환경부	수도법 제27조	수질기준초과 내역 공지 및 결과보고	자료제출·보고요구	
605	환경부	수도법 제29조	수질검사 결과보고	자료제출·보고요구	
606	환경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6조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 이행사항 평가보고서	자료제출·보고요구	
607	환경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	전국오염원조사 자료	자료제출·보고요구	
608	환경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 신고사업장 지도 점검	현장조사	
609	환경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 점검	현장조사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고
610	환경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현장조사	
611	환경부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습지보전법 제22조제1항	습지보호지역의 출입제한, 훼손시 조치, 사업 시행자의 보고의무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612	환경부	습지보전법 제22조	습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훼손 등에 관한 자료조사 또는 보고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613	환경부	악취방지법 제17조	악취배출시설 지도 점검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시료채취	
614	환경부	악취방지법 제4조	악취실태조사	현장조사, 시료채취	
615	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수렵장운영실적보고	자료제출·보고요구	
616	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서식지외 보전기관의 운영관리,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허가,신고 등의 관리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617	환경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특정유해물질 배출량 등 줄이기 계획	자료제출·보고요구	

부 록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 고
618	환경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 지법 제17조, 제12조	조명기구 관리	현장조사	
619	환경부	자연공원법 제24조	행위허가, 공원사업 시행허가 및 공원 시설 관리허가	현장조사, 시료채취	
620	환경부	자연공원법 제24조제3항	행위허가, 공원사업시행허가 및 공원 시설관리허가(사후관리)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621	환경부	자연공원법 제24조제3항	불법단속, 행정대집행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622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 제12조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출고 실 적서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623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 제18조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자료제출·보고요구	
624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 제25조	재활용계획 수립 보고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시료채취	
625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 제36조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	자료제출·보고요구	
626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 제36조	재활용의무이행계획사항 점검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고
627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포장의 재질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여부 확인 자료제출 및 보고	자료제출·보고요구	
628	환경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주변지역 영향보고	자료제출·보고요구 시료채취	
629	환경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9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련 시설 관리 감독	현장조사	
630	환경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3조	재활용촉진을 위한 권고 이행여부 등 보고	보고요구	
631	환경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7조	재활용회수실적 조사 및 재활용관련 보고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사전통지, 증표제시
632	환경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7조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및 폐차업자에 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 출입검사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사전통지, 증표제시
633	환경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7조	재활용관련 보고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사전통지, 증표제시
634	환경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7조	폐자동차 재활용 관리감독(결과보고)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사전통지, 증표제시
635	환경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7조	폐자동차 재활용관리감독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사전통지, 증표제시

부 록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 고
636	환경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9조	인수인계 자료 제출	자료제출 요구	
637	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제3항	오염토양 반출정화 등에 따른 서류제출	자료제출·보고요구	
638	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2 제1항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출입검사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증표제시
639	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제2항제2항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보고, 자료제출 요구, 출입검사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증표제시
640	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제2항제3항	토양오염에 대한 보고, 서류제출 요구, 출입검사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증표제시
641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제39조	폐기물관련 사업자 지도점검	현장조사	
642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제58조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	자료제출·보고요구	
643	환경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수입 및 수출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	현장조사	
644	환경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폐기물 수출입 실적 등 보고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645	환경부	하수도법 제19의3조, 제19조의4, 제19조의5조, 제20조의3, 제20조의4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자료제출·보고요구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고
646	환경부	하수도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	자료제출·보고요구	
647	환경부	하수도법 제69조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지도 점검	현장조사	
648	환경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 배출량, 배출량줄이기계획 보고	자료제출·보고요구	
649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화학물질 통계조사 실적보고	자료제출·보고요구	
650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및 실적보고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651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	화학물질을 취급, 관리하는 자에 대한 보고, 자료제출 요구, 출입검사 유독물질 영업자 관리 감독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관리감독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연간실적 보고 등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시료채취	
652	환경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자료제출·보고요구	
653	환경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제3항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관련 자료제출 요구	자료제출 요구	

부 록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 고
654	환경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 법 시행규칙 제16조제8항	환경정보공개 등록	자료제출·보고요구	
655	환경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 법 제28조	환경전문공사업자 등록관리	현장조사	
656	환경부	환경보건법 제29조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사용 제한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보고, 자료제출 요구, 출입검사 어린이용품 유해성 조사 어린이용품, 어린이활동공간 조사 및 보고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시료채취	
657	환경부	환경보건법 제29조	환경안전기준 관련 자료 보고	자료제출·보고요구	
658	환경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시험·검사 업무 처리현황 보고, 조사 질문	보고요구 현장조사	증표제시
659	환경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측정기기 제작·수입자, 교정용품 공 급·사용자, 측정기기검사기관, 측정 대행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출입 검사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증표제시
660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 제 39조, 제49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조사	현장조사	

	소관부처	근거법령	행정조사명	조사유형	비고
661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	사전환경성 검토협의이행의 관리감독	현장조사	
662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보고	자료제출·보고요구	
663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제60조	환경영향평가업자 관리 감독	자료제출·보고요구 현장조사	
664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제61조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 보고	자료제출·보고요구	